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786-01



치매공공후견인, 후견감독인 담당자를 위한 후견사무매뉴얼



치매공공후견인,
후견감독인 담당자를 위한

후견사무매뉴얼

치매공공후견인,
후견감독인 담당자를 위한

후견사무매뉴얼



〈차례〉

I. 성년후견제도 소개 / 19

1.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 19
2. 성년후견제도 소개 / 19
 - 가. 성년후견 / 20
 - 나. 한정후견 / 20
 - 다. 특정후견 / 21
 - 라. 임의후견 / 21

II. 기본 후견사무 / 25

1. 초기 후견사무 / 27
 - 가. 피후견인과 라브형성 / 28
 - 나. 적절한 면담 빈도 / 29
 - 다. 후견감독사건번호 확인 / 30
 - (1) 기본후견감독 직권개시 / 30
 - (2) 인터넷을 통한 손쉬운 후견감독사건 진행상황 파악 / 31
 - 라.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35
 - (1)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역할 / 36
 - (2)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36
 - (3)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활용 / 36
 - 마. 사무후원, 대리권의 범위 숙지 / 41
 - 바. 재산조사, 재산목록 작성 / 41
 - (1) 재산조사의 필요성 / 42
 - (2) 예금에 대한 재산조사 방법 / 42
 - (3) 보험에 대한 재산조사 방법 / 44
 - (4) 임대차계약에 대한 재산조사 방법 / 46
 - (5) 공적부조 / 47
 - (6) 세금 / 47
 - (7) 채권, 채무 / 48

(가) 채권 / 49

(나) 채무 / 51

2. 개시 후 1년까지 실무 / 53

가. 일상적인 후견실무 / 53

나. 매월 정기보고서 작성 / 53

다. 금전지출내역서 작성 / 56

라. 후견활동내역서 작성 / 57

마. 매년 정기후견사무보고서 작성 / 57

(1)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기준일 / 58

(2) 후견사무보고서의 내용 / 59

(3)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전 준비사항(Check List) / 59

(4) “나홀로소송”을 통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방법 / 60

(가) 나홀로소송을 통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의 장점 / 60

(나) 나홀로소송을 통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방법 / 62

(5) 완성된 정기후견사무보고서 작성례 / 76

3. 후견종료 실무 / 86

가. 종료사유 / 86

나. 연장여부 심사 / 86

다. 종료보고서 작성 / 86

라. 종료등기 신청 / 87

마. 종료 후 긴급사무 처리 / 88

(1) 긴급사무의 의의 / 89

(2) 채무 변제, 세금납부 / 90

(3) 병원비 정산 / 91

(4) 장례비용 / 91

바. 후견연장 결정시, 종료 후 재개시까지의 사무처리 / 91

III. 개별 후견사무 / 95

1. 재산관리와 관련한 후견실무 / 95

가. 후견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처리 / 95

나. 예금관리 / 95

(1) 예금관리 기초 / 95

(가) 후견인이 관리할 계좌 / 97

(나) 피후견인이 관리하는 계좌 / 99

- (다) 예금계좌 관리 방법 / 101
- (라) 은행을 상대할 때 유용한 대처법 / 101
- (2) 비대면거래 신청 / 105
- (3)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원본 제시 문제 / 106
- (4) 금융거래내역 조회 / 107
- 다. 체크카드 등 이용 / 107
- 라. 공적부조 관리 / 109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급여관리자 제도 / 109
 - (2) 급여 대리수령 제도 / 110
 - (3)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 / 112
- 마. 생활비 관리 / 113
 - (1) 평균 지출내역 파악 / 113
 - (2) 일상생활비 / 113
 - (3) 동거친족, 요양보호사 등 지원자에게 일상생활비 지출 업무 위임 / 113
- 바. 주거 관련 관리 / 114
 - (1) 새로운 주거지 물색 방법 / 114
 - (2) 임대차계약 체결 / 115
 - (3) 임대차계약 유지 / 117
 - (4) 임대차계약 종료 / 117
 - (5) 특수사례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118
 - (6) 특수사례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 120
- 사. 병원비 관리 / 121
- 아. 각종 공과금 관리 / 122
- 자. 기타 채무 관리 / 122
 - (1) 채무 변제 / 122
 - (2) 금전 대출 경우 참고할 점 / 123
 - (3) 채무가 여러 건이 있는 경우 주의할 점 / 123
 - (4)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 124

2. 신상보호와 관련한 후견실무 / 124

- 가. 신상보호의 의미 / 124
 - (1) “신상”의 개념 / 124
 - (2) 신상보호의 의미 / 125
 - (3) 특정후견인에게 신상결정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 / 126
 - (4) 신상보호사무 개관 / 127
- 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 127

- (1) 기초생활수급 여부 확인 / 127
- (2) 복지로 활용 / 127
- (3) 서비스연계 / 128
- (4) 복지서비스 신청 시 지참서류 / 128
- 다. 일상적인 병원 치료 / 128
 - (1) 만성질환 일상관리 / 128
 - (2) 정기검진 / 129
 - (3) 응급상황 129
- 라. 주거에 관한 지원 / 129
 - (1) 주거지원의 중요성 / 129
 - (2) 주거의 관리 / 129
 - (3) 임대인과의 관계 / 130
 - (4) 공과금 관리 / 130
 - (5) 거주지 이전 / 130
- 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 131
 - (1) 재가서비스 / 132
 - (2) 시설 / 133
 - (3)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 이용 / 134
- 바. 기존 지지체계와의 관계 설정 / 135
 - (1) 가족과의 관계 설정 / 135
 - (2)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설정 / 136
 - (3) 이웃과의 관계 설정 / 138
 - (4) 요양기관과의 관계 설정 / 138
 - (가) 재가시설 (방문요양 등) / 138
 - (나) 입소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등) / 139
 - (5) 기타 지원자와의 관계 설정 / 139
 - (가) 후원자 / 139
 - (나) 복지시설 관계자 / 139
- 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한 문제 / 140
 - (1)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정의 / 140
 -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 140
 -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대리 작성 불가능 / 143
 - (4) 후견개시 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이 작성된 경우 / 144
- 아. 요양병원, 종합병원 입원과 관련한 문제들 / 144
 - (1)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문제 / 144

- (가) 본인의 뜻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이행 / 144
- (나) 본인의 뜻에 의하지 않은 연명의료 중단 / 145
- (다) DNR 동의서 / 146
- (2) 병원비 연대보증 요구와 관련한 문제 / 147
- (3) 긴급한 수술행위에 대한 동의 문제 / 148
 - (가) 의료법에 따른 동의 없는 수술 / 148
 -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의 없는 수술 / 149

자. 사고활동 / 150

차. 감염병 유행시기 신상보호 / 151

3. 피후견인 사망과 관련한 후견실무 / 151

가. 사망 이후 후견사무의 개요 / 153

나. 사망 직후 / 154

- (1) 피후견인이 요양병원, 요양원, 종합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 154
 - (가) 피후견인 시신 확인 / 154
 - (나) 상속인 또는 지자체 담당자 연락 / 154
 - (다) 사망진단서 발급 / 154
 - (라) 장례식장으로 시신 안치 / 155
- (2) 피후견인이 집에서 사망한 경우 / 155

다. 사망신고 / 157

- (1) 관련 규정 / 157
- (2) 후견인은 사망신고 의무자가 아님 / 157
- (3) 사망신고의 효과 / 157
- (4) 사망신고 전 계좌거래내역 등 발급 / 158

라. 상속인이 있는 경우 / 158

마. 상속인이 없는 경우 / 158

- (1) 무연고자 장례절차 지원과 관련한 제도 / 158
- (2) 상속재산 처리와 관련한 사무 / 159
 - (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 160
 - (나) 상속재산목록 작성 / 160
 - (다) 상속재산 청산 / 160
 - (라) 상속인 수색 공고 / 162
 - (마)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162
 - (바)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162

IV. 후견사무 심화 / 165

1.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무 / 165

- 가. 심판문에서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무 예시 / 166
- 나. 내부적으로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한 사무 예시 / 168
 - (1) 원칙 / 168
 - (2) 임대차계약 / 168
 - (3) 신탁계약 / 169
 - (4) 소송행위 / 169
- 다. 법원 허가, 대리권 수여심판을 구할 때 동의서 제출 / 170
- 라. 후견감독인 동의 수령 방법 / 172
- 마. 후견감독인 동의 후 사무처리 / 173

2. 후견부수사건 실무 / 174

- 가. 후견부수사건의 종류 / 174
- 나. 대출행위 / 174
- 다. 부동산 처분행위 / 175
 - (1) 부동산 처분행위의 의의 / 176
 - (2) 부동산 매매 / 176
 - (3) 부동산 담보대출 / 180
 - (4) 주택연금 / 184
- 라. 소송행위 / 188
 - (1) 소송행위와 관련한 기본 이론 및 심판청구사례 / 188
 - (2)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199
 - (3) 민사소송 / 201
 - (가) 민사소송 절차 / 201
 - (나) 피후견인이 원고인 경우 / 206
 - (다) 피후견인이 피고인 경우 / 207
 - (라) 강제집행 절차 / 207
 -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208
 - 2)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209
 - (마) 조정 / 209
 - (바) 변호사와의 소통방법 / 210
 - (4) 형사소송 / 211
 - (가) 형사소송 절차 / 211
 - (나) 피후견인이 피의자/피고인인 경우 / 214
 - 1) 수사단계 / 214

- 2) 공판단계 / 214
- 3) 피후견인이 구속된 경우 / 215
- 4) 피해자와의 합의 / 216
- (나) 피후견인이 피해자인 경우 / 216
 - 1) 수사단계 / 216
 - 2) 공판단계 / 217
 - 3) 합의 / 217
 - 4) 피해자로서 검찰과의 소통 / 217
- 마.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격리행위 허가 / 217
 - (1) 격리행위와 통상적인 입원행위와의 구분 필요성 / 217
 - (2) 격리행위의 의의 / 218
 - (3) 격리행위에 대한 허가심판시 유의사항 / 219
 - (4) 요양병원 입원 / 222
 - (5) 요양원 입소 / 223
 - (6) 정신의료기관(종합병원 폐쇄병동 포함) 입원 / 223
 - (가) 정신의료기관 입원과 관련한 절차를 알아야 할 필요성 / 223
 - (나) 정신건강복지법상 주요 절차 소개 및 후견인의 역할 / 224
 - 1) 동의입원 / 224
 -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224
 - 3) 지자체장애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 225
 - 4) 퇴원 등 처우개선 심사청구 / 226
 - 5) 후견인의 역할 / 226
- 바. 부수사건 처리 후 보고 / 226
- 사. 후견인 사임 / 228
- 아. 후견인 변경 / 232
- 자. 직무대행자 선임 / 236
- 3. 학대피해 고령자에 대한 권익옹호 / 236
 - 가. 개요 / 237
 - 나. 노인학대의 정의 / 237
 - 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지원 / 238
 -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보조인 / 239
 - 마. 관계자들과의 관계 설정 / 239
 - 바. 손해의 회복 / 240
 - (1) 손해배상소송 / 240
 - (2)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 240

V. 후견감독인의 직무 / 243

1. 개요 / 243

2. 주요 사무 / 243

가. 기본 후견감독사무 / 244

- (1) 초기 후견감독사무 / 244
 - (가) 후견개시 사실 확인 등 / 244
 - (나) 재산조사 / 244
 - (다) 초기 방문 지원 / 245
- (2) 개시 후 1년까지 감독실무 / 245
 - (가) 매월 정기보고서 등 검토 / 245
 - (나) 매년 정기후견사무보고서 감독 / 246
 - (다) 후견감독사무보고서 작성 / 247
 - 1) 기본사항 / 248
 - 2) 감독내용 / 250
 - 3) 감독의견 / 251
 - (라) 감독사무보고서 제출 / 253
- (3) 각종 서면 제출 방법 / 253
 - (가) 방문 제출 / 253
 - 1) 일반론 / 253
 - 2) 진행 중인 사건에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 254
 - 3) 부수사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 254
 - (나) 우편발송 / 255
 - (다) 보론 : 전자소송 이용 필요성 / 255
- (4) 후견종료시 감독사무 / 255
 - (가) 연장여부 심사 / 255
 - (나) 종료보고서 작성 참여 및 감독사무보고서 작성 / 255
 - (다) 종료등기신청 / 255
 - (라) 긴급사무 처리 / 256

나. 개별 후견감독사무 / 256

- (1)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 256
- (2) 이해상반행위 / 257
- (3) 일반적인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 259

다. 후견감독사무 심화 / 259

- (1)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한 사무 / 259
- (2) 후견부수사건과 관련한 후견감독 실무 / 260

〈표 차례〉

표 1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 19
표 2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 20
표 3	후견사무 진행 개요도 / 26
표 4	“나의 사건검색”에서 후견감독사건 진행상황 파악 방법 / 32
표 5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들 / 32
표 6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 39
표 7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위임장 작성 예시 / 40
표 8	정기보고서 작성례 / 54
표 9	금전지출내역서 작성례 / 56
표 10	후견활동내역서 작성례 / 57
표 11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기준일 예시 / 58
표 12	후견사무보고서 증빙서류 예시 / 42
표 13	후견사무보고서 작성방법별 장·단점 / 44
표 14	급박한 사정의 예 / 90
표 15	계좌리스트 예시 / 96
표 16	은행 비대면거래업무 허용 여부(2020. 4.기준) / 106
표 17	공적부조 대리수령제도 비교 / 111
표 18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 비교 / 112
표 1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요건 / 116
표 20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필요서류 / 120
표 21	신상결정권한에 대한 민법 제947조의2 규정 / 125
표 2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종류 / 132
표 23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의 종류 / 132
표 24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의 종류 / 134
표 25	데이케어센터 이용 정보 / 135
표 2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 142
표 27	감독인 동의 또는 법원 허가를 요구하는 행위 / 166
표 28	임대차계약 관련 감독인과 협의가 필요한 주요사항 / 168
표 29	신탁계약 관련 감독인과 협의가 필요한 주요사항 / 169
표 30	소송행위 관련 감독인과 협의가 필요한 주요사항 / 169
표 31	격리행위 허가심판청구 사건에 제출하는 감독인의 동의서 예시 / 170
표 32	소송행위 허가심판청구 사건에 제출하는 감독인의 동의서 예시 / 171
표 33	신탁계약체결 허가심판청구 사건에 제출하는 감독인의 동의서 예시 / 172

표 34	부동산 매각허가심판청구서 예시 / 177
표 35	부동산 담보대출 허가심판청구서 예시 / 181
표 36	주택연금계약 허가심판청구서 예시 / 185
표 37	급박하게 소송행위가 필요한 대표적 사례 / 189
표 38	피후견인 소송행위 지원 절차 / 190
표 39	소송행위 허가(민사) 심판청구서 예시 / 190
표 40	소송행위 허가(형사) 심판청구서 예시 / 193
표 41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 예시 / 197
표 42	격리행위 허가심판청구서 예시 / 219
표 43	부수사건 이행 결과 보고서 예시 / 227
표 44	후견인 사임허가 심판청구서 예시 / 229
표 45	후견인 변경 심판청구서 예시 / 233
표 46	노인학대 유형별 정의 / 238
표 47	정기보고서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 245
표 48	기간 별 점검사항들 / 246
표 49	후견사무보고서 주요 검토 사항 / 247
표 50	각종 서면 제출 방법 / 253
표 51	제출자별 지침서류 / 253
표 52	인지대, 송달료 납부 기준 / 254
표 53	이해상반행위 사례 / 258

〈그림 차례〉

그림 1	후견감독절차 안내문 / 31
그림 2	“나의 사건검색”을 통한 후견감독사건 검색01 / 32
그림 3	“나의 사건검색”을 통한 후견감독사건 검색02 / 33
그림 4	“나의 사건검색”을 통한 후견감독사건 검색03 / 34
그림 5	“나의 사건검색”을 통한 후견감독사건 검색04 / 35
그림 6	후견등기사항증명서 01 / 37
그림 7	후견등기사항증명서 02 / 37
그림 8	후견등기사항증명서 03 / 38
그림 9	예금 잔고 증명서 예시 / 43
그림 10	보험계약 내역 확인서 예시 / 45

- 그림 11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서 / 47
- 그림 12 나홀로 소송 초기 화면 / 62
- 그림 13 로그인 후 나홀로소송 메인화면에서 보고서 작성하기 / 62
- 그림 14 나홀로소송 사건검색 / 63
- 그림 15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기본사항 / 64
- 그림 16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신상보호01 / 65
- 그림 17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신상보호02 / 66
- 그림 18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적극재산 / 67
- 그림 19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그 외 적극재산 / 68
- 그림 20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소극재산 및 재산총액 / 69
- 그림 21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수입내역 / 70
- 그림 22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지출내역 / 71
- 그림 23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지출내역(매번 지출액이 다른 경우) / 71
- 그림 24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재산변동상황 등 / 72
- 그림 25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요약표 / 73
- 그림 26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첨부서면 작성 / 74
- 그림 27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pdf 저장하기 / 75
- 그림 28 후견개시심판문에서 종료시까지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예 / 87
- 그림 29 피후견인 예금계좌 관리 기초 / 97
- 그림 30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기재된 모습 / 117
- 그림 31 복지로 메인화면 - “노년”카테고리 / 127
- 그림 32 복지로 메인화면 - 민간 복지서비스 카테고리 / 128
- 그림 33 신상보호 사회복지서비스 대리권 예시 / 138
- 그림 34 피후견인 사망 후 업무 개요도 / 153
- 그림 35 경찰 작성 변사자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156
- 그림 36 상속인이 없을 때 사후 사무 처리 개요 / 159
- 그림 37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례 / 167
- 그림 38 한정후견에서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구분한 사례 / 167
- 그림 39 성년후견에서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구분한 사례 / 167
- 그림 40 은행 대출연장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된 후견감독인의 동의서(성년후견) / 173
- 그림 41 부동산매각허가심판 주문례 / 180
- 그림 42 부동산담보대출 허가 심판 주문례 / 183
- 그림 43 주택연금 개요도 / 184
- 그림 44 법률구조공단 상담 안내 화면 / 199
- 그림 45 법률지원센터 화면 / 200
- 그림 46 나홀로소송 사이트 화면 / 200

- 그림 47 민사소송 절차 개요도(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 201
- 그림 48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도(출처 :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 208
- 그림 49 형사소송 절차 개요도(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 211
- 그림 50 접견예약 안내화면 / 216
- 그림 51 격리행위 허가심판문 주문례 / 222
- 그림 52 후견감독사무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화면 / 248
- 그림 53 후견감독사무보고서 01 - 기본사항 / 249
- 그림 54 후견감독사무보고서 02 - 감독경과 / 250
- 그림 55 후견감독사무보고서 03 - 신상보호 / 250
- 그림 56 후견감독사무보고서 04 - 재산관리 / 251
- 그림 57 후견감독사무보고서 05 - 일반 / 251
- 그림 58 후견감독사무보고서 06 - 신상보호 감독의견 / 252
- 그림 59 후견감독사무보고서 07 - 재산관리 감독의견 / 252
- 그림 60 후견감독사무보고서 08 - 종합의견 / 252

I. 성년후견제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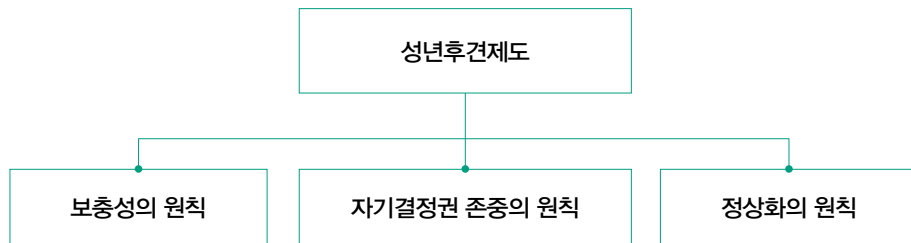


I. 성년후견제도 소개

1.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자와 같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인식은 그들을 사회 및 경제 생활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현대에는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본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음. 2013년 7월 “자기결정권 존중”, “후견의 보충성의 원칙”을 근본 이념으로 한 성년후견제도 시행은 그 변화의 첫걸음이었음. 개정 민법은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그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를 부여하였고¹, 피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며², 법원에 의해 개시되는 법정후견보다 피후견인이 스스로 후견인과 체결한 후견계약이 우선하도록 한 것³이 대표적인 예임.

표 1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2. 성년후견제도 소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이 판단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이 될 사람과 자

1 민법 제947조

2 민법 제947조의2 제1항

3 민법 제959조의20

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임의후견(후견계약)”과 본인이 이미 판단능력이 부족해졌을 때 법원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고 후견인이 선임되는 “법정후견”으로 분류됨. 법정후견은 다시 좁은 의미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뉨.

표 2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			
임의후견	법정후견		
후견계약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가. 성년후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됨⁴. 성년후견인은 민법에서 정하거나, 법원에서 후견개시심판을 하면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사실상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음. 피성년후견인은 그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가 되고,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음⁵. 그 밖에 성년후견인은 정신병원 등에의 격리행위,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수술행위, 거주 부동산의 처분 등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⁷,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등 그의 재산과 관련한 중요한 행위를 대리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⁸. 일단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개시 사유가 소멸하거나, 피후견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종료하지 않음. 예를 들어 치매 고령자의 경우 현대 의학으로 치매는 비가역적이고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질병이므로, 본인이 사망하는 것 외에는 후견이 종료되지 않음.

나. 한정후견

4 민법 제938조 제1항

5 민법 제10조 제1항

6 단, 가정법원이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민법 제10조 제2항

7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8 민법 제950조 제1항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재판을 통해 수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됨.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자임. 다만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행위에 한하여 제한능력이 됨.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이 위 행위의 범위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⁹. 그 밖에 한정후견인도 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법원의 허가 또는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¹⁰. 한정후견 종료 사유 역시 성년후견과 동일함.

다.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과 달리 피후견인에 대한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의 후원을 위하여 개시되는 유형임¹¹. 따라서 특정후견인은 그 사무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대리권을 보유함. 나아가 그 사무의 후원이 종료되면 후견도 종료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원은 그 사무의 후원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기간을 정해 후견을 개시함.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정후견은 종료됨.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법적 능력이 전혀 제한되지 않으므로,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이 없음.

특정후견은 기간의 만료, 후견이 필요한 사무의 완료¹²,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개시¹³, 피특정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등의 경우에 종료됨.

라. 임의후견

후견계약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 질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의미함.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등기해야 하며,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이 확정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함¹⁴.

9 민법 제13조 제1항, 제4항

10 민법 제959조의6, 제94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제950조 제1항

11 민법 제14조의2

12 민법 제14조의2 제3항

13 민법 제14조의3

14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음.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이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종료됨¹⁵.

후견계약은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장래를 대비하여 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이 가장 먼저 이용해야 하는 후견유형임. 이에 민법도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고¹⁶, 기존에 법정후견이 개시된 경우더라도,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종전 법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해야 한다¹⁷고 정하고 있음.

15 민법 제959조의18

16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17 민법 제959조의20 제2항

II. 기본 후견사무



II. 기본 후견사무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후견인은 그가 보유하는 사무후원의 범위 및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피후견인을 지원함. 그 권한 밖의 행위를 지원할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아울러 후견인은 공과금 납부, 식재료 구입, 일상생활용품 구입, 정기적인 병원치료 등 간단하고 반복적인 일상사무를 제외한 다른 사무들을 지원할 경우, 후견감독인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음. 후견인에 비해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는 후견감독인과 항상 상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만큼 후견사무의 질이 높아질 것임. 결국 피후견인의 복리에도 도움이 됨.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원칙 아래 후견인이 수행하는 각종 사무들을 소개하였음.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사안들을 소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별 후견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임. 단, 매뉴얼은 각 사안별로 최대한 일반화한 사례들을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후견인으로서의 피후견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표 3 후건사무 진행 개요도

시기	사무	업무 수행자	비고
후건개시심판 확정 직후	후건감독사건 직권 개시	법원	후건인은 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감독인과 협의를 거쳐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 함.
	후건등기부에 등기사항 등재	법원	
	후건감독절차안내문 발송	법원	
	후건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건인	
개시 직후~ 3개월	재산조회	후건인	
	피후건인 초기 면담, 라보형성		
그 이후 일상적 사무수행	피후건인 정기 방문	후건인	
	재산관리(예금관리, 수급비 관리 등)		
	일상생활비 지출 등 지원		
	일상적인 병원치료, 약처방 등 의료사무 지원	감독인	
매 1개월	일상적 사무수행에 대한 후건인 지원	감독인	
	정기보고서 작성·제출(→감독인)	후건인	
	정기보고서 검토·보완요청(→후건인)	감독인	
매 1년	정기보고서 보완·제출	후건인	
	정기후건사무보고서 작성·제출(→감독인)	후건인	
	정기후건사무보고서 검토·보완요청(→후건인)	감독인	
	정기후건감독보고서 작성	감독인	
	정기후건사무보고서, 후건감독보고서 법원 제출	감독인	
	정기후건사무보고서, 후건감독보고서 검토	법원	
	미진한 내역(첨부서류 등)에 대한 보정명령	법원	
정기후건감독 종결	법원		
종료전 6개월	연장여부 심사	후건인, 감독인	
종료시	종료보고서 작성·제출(→감독인)	후건인	
	종료보고서 검토·검토의견서 작성, 법원 제출	감독인	
	종료등기신청	후건인	
	최종 후건사무보고서(종료보고서) 제출요구서 발송	법원	
	최종 후건감독종결	법원	

1. 초기 후건사무

Check List

후건개시심판문을 수령하였는가

그렇다 아니다

후건개시심판이 확정되었는가

그렇다 아니다

법원으로부터 후건감독절차 안내문을 수령하였는가

그렇다 아니다

감독사건번호, 재판부, 후건조사관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

감독사건번호 : _____ 법원 _____ 후감 _____

감독재판부 : 가사 _____ 단독, 연락처 : _____

담당후건감독관 : _____ 감독관, 연락처 : _____

아니다

후건등기사항증명서가 창설되었는가

그렇다 아니다

후건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그렇다

발급일 : _____, 발급부수 : _____ 부

아니다

피후견인을 만나보았는가

그렇다

최초 방문일 : _____년 ____월 ____일

동행자 : _____(관계 : _____)

아니다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조사하였는가

그렇다 아니다

피후견인의 재산내역 조사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는가

그렇다

재산상 피해 의심, 채무 발견, 미회수 채권 발견,

기타 (_____)

아니다

피후견인의 치료, 거주, 생활, 건강 등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가. 피후견인과 라보형성

〈사례 1-1〉 후견인 A는 후견개시심판을 준비할 때 피후견인 B를 처음 만났음. B는 낮선 A에 대해 떨떠름한 반응이었고, 동석하던 사회복지사에게 A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을 함. B를 자주 만나온 사회복지사는 B가 낮선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보이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위로하였음.

A는 본격적으로 B의 후견인으로 활동하기에 앞서 B와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음. 다만, B가 A를 낯설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B와 이미 라뵈가 형성되어있는 사회복지사에게 한달 정도는 함께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두번째, 세번째 만남을 지속할 때마다 B는 A와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짓기도 하는 등 처음 만날 때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음. 후견이 개시된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A는 B와 단둘이 만나 외식을 하기도 하는 등 가까워졌음.

피후견인과의 친밀한 관계(rapport, 라뵈) 형성은 후견사무의 성패를 좌우함. 후견인은 후견개시 초기 피후견인과 라뵈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를 위해 피후견인과 라뵈가 형성된 사회복지사, 주민센터 담당자 등과 함께 방문하는 것도 유용함.

단, 피후견인에게 후견인은 낯선 사람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함. 피후견인에게도 후견인이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견인이 성급하게 접근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음.

나. 적절한 면담 빈도

〈사례 1-2〉 후견인 A는 처음 3개월 간은 매주 1회씩 B를 방문했음. 그럼으로써 B와 많이 가까워졌음. 그러나 매주 한 번씩 B를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방문할 때마다 교통비 등 지출하는 비용도 부담되기 시작했음. 그러던 중 A는 독감에 걸려 2주 정도 B를 찾아가지 못했음. A는 자신이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었음.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방문하면 됨. 필요하다면 자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반드시 매주 1회 혹은 그 이상 자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님.

(1) 초기 : 가능한 자주 방문

후견개시 초기에는 피후견인과의 라뵈형성, 요양보호사·복지서비스 신청 등 안전망 구

축을 위해 가능하다면 자주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임. 이 때 방문 빈도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 1회 내지 2주에 1회 정도가 적당함.

(2) 그 이후 : 적절한 수준으로 방문

피후견인과 라보가 형성되고, 요양보호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후견인 생활이 안정화 되면 방문 빈도를 줄여도 괜찮음. 직접 방문은 2주에 1회 내지 월 1회 정도가 적정함. 직접 방문보다는 요양보호사와의 매일 통화 혹은 카카오톡 등 간접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음.

(3) 특별한 사유 발생시 : 수시 방문

요양보호사 변경, 건강상태 악화, 거주지 이전 등 피후견인의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안정을 찾을 때까지 단기간 방문 빈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다. 후견감독사건번호 확인

〈사례 1-3〉 후견인 A는 후견개시심판문을 수령한 지 1달쯤 지난 뒤 법원으로부터 “후견 감독절차 안내문”을 수령하였음. 이 안내문에는 후견감독사건이 서울가정법원 2020후감12345호라고, 재판부는 가사21단독(비송), 연락처는 02-2055-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1) 기본후견감독 직권개시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어야 후견이 개시됨¹⁸. 후견개시심판은 청구인(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사건본인, 후견인, 이해관계인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고, 위 심판에 대하여 상급심에 상소하는 절차가 없으면 확정됨¹⁹.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후견등기 촉탁을 하고, 기본후견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함.

18 가사소송법 제40조

19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3호 가목.

후견인이 “후견감독절차 안내문”을 받은 것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후견감독이 개시되었다는 뜻이므로, 적어도 그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후견사무를 개시해야 함. 후견감독절차 안내문은 모든 후견유형에 공통적으로 발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후견과 어울리지 않는 안내도 있음을 유념해야 함²⁰.

그림 1 후견감독절차 안내문

후견감독 절차 안내문

귀하는 0000법원 0000년단0000 성년(한정, 특정, 임의, 미성년)후견감독(기본)사건의 후견인입니다.

법원은 후견이 시작되면 직권으로 기본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하고, 선임된 후견인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그 직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친족후견인은 1개월 내에 친족후견인 교육을 받은 후 교육 참석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은 후견개시 후 2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하고, 매 1년마다 같은 시기에 후견사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후견인의 심신 상태와 재산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후견사무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보호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견인과 유선, 면접상담을 진행하거나 피후견인의 상태 파악을 위해 거소출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감독은 후견사무에 대한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로 진행되는 것이니 감독절차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문의하시고 법원의 감독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민법 제954조, 제948조, 제959조의6, 제959조의12, 제959조의16 제2항 등)

※ 피후견인의 사망 등으로 후견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후견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하고(불이행시에는 과태료가 부여될 수 있음), 후견 종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4조).

(2) 인터넷을 통한 손쉬운 후견감독사건 진행상황 파악

후견감독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법원의 후견감독 진행상황과 후견인, 후견감독인이 제출한 서류, 심문기일, 후견감독조사시행 내

20 친족후견인 교육 이수 의무, 특정후견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의무 기재 등

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 “나의 사건검색”에서 후견감독사건 진행상황 파악 방법

- ①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검색
- ② 사건번호 입력칸에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성명(피후견인 또는 후견인)”, “자동입력방지문자”를 기입하고 “검색”버튼 클릭

그림 2 “나의 사건검색”을 통한 후견감독사건 검색01

**빠르고 편리한 고품질 사법서비스
대법원 전자소송**

본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 본 게시물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동의없이 링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 또는 다량 저장, 재가공 등 자료수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예납 은행번호로 본인의 사건번호 및 송달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수원지방법원 가사사건은 2019. 3. 1.일부터 수원가정법원으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본인 or 후견인 이름 기재

사건번호 사건번호입력모드

▶ 2016. 6. 17. 부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개인정보보호 및 무차별 정보수집 방지 등을 위하여 자동입력방지문자가 도입되었습니다. 안경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이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입력 값 정렬 : 법원명 가나다순 정렬 사건구분 가나다순 정렬 사건검색 결과 저장 **나중에 검색하기 편함**

사건내역을 검색하면 대표적으로 아래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음.

표 5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들

- ① 재판부, 후견감독관 전화번호
- ② 최근 기일 내역
- ③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역(후견인, 후견감독인, 제3자 제출)
- ④ 후견개시심판 및 각종 부수사건 등 관련사건 번호(클릭하면 해당 사건 상세 검색내역으로 이동함)
- ⑤ 당사자 내역[청구인, 사건본인, 관계인(참가인)]
- ⑥ 후견인
- ⑦ “사건진행내용”을 클릭할 경우, 일자순으로 정리된 법원에서 후견인 등에게 송달한 문건명, 송달일자, 후견인/후견감독인/제3자가 제출한 문건명, 제출일자, 심문기일, 조사기일 일자 및 시행여부

그림 3 “나의 사건검색”을 통한 후견감독사건 검색02

사건일련번호
사건진행내용
인쇄하기
나의 사건 검색하기

사건번호 : 서울가정법원 **2020후감12345**

기본내용
청사배치

사건번호	2020후감12345	사건명	[전자] 성년후견감독(기본)
청구인	(OOO)	상대방	
재판부	가사21단독(비송) 0 (전화:02-2055-7171(1층-라류), 7180(8층-후견사건만가능))	가사조사관	제2후견감독 담당관 (전화:02-2055-7179)
접수일	2018.03.07	중국결과	
병합구분	없음		
상소일		상소각하일	
송달료, 보관금 증결에 따른 잔액조회		사건이 종결되고 송달료 증결 혹은 보관금계좌가 종결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판검도달일		확정일	

최근기일내용
상세보기

일자	시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과
2019.07.24	14:00	면접조사기일	후견센터 유선통화	시행
2020.02.25	13:00	면접조사기일	후견센터유선통화	시행(추후지정)

, 최근 기일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상세보기

일자	참가인	내용
2020.03.06	참가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3.20	관계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3.23	참가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그림 4 “나의 사건검색”을 통한 후견감독사건 검색03

사건일번호
사건진행내용
인쇄하기
나의 사건 검색하기

, 사건번호 : 서울가정법원 **2020후감12345**

기본내용
청사배치

사건번호	2020후감12345	사건명	[전자] 성년후견감독(기본)
청구인	(OOO)	상대방	
재판부	가사21단독(비송) () (전화:02-2055-7171(1층-라류), 7180(8층-후견사건만가능))	가사조사관	제2후견감독 담당관 (전화:02-2055-7179)
접수일	2018.03.07	중국결과	
병합구분	없음		
상소일		상소각하일	
송달료, 보관금 증결에 따른 잔액조회		사건이 종결되고 송달료 종결 혹은 보관금계좌가 종결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판결도달일		확정일	

최근기일내용
상세보기

일자	시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과
2019.07.24	14:00	면접조사기일	후견센터 유선통화	시행
2020.02.25	13:00	면접조사기일	후견센터유선통화	시행(추후지경)

, 최근 기일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상세보기

일자	참가인	내용
2020.03.06	참가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3.20	관계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3.23	참가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그림 5 “나의 사건검색”을 통한 후견감독사건 검색04

진행내용 전 체 ▼ 선택

, 송달결과(2007.03.12전에는 재판부에서 등록한 내용에, 그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송받은 내용에 한함) 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확인'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추후 송달이 착오에 말미암은 것이거나 부적법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송달결과에 '0시 도달'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 시 초일이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내용	결과	공시문
2018.03.07	직권사건개시서접수		
2018.03.15	후견감독 조사명령		
2018.03.15	후견인 사OOOOO윤에게 후견감독결차 안내문 송달	2018.03.19 도달	
2018.03.21	후견인 사OOOOO윤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2018.03.22	후견인 사OOOOO윤 재산목록보고서 제출		
2018.04.05	후견인 사OOOOO윤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2018.04.30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5.28	후견인 사OOOOO윤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2018.05.31	참가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7.06	참가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7.09	참가인 진정서 제출		
2018.07.10	후견인 사OOOOO윤 재판기록열람신청서 제출		
2018.07.23	참가인 진정서 제출		
2018.07.27	이해관계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7.27	참가인 진정서 제출		
2018.08.07	의견서 제출		

라.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사례 1-4〉 후견인 A는 피후견인 B에 대한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후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였음. 법원 담당자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부존재 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다고 하였음. 후견인 A가 A명의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했기 때문임. A는 다시 피후견인 B명의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음. B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는 후견개시심판 사건번호, 확정일, 후견인 A의 인적사항,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

(1)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역할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인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증명하는 공적인 서류임. 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 후견인의 자격 증명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함.

이 때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피후견인 명의의 것을 발급해야 함.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후견인의 인적사항, 후견개시심판 법원, 사건번호, 확정일, 등기번호, 후견인의 인적사항, 대리권 목록 등이 기재되어 있음.

(2)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가정법원에 방문해야 함. 후견인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이 대리하여 발급할 수 있음. 이 때는 후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함. 1부당 발급수수료 1,200원이 발생함.

(3)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활용

법원 방문에 대한 번거로움, 수수료 부담 등을 감안할 때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가급적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원본 보다는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함.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최초에는 원본을 제출하되, 그 이후에는 사본을 제출받아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음.

대리권등목록 2019특정1

<p>1. 특정후견에 관한 사항</p>	<p>특정후견의 기간 3년</p> <p>특정후견 사무 유족구조금, 상속재산 등에 대한 선탁을 통한 안정적인 자산관리에 관한 사무</p> <p>후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후원 주거미련에 관한 사무 후원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후원 일상생활에 관한 사무 후원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후원</p> <p>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수령, 관리에 관한 대리권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및 상속재산(예금, 보험, 펀드, 증권, 부동산, 현금 등) 조회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 유족구조금, 기타 상속재산에 대한 선택계약 체결, 변경, 해지 등에 관한 대리권(단,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의료서비스 신청 및 이용(계약체결, 변경, 종료, 비용지급, 개인정보 신청 등)에 관한 대리권(피후견인을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등의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대행권은 행사할 수 없음) 주택임대차, 복지사설이용계약 등 주거미련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에 관한 대리권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신청, 수령, 변경, 해지 등)에 관한 대리권 금전 관리(통장 관리, 현금·체크카드, 권리 등)에 관한 대리권 은행업무(예금계좌의 개설, 계좌이체, 현금 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 예금계좌 해지 및 예금관련 개인정보조회, 직급·보험 가입, 각종 변경 업무, 예금 인출, 직급·보험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 공법상의 신청행위(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재변서를 발급, 인감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p>
------------------------------	--

표 6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청대상자 (사건본인)²¹⁾	성 명	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주민등록번호</td> <td>341203-2000000</td> </tr> <tr> <td colspan="2" style="font-size: small;">*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td> </tr> </table>	주민등록번호	341203-2000000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주민등록번호	341203-2000000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등록기준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1길 51 * 우편청구시에만 기재						
신청내용	①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1)동 ②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동 ③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동 ④ 등기사항증명서(후견별)()동 <input type="checkbox"/> 성년후견 <input type="checkbox"/> 한정후견 <input type="checkbox"/> 특정후견 <input type="checkbox"/> 임의후견 ⑤ 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동 ⑥ 등기사항증명서(퇴임전 사항)()동 : 퇴임자 성명 ()						
	대리권등목록 포함 여부	<input type="checkbox"/> 현재 유효한 목록만 포함 <input type="checkbox"/> 말소된 목록도 포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말소·폐쇄된 목록 모두 포함 <input type="checkbox"/> 대리권등목록 제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사건본인만 공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부 공개	공개 신청 사유	<input type="checkbox"/> ①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신청인이 사건본인이거나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등, 임의후견인 및 그 대리인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③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 소명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④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를 소명한 경우				
	*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1통당 1,200원 / 1통이 20장 초과한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사용목적	특정후견인 업무 수행						
소명자료	후견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성 명	A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신청인자격</td> <td>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td> </tr> <tr> <td>연락처</td> <td>010-1234-5678</td> </tr> </table>	신청인자격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	연락처	010-1234-5678
	신청인자격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					
	연락처	010-1234-5678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						
주 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접수번호	2020 년 4 월 일						
가정법원 후견등기관 귀하							
..... 접 취선 접 수 중							
접수일자: 20		신청인 성명:					
접수번호:		납부수수료액:					
교부예정시간:		가정법원 후견등기관 Ⓜ					
* 법 제42조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법 제8조 제4항: 발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고의로 발급하여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표 7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위임장 작성 예시

접수공무원의 수임인 신분확인			
수임인 성명		수임인 주민등록 번호	

위 임 장

위임받은 사람

성명 : 김성실(대리인 성명 기재)
 주민등록번호 : 850512-1234765(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대리인 주소)

위임인 A(후견인 성명) 는(은) 아래 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 김성실(대리인 성명 기재) 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항, 제32조에 따른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서 제출 및 수령 또는 후견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신청서 제출 및 열람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

2020 년 4 월 일

위임인 성명: A (서명)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10-1234-5678

○ 첨부서류

1.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유의사항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의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1 피후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함.

마. 사무후원, 대리권의 범위 속지

〈사례 1-5〉 후견인 A는 피후견인 B의 수급비가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는 시민은행에 방문하였음.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결과,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2개 존재하고 있었음. A는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고자, 해지신청을 하였음. 시민은행 직원은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예금계좌 해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확인을 요청하였음.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상에는 “예금계좌 개설, 계좌이체, 예금계좌 해지 및 예금관련 개인정보 조회 등에 대한 대리권”이 기재되어 있었음. A는 은행 담당자에게 후견등기사항의 해당 부분을 보여주고 대리권이 있음을 소명하였음.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후원할 사무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를 숙지하고 있어야 함. 후견인이 만나는 상대방 중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리권의 범위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후견인의 대리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임. 그 때 후견인으로서의 상대방에게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명확히 자신이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밝혀야 함.

후견인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를 숙지하지 못한 채, 대리권이 없거나, 법원 또는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 후견인이 단독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 이 때는 후견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바. 재산조사, 재산목록 작성

〈사례 1-6〉 후견인 A는 1년이 지난 뒤 B에 대한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함. 후견이 개시되었을 때 심판문이나 법원, 감독기관에서 별다른 지시가 없어 특별히 피후견인 B의 재산내역을 조사해둔 것이 없었음. 그 뒤 1년 동안 관리한 피후견인 B의 재산변동상황을 보고하려고 하니 결국 후견개시 시점에 피후견인 B가 보유하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밖에 없었음. 재산내역을 조회한 결과 A가 1년 동안 알지 못했던 은행계좌 3개, 예금액 200만 원 정도가 더 발견되었음.

(1) 재산조사의 필요성

특정후견의 경우,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님²².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파악할 수 있는 피후견인의 재산 내역을 조사해야 함. 그래야만 투명하고 계획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임.

후견인은 매년 법원에 정기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후견사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의 재산변동내역을 보고해야 하는데, 개시 시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변동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음.

재산조사를 진행할 경우, 지자체 담당자 등 지원자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던 재산이 발견될 수 있고, 은폐되거나 주위 사람에게 의하여 일탈된 재산 피해가 발견될 수도 있음.

재산조사는 사회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재산내역부터 조사를 시작함²³. 사회조사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역까지 후견인이 조사하여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임.

차기 정기후견사무보고서에 추가하여 보고함. 다만,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경우 매월 1회 후견인이 월정기보고서, 금전지출내역서, 후견활동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매월 금전지출내역서 작성을 위해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음.

(2) 예금에 대한 재산조사 방법

(가) 사회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 또는 수급비 계좌 관리 은행 방문 -> 해당 은행의 피후견인 명의 잔고증명서 발급

(나) 잔고증명서상 모든 예금계좌의 과거 1개년 거래내역서 발급 : 과거 거래내역을 조사하면 피후견인의 소비습관, 생활패턴, 숨겨져 있던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수 있음.

(다) 수급비 계좌를 비롯한 사용 중인 계좌 파악 : 비밀번호 변경, 지급정지, 압류 내역, 자동이체 내역,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존재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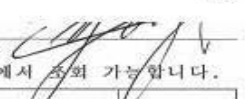
(라) 드물지만, 후견이 개시되었음을 이유로 은행 직원이 피후견인 계좌를 사고계좌로 등록하고, 지급정지 및 자동이체된 것을 모두 해지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

22 성년후견의 경우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및 제출은 법적 의무임(민법 제941조). 한정후견의 경우에도 법원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고 있음.

23 참고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경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위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후견인 명의의 거의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음.

도록 은행 직원에게 유의해달라고 당부함이 바람직함²⁴.

그림 9 예금 잔고 증명서 예시

잔액·잔고 증명서 (예금·신탁·간접투자증권·보관어음·CMA·발행어음) Certificate of Deposit/Trust/Investment Trust/Custody Bill/CMA/Note Balance		신한은행 SHINHAN BANK	
		증서번호 (No.): 3566791	발급번호: 36284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주 (Depositor)·위탁자 (Trustee): 원본수익자 (Beneficiary of Principal): 이익수익자 (Beneficiary of Interest): 			
예금·신탁종류 (Type of Deposit)	지출예금	계좌번호 (A/C No.)	100-123-123456
금액 (Amount) / 평가금액 (B/A)	KRW 2,000,000	금액 중 미결제 타점권 금액 (Amount of Uncleared Checks & Bills)	
잔고좌수 (No. of Shares Held) / 매출금액 (Sales Value)		환율 (Exchange Rate, 기준가 (Net Asset Value))	
지급제한내용 (Withdrawal Restrictions)	해당없음		
* 금액 중 미결제 타점권 금액은 부도 처리될 경우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예금·신탁종류 (Type of Deposit)		계좌번호 (A/C No.)	
금액 (Amount) / 평가금액 (B/A)		금액 중 미결제 타점권 금액 (Amount of Uncleared Checks & Bills)	
잔고좌수 (No. of Shares Held) / 매출금액 (Sales Value)		환율 (Exchange Rate, 기준가 (Net Asset Value))	
지급제한내용 (Withdrawal Restrictions)			
* 금액 중 미결제 타점권 금액은 부도 처리될 경우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예금·신탁종류 (Type of Deposit)		계좌번호 (A/C No.)	
금액 (Amount) / 평가금액 (B/A)		금액 중 미결제 타점권 금액 (Amount of Uncleared Checks & Bills)	
잔고좌수 (No. of Shares Held) / 매출금액 (Sales Value)		환율 (Exchange Rate, 기준가 (Net Asset Value))	
지급제한내용 (Withdrawal Restrictions)			
* 금액 중 미결제 타점권 금액은 부도 처리될 경우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예금·신탁종류 (Type of Deposit)		계좌번호 (A/C No.)	
금액 (Amount) / 평가금액 (B/A)		금액 중 미결제 타점권 금액 (Amount of Uncleared Checks & Bills)	
잔고좌수 (No. of Shares Held) / 매출금액 (Sales Value)		환율 (Exchange Rate, 기준가 (Net Asset Value))	
지급제한내용 (Withdrawal Restrictions)			
* 금액 중 미결제 타점권 금액은 부도 처리될 경우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금액 합계 (Total Amount)	금	이 백 만 원 정	2,000,000
미결제 타점권 합계 (Total Amount of Uncleared Checks & Bills)			₩0
귀하의 예금·신탁·CMA·발행어음·보관어음잔액, 간접투자증권 평가금액이 2020년 04월 12일 현재로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In reply to your request, we certify that Deposit(s), Trust(s), Investment Trust(s), Custody Bill(s), CMA(s), Note(s) we hold in your name shows/showed the above amounts as of the close of business on 2020-04-12.			
신한은행		발급일자 (Issuing Date)	2020-04-13
 증명서 발급 전위는 홈페이지 (www.shinhan.com) / 각편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책임자 서명	 Authorized signa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액 중 미결제 타점권 금액은 입금내역 중 계좌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을 말하며 인할 부도 처리될 경우 금액에서 차감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mount of uncleared Checks & Bills refers deposits made through banker's personal checks, money orders, promissory notes, etc. Deposits that fail to clear will be deducted from the total amount. 보관어음 금액은 전부 미결제 타점권입니다. All amount of custody bills are uncleared checks or bill. 평가금액은 간접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을 말하며, 기준가격의 등락에 따라 매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B/A(Balance Amount) refers investment trust balance and can be changed by daily Net Asset Value. 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영업점장의 확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Where general manager's confirmation is not obtained for deposit(s) over one billion won, this certificate is null and void. 		자점장 서명자 견인 Branch examiner's Confirmation	영업점장 확인 General manager's Confirmation
잔액·잔고 증명서 (2010. 08 개정)		1-103-0014021.0×29,75 NCR용지 54g/m ²	

24 그 외 체크카드 이용 등 은행업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은 "III, 1, 나, 다." 참조(P. 95)

(3) 보험에 대한 재산조사 방법

〈사례 1-7〉 A는 피후견인 B 명의의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A는 사랑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한 뒤 상담원에게 일단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팩스나 이메일, 편한 방법으로 보내줄테니 확인해보고, 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음. 10분 뒤 상담원은 보험증권을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음.

보험증권을 받아 본 A는 B명의의 보험 수익자가 김갑동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B가 사망하면 1억 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그런데 B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고, B의 제적등본을 통해 확인한 형제들 중에도 김갑동은 없었음. 주민센터 담당자 등에게 수소문한 결과 김갑동은 5년 전 B의 옆집에 살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A는 보험사에 방문하여 보험증권 수익자 명의를 김갑동에서 B로 변경하였음.

(가) 보험사로부터 계약 내용 확인서, 보험증권 등을 받을 수 있음.

먼저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한 후, 피후견인의 인적사항과 후견인임을 밝히고, 보험증권을 받는 방법을 문의해야 함. 이 때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면 좋음. 그 후 보험사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내방 또는 팩스 수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험증권을 받으면 됨²⁵.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의 내용, 납입 보험금, 보험만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함.

(나) 만약, 수익자가 제3자인 경우, 수익자가 누구인지, 피후견인과의 관계와 수익자로 기재된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함. 만약 수익자로 기재된 사람과 피후견인과의 관계나 특별한 경위가 소명되지 않으면 수익자를 피후견인 본인 또는 공란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²⁶.

25 보험사마다 실무가 다를 수 있음.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팩스 등으로 받아보면, 바로 보험증권을 팩스로 보내주는 곳도 있고, 반드시 보험사에 내방하라고 하는 곳도 있음.

26 수익자를 공란으로 변경하면, 향후 피보험자인 피후견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됨.

(4) 임대차계약에 대한 재산조사 방법²⁷

〈사례 1-8〉 사회조사보고서에 피후견인 B는 임대인 C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월 20만 원에 현재 거주지를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었음. 그러나 후견인 A가 아무리 피후견인 B의 집을 찾아보아도 임대차계약서를 찾을 수 없었음. 피후견인 B의 요양보호사도 임대차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하였음. 후견인 A는 임대인 C에게 임대차계약서를 한 부 복사해달라고 요청하였음. 임대인 C는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해주겠다고 답은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후견인 A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않고 있음.

답답해진 후견인 A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피후견인 B 명의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하였음. 동 주민센터에서는 피후견인 B가 2015년 5월 20일부터 2년간 현 거주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20만 원에 임차하였고, 같은 날 “311”번으로 확정일자를 발급받았다는 확정일자 발급내역 조회서를 발급해주었음.

(가) 피후견인이 거주지를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임. 이 때 임대인이나 요양보호사 등 제3자가 알려주는 것만으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믿어서는 안 됨. 적어도 임대차계약서 또는 확정일자 발급내역 조회 등을 통해 정확한 임대차계약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나) 피후견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임대인에게 복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임.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복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임대차계약을 증개한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계약서 사본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다) 공인중개사도 없다면 거주지 소재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피후견인 명의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하면 됨.

확정일자 부여현황에는 확정일자 부여일, 번호, 부여기관,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등이 기재되어 있음.

27 임대차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III. 바.” 참조(P. 114)

체납 세금 내역을 조사하고, 피후견인의 형편에 맞게 납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드물게 명의도용 등으로 인해 과도한 소득세,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이 때는 그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통해 법적 구제책을 모색해야 함.

(7) 채권, 채무

〈사례 1-9〉 후견인 A가 피후견인 B를 방문한 날, 우연히 D라는 사람을 마주치게 되었음. D는 B가 혼자 딱하게 지내고 있어 1년 전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음. 그 뒤에 B가 치매가 심해져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 후견인이 선임되었으니 너무 잘되었다며 B가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였음.

A는 D에게 B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받은 차용증이나 B에게 돈을 이체한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고 물어보았음. D는 그냥 현금을 빌려준 것인데 그렇게 남아 있겠냐며 크게 화를 내었음.

그 뒤 A가 수소문하여 1년 전 B를 돌봐주었던 요양보호사에게 물어본 결과, 그 당시에도 B는 치매가 심했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쓴 적도 없고, 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음.

〈사례 1-10〉 후견인 A는 피후견인 B가 2년 전 현 거주지로 이사오면서, 종래 거주지의 임대인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실제 B의 계좌거래내역서를 보더라도, 이사한 날 종전 거주지 임대인으로부터 500만 원이 입금된 내역만 있을 뿐이었음.

A는 E에게 남은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음. E는 A에게 한 달만 시간을 주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알려왔음. A는 E가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하기로 하고, 감독인과 논의하여 소송행위 허가 심판청구를 준비하기로 하였음.

(가) 채권

Check List

피후견인이 보유한 채권이 발견되었는가

그렇다 아니다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등 채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였는가

그렇다

입증자료의 종류 : _____

아니다

채권의 내용,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는가

그렇다(이하 기재)

채권액 : _____ 원

변제기 :

이자 :

채무자 성명 : _____, 연락처 : _____

채무자 주소 :

아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닿는가

그렇다

연락일자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연락방법 : 휴대폰 전자우편 대면

아니다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그렇다 아니다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였다고 하는가

그렇다

채무자가 주장하는 변제액 : _____ 원

채무자가 제시하는 증명서류 :

아니다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법적 절차(내용증명발송, 소송 등)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가

그렇다 아니다

피후견인이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을 수 있음. 대여금 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등이 대표적임.

채권은 보통 지자체 담당자, 요양보호사 등이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그 밖에도 피후견인의 과거 예금거래내역을 조사하다가 발견되거나, 피후견인의 주거지를 정리하다가 계약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음.

피후견인에게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발견되면, 금액, 변제기, 이자, 채권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함. 채무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아내면 채무자와 접촉하여 변제를 촉구해야 함.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면 그 내용과 송금자료나 영수증 등 입증할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함. 채무자 중에는 이미 변제한 것인데 그 내용을 뒤늦게 알려달라는 것에 불쾌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임. 이 때는 법원에 보고해야 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양해해달라고 채무자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함.

채무자의 정확한 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채무자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다면서도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을 검토해야 함²⁹.

29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IV., 2., 라., (3)" 참조(P. 201)

(나) 채무

Check List

피후견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발견되었는가

그렇다 아니다

채무의 내용,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는가

그렇다(이하 기재)

채무액 : _____ 원

변제기 :

이자 :

채권자 성명 : _____, 연락처 : _____

채권자 주소 :

아니다

채권자와 연락이 닿는가

그렇다

연락일자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연락방법 : 휴대폰 전자우편 대면

아니다

채권자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았는가

그렇다

증빙서류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기타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기타 서류(_____)

아니다

피후견인이 채무를 변제하였는가

그렇다

변제액 : _____ 원

증명서류 :

아니다

피후견인이 채무를 변제할 자격이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채무변제계획을 채권자와 협의하였는가

그렇다

일시변제(변제예정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분할변제(분할횟수 : _____회, 변제주기(ex. 주1회, 월1회 등) : _____, 횟수별
변제액 : _____원)

아니다

채권자가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가

그렇다 아니다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 등 법적 조
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1) 피후견인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는 발견하기 쉬운 편임. 보통 지자체 담
당자, 요양보호사 등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임. 그렇지 않더라도 후견이 개시되면 채권자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음. 후견인은 채무가 진실한 것인지, 이미 변제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파
악해야 함.

1 채권자 등으로부터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ex. 차용증,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를 요청해야 함. 단순히 차용증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같은 송금내역 등 소명자료
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함.

2 피후견인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채무를 변제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해야 함.

2)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무가 남아 있다면,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와 협의하여 피
후견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채무를 변제해 나가야 함.

3) 조사 결과 채권자의 주장이 허위거나, 이미 피후견인이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채권자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이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대비하여 관련 자료

들을 잘 보관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함. 나아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본인에게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법적, 사실적 압박을 하거나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등에는, 선제적으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³⁰.

2. 개시 후 1년까지 실무

가. 일상적인 후견실무

후견인은 후견개시 초기에 수립한 후견계획에 따라 피후견인의 일상을 지원하면 됨. 주로 후견인이 수행하게 되는 일상적인 후견실무는 다음과 같음³¹.

- (1) 예금거래내역 조회, 예금 이체 등 은행 업무
- (2) 기초생활수급비 등 공적부조 관리업무
- (3) 일상생활비 지출 지원 업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식료품, 의복, 기타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됨.

- (4) 일상적인 의료행위 지원

피후견인의 정기적인 병원진료, 약처방 등을 지원하여야 함.

- (5)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등 업무

나. 매월 정기보고서 작성

〈사례 1-11〉 후견인 A는 지난 1개월 간의 후견사무 수행 내역을 보고하기 위해 정기보고서를 작성하였음. A는 곧 여름이 오기 때문에 피후견인 B와 함께 인근 마트에 방문하여 여름옷을 구입하였던 것과 요양보호사가 요청하여 B가 먹을 과일을 구입한 적이 있었음. 그 때 일단 A 비용으로 지출하고, 이후 B 계좌에서 A에게 그 돈을 이체하였음. A는 정기보고서에 여름옷, 과일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고 지출 사실을 밝혔음.

30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IV., 2., 라., (3)” 참조(P. 201)

31 상세한 내역은 “III.” 참조(P. 95)

<p>2. a) 자유가 제한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지 여부 b) 자유제한 시설은 아니지만, 생활시설, 요양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지(특히 피후견인이 임의로 시설에서 벗어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배치 또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 자유제한 시설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 여부 확인 필요</p>
<p>3. 피후견인의 상태</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스로 신변을 돌볼 수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지</p>
<p>4. 연금 및 기타 사회복지급여수령. ※ 최초로 수령하였거나 변경된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하기 바람.</p>	<p>(연금 등의 종류, 지급장소, 액수 등) 기초생활수급비 44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합계 74만 원</p>
<p>5. 급여 및 연금 등을 지급받는 은행</p>	<p>은행 신한 계좌번호 100-12-1234567</p>
<p>생활비의 사용처 : <input type="checkbox"/> 식비 <input type="checkbox"/> 의복 등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일상 생활비 <input type="checkbox"/> 기타</p>	<p>(금액 등 내역) 식비 50,000원, 의류 구입 50,000원. 상세내역은 지출내역서 참조 * 지출내역서 대체 가능</p>
<p>6. 생활비 부담자 (법인인 경우 법적 주체, 주소지)</p>	
<p>7. 기본 생활비 이외의 용돈의 사용처</p>	<p><input type="checkbox"/> 용처 취미활동, 사교활동 <input type="checkbox"/> 월 액수 10만 원 <input type="checkbox"/> 관련 은행 및 계좌번호</p>
<p>용돈 지급방법</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금(후견인이 지급할 경우 지급일자 등)매월 수급비 수령일 <input type="checkbox"/> 체크카드사용 등</p>
<p>8. 피후견인이 금융자산(정기예금 등)을 보유하는 경우</p>	<p>(1) 정기예금 <input type="checkbox"/> 은행신한 계좌번호 100-25-3456789 <input type="checkbox"/> 액수 200만 원 <input type="checkbox"/> 만기 : 2020.5.30. (2) 수급비 계좌 : 5항과 동일</p>
<p>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처분이 가능한 피후견인의 금융계좌(정기예금 등)</p>	<p>상동</p>
<p>매월 금융계좌로 입금되는 액수(평균)</p>	<p><input type="checkbox"/> 액수 평균 74만 원(공적부조)</p>
<p>그 밖의 유가증권</p>	<p><input type="checkbox"/> 내역 없음</p>
<p>9. 보고 기간 중 피후견인이 구입한 물건(일상생활용품 제외) 또는 권리 건강보조제(홍삼). 구입가격 5만 원.</p>	

10. 보고 기간 중 피후견인을 위해 법률행위 또는 신상결정을 대리한 경우

-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 주거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 :
-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법률행위(부동산거래, 돈을 빌리는 것 등)
- 은행 관련 업무
- 공법상의 신청행위
- 기타

11. 보고기간 중 피후견인과의 직접 방문 또는 대면한 횟수(피후견인의 주거지 방문 등)
2회. 2020. 3. 10., 2020. 3. 30.

12. 피후견인에게 배달된 중요한 우편물, 통지 등의 처리상황

- 피후견인이 스스로 처리
- 후견인의 지원

13.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 및 긴급연락망

임대인 김00 : 010-2222-3333, 주민센터 담당자 이00주무관 : 02-222-4444

14. 기타 보고할 사항(피후견인의 일상생활상의 모습, 건강 상태, 기타 주목할 만한 부분, 어려움 등)
외부활동에 대한 욕구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무기력한 모습이 보임.

다. 금전지출내역서 작성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의 증감변동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보고해야 함.

매월 금전지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여 감독인에게 제출하면 향후 매년 정기후견사무보고서 작성시 도움이 됨.

표 9 금전지출내역서 작성례

피후견인 재산 관련 금전지출내역										
기재 날짜	보통예금(A) 계좌			정기예(적)금 계좌 총액 2,000,000			후견인 보관금액 총액 : 만 원			내역
	수입	지출	잔액	수입	지출	잔액	수입	지출	잔액	
20.3.10.	74만		74만							
20.3.10.		10만	64만							피후견인 용돈

20.3.10.		2만	62만							병원진료, 약제비 (영수증 첨부)
20.3.30.		20만	42만							임대료 (자동이체)
20.3.30.		2만	40만							도시가스, 전기료 (자동이체)
20.3.30.		5만	37만							과일 구입 (영수증첨부)
20.3.30.		5만	32만							여름옷 구입 (영수증첨부)

라. 후견활동내역서 작성

후견인은 매일 자신의 후견사무 수행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함.

표 10 후견활동내역서 작성례

활동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확인	
			후견인	담당자
20. 3. 10.	3시간	피후견인 방문, 병원동행, 약처방 등	(서명)	(서명)
20. 3. 15.	0.5시간	피후견인 전화통화, 안부확인	(서명)	(서명)
20. 3. 30.	3시간	피후견인 방문, 시장 방문, 과일 및 의류 구입 등	(서명)	(서명)
20. 4. 1.	2시간	치매안심센터 방문, 사례회의	(서명)	(서명)
20. 4. 3.	2시간	정기보고서, 금전지출내역서 작성	(서명)	(서명)

마. 매년 정기후견사무보고서 작성

〈사례 1-12〉 후견인 A는 정기후견사무보고 기간이 도래하였다는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의 연락을 받았음. 후견개시 당시 파악해두었던 피후견인 B의 예금계좌들의 지난 1년간

거래내역을 다시 조회하였고, 수입, 지출 내역을 정리하였음.

A는 대법원 나홀로소송사이트를 통해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음. B를 만난 빈도, B의 현재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을 상세히 작성하였음. B가 직접 사용한 돈은 “본인 소비”로 기재하고, 그 외 A가 직접 관리한 내역들은 상세하게 지출내역을 기재하였음. 후견사무보고서에는 영수증과 안심센터에 제출했던 월 정기보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였음. 후견사무보고서 말미에는 1년 간의 후견사무수행내역에 대한 소회와 향후 계획도 기재하였음. A는 작성된 후견사무보고서를 PDF파일로 저장한 뒤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에게 송부하였음.

후견인은 매년 정해진 기간 동안의 후견사무 수행 내역을 정리한 정기후견사무보고서를 감독인에게 제출해야 함. 감독인은 같은 기간의 후견감독보고서를 작성한 뒤 후견사무보고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함.

매월 후견인이 충실히 작성한 정기보고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경우, 정기 후견사무보고서는 간략하게 기재해도 무방함.

(1)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기준일

후견인은 매년 정해진 날을 기준일로 하여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인에게 제출해야 함. 통상 법원에서는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특정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음.

☞ 11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기준일 예시

1.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심판확정일을 확인함.

2020. 3. 10.이 확정일이라면, 2020. 3. 10.부터 2021. 3. 10. 까지의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함. 그 다음해는 2021. 3. 11.부터 2022. 3. 10.까지의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2. 특정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심판문에 2020. 3. 31.을 시작으로 매월 3. 31. 보고서를 감독인에게 제출하고, 감독인은 2020. 4. 30.을 시작으로 매월 4. 30. 감독보고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 : 심판 내용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함.

3. 매년 후견보고서 및 후견감독보고서 제출 기한을 기재하는 경우

심판문에 기재된 날까지 후견사무보고서 및 감독보고서를 각 제출함.

(2) 후견사무보고서의 내용

후견사무보고서는 크게 1 피후견인·후견인·후견감독인의 인적사항, 2 신상보호내역, 3 재산목록, 4 수입·지출내역, 5 향후 계획 및 후견인의 의견으로 나뉨.

(3)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전 준비사항(Check List)

후견사무보고서와 함께 그간 후견사무 수행 내역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제출함.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2 후견사무보고서 증빙서류 예시

구분	항목	상세설명	구비여부 체크
필수	은행 잔고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조회기준기간 = 보고기간 신규계좌 · 정기예금도 모두	
	계좌 해지 증명서, 이체증명서	예금계좌를 해지한 경우, 해지 증명서 및 이체 내역서 첨부	
	금전지출내역서	매월 작성한 금전지출내역서를 보고기간에 맞추어서 제출하면 됨. 수입, 지출내역 모두 기재	

필수	수입과 관련한 증빙서류	계좌 거래내역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으면 생략가능 (Ex. 수급비, 기초연금 등은 생략가능)	
	지출과 관련한 증빙서류 (영수증 등)	피후견인이 직접 소비한 용돈은생략 계좌 거래내역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 항목은 생략 가능 (Ex. 자동이체를 해 둔 공과금, 세금) 후견인이 대리하여 이체하거나 지출한 내역은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기타 재산 변동 내역 증빙서류	Ex. 1 임대차계약 체결시 → 임대차계약서 첨부 2 신규 보험 계약 체결시 → 보험증권 첨부	
	정기보고서, 후견활동내역서	매월 작성한 것을 제출하면 됨.	
	피후견인 생활 사진	주거환경 등 피후견인 생활상이 드러나는 사진으로 최대 10매	
	진단서	피후견인 건강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피후견인이 종합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 → 그 시점에 발급받은 진단서 or 보고 기준일에 근접한 시점에 발급받은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소확인서	종합병원 · 요양병원 입원, 요양원 입소시	
	소송위임장, 소송 진행 내역 (나의 사건검색 캡처 등), 판결문	소송 진행시, 종결 전이라도 중간보고차원에서 관련 자료들 제출	
선택	진단서	피후견인의 건강상태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 보고 기준일에 근접한 시점에 발급받은 진단서가 있다면 제출해도 무방함.	
	사례회의록	정기보고서 등으로 불충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메모, 카카오톡 내용 등		
	기타	기타 후견사무보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4) “나홀로소송”을 통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방법

(가) 나홀로소송을 통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의 장점

후견사무보고서는 아래 4가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음. ① 자필기재와 ② 한글파일 작성 방식은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일이 재산가액 · 지출내역 · 수입내역을 더해야 하

며,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② 한글파일 작성 방식의 경우, 한글파일 서식에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표 크기 · 위치 등을 맞춰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가중될 수 있음. 그에 반해 ③ 나홀로소송과 ④ 전자소송 방법은 재산내역 등을 한 번만 기재하면 자동으로 그 합계액 등을 계산해주고, 후건사무보고서 형식에 맞게 정리해준다는 점에서 작성하기 편리함. ④ 전자소송 방식은 개개의 후건인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후건감독사건을 등록해야 한다는 점에서 번거로움이 있음. 따라서 본 매뉴얼에서는 ③ 나홀로소송 방식으로 후건사무보고서를 작성하기를 권고함.

표 13 후건사무보고서 작성방법별 장 · 단점

순번	방법	장점	단점
1	자필기재	컴퓨터 등에 익숙하지 않은 후건인도 작성할 수 있음.	작성에 오랜시간이 걸림. 계산 오류 위험 높음(직접 재산가액, 지출액, 수입액 등을 합하고 빼야 하기 때문) 번거로움(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
2	한글파일 작성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후건인도 작성할 수 있음.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서도 작성할 수 있음.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등이 필요 없음.	1의 단점에 추가하여, 한글파일의 특성상 보고내용이 길어질 경우, 표가 이동되거나, 사라지는 등 오류가 발생함. 보고서 작성할 때보다 그 오류를 수정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 자주 발생함.
3	나홀로 소송	가장 작성하기 편리함.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됨. 오류 발생 가능성 낮음.	기초적인 수준의 컴퓨터, 인터넷을 다룰 줄 알아야 함(사이트에서 후건사무보고서 작성 후 pdf를 다운받고, 그 파일을 안심센터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사무를 인터넷에서 할 수 있어야 함). 작성한 후건사무보고서와 증빙서류를 별도로 법원에 제출해야 함(전자소송 또는 우편).
4	전자소송	작성하기 편리함. 시간이 적게 소요됨. 작성한 후건사무보고서와 증빙서류를 곧바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나홀로소송보다 다루기 어려움.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회원가입 후 후건감독사건을 전자소송 후건인 계정에 등록하는데 시간이 소요됨. 전자소송 이용 방법을 익히는데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함.

(나) 나홀로소송을 통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방법

자필, 한글파일로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아래 “5)단계”부터는 동일함.

- 1) 검색사이트에 “대법원 나홀로 소송” 검색 또는 https://pro-se.scourt.go.kr 입력
- 2)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그림 12 나홀로 소송 초기 화면



- 3) 로그인 후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클릭(작성 중이던 보고서가 있는 경우, “나의 문서함” 클릭)

그림 13 로그인 후 나홀로소송 메인화면에서 보고서 작성하기



4) 대상사건 검색 후 등장하는 사건 기본정보 확인 후, “작성하기” 버튼 클릭(Cf. 대상사건 검색을 하지 않고, 곧바로 “작성하기”를 클릭해도 됨)

그림 14 나홀로소송 사건검색

후견사무보고서

1 회원가입후 로그인 하시면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작성하는 경우 대상사건을 검색하시고 기본정보를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가 후견인이 아닌 경우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후견사무보고서란 • 동영상안내 • 사건검색 동영상안내 • 작성가이드 • 양식
 ※ 항목을 클릭하시면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작성방법에 대한 동영상안내, 작성가이드 및 후견사무보고서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① 대상사건 검색 법원, 사건번호, 피후견인 성명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관할법원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2019 후감 12345 피후견인 B **조회**

-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조회하여 작성하시면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이 자동입력되므로 작성이 편리합니다.

② 사건 기본정보

사건번호	2019후감12345	사건명	특정후견감독(기본)
관할법원	서울가정법원	재판부	가사20단독(비송)
후견인	A	피후견인	B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사건기본정보 확인 후 작성하기 버튼 클릭

5) 기본사항 작성

가) 앞에서 대상사건검색을 한 경우, 관할법원, 사건번호, 후견종류,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원 시스템에 저장된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됨.

나) 앞에서 곧바로 “작성하기”를 클릭한 경우, 기본사항의 내용들을 모두 직접 기재해야 함.

다) 피후견인에게 후견인 외에 다른 동거가족, 직계혈족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의 보호자 연락처 등록”버튼을 클릭하고, 가족의 인적사항 기재해야 함.

라) 후견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고, “변경사항 있음” 클릭해야 함.

마) 공동후견인인 경우, 다른 후견인 “있음”에 클릭하고, 공동후견인의 인적사항 기재해야 함.

바) 후견감독인에 대한 사항 기재해야 함.

사) 작성 중간중간 반드시 “임시저장”할 것을 강력히 권함.

아)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버튼을 클릭함.

그림 15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기본사항

기본사항	신상보호	재산목록1	재산목록2	수입내역	지출내역	요약표	첨부서면
-------------	------	-------	-------	------	------	-----	------

경고사항 • 기본사항이란? • 기본사항 가이드 • 기본사항 동영상안내
 ※ 항목을 클릭하시면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작성가이드 및 작성방법에 대한 동영상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기본 신상 정보를 기재합니다.

관할법원 *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	2019	후감	12345
보고 대상기간 *	2019.04.01	-	2020.03.31	후견 종류 *	<input type="checkbox"/> 성년후견 <input type="checkbox"/> 한정후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정후견 <input type="checkbox"/> 임의후견 <input type="checkbox"/> 미성년후견

●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보호자 연락처 등록 (전문후견인의 경우)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341203	-	●●●●●●●●
주소	0616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51	- 주소찾기	연락처 *	010 - 1111 - 1234
			(삼성동, 연남(Yeonnam)빌딩)		
			선택 - -		

● 후견인

성명 *	A	주민등록(법인)번호 *	600415	-	●●●●●●●●
주소	0616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 주소찾기	연락처 *	010 - 1234 - 5678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선택 - -		
피후견인과의 관계 *	시민(공공)후견인		주소변경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경사항없음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있음		

● 위 후견인 외에 다른 후견인이 있습니까? 없음 있음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법인)번호	-	연락처 *	선택 - -	선택 - -
			선택 - -		

● 후견감독인이 있습니까? 없음 있음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명 *	서울시 강남구	주민등록(법인)번호	-	연락처 *	선택 - -	02 - 222 - 3333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법원 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수집, 이용함

< 이전	다음 >	임시저장	미리보기	작성완료	출력
------	------	------	------	------	----

그림 17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신상보호02

해당 □에 √표하고 상태변화가 있는 경우 아래 칸에 구체적인 상황을 작성합니다.

● 건강상태 ?	
정신적 상태 *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음 <input type="checkbox"/> 상태 호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태 악화 치매가 심해져 장소, 시간에 대한 인지력이 저하되었음.
신체적 상태 *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음 <input type="checkbox"/> 상태 호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태 악화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외부활동을 하지 못해 신체기능이 저하되었음.
● 제공된 후견서비스 ?	
서비스 항목 *	서비스 내용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활유지 ?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간호 ?	요양보호사가 하루 4시간 방문하여 지원하고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거확보 ?	임대인 김00에게 현 주거지를 월 20만 원에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료 ?	월 1회 병원에 방문하여 치매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교육 ?	
<input type="checkbox"/> 재활 ?	
<input type="checkbox"/> 시설입퇴소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신상에 관한 특이사항 및 의견 ?	
후견지속여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속 <input type="checkbox"/> 종료 사유 <input type="text"/>
후견범위 변경여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경 없음 <input type="checkbox"/> 변경 있음 변경내용 <input type="text"/>
향후 보호계획 *	현행과 같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7) 적극재산 작성

피후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을 작성함.

후견개시시 정리해둔 재산목록, 종전 제출한 후견사무보고서를 참고해야 함. 변경내역은 후견사무보고서 “재산변동상황”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변동이 없는 적극재산 내역도 반드시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그림 18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적극재산

적극재산 적극재산이란 피후견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며, 부동산(토지, 건물), 예금·보험·증권및펀드, 보증금반환채권, 현금, 차량, 유체동산, 기타 재산권, 대여금기타 채권을 말합니다.

● **부동산** ?

건명	부동산 종류	소재지	시가(원)	
부1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input type="text"/> - 주소찾기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공시지가 <input type="checkbox"/> 실거래가 - +
<p><small>⚙️ 작성란 부족시 화면 우측의 '+'를 눌러 추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삭제시 '-'를 눌러서 삭제하시면 됩니다.</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공시지가 열람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열람 개별단독주택 열람 상가, 오피스텔 기준시가(서울) 상가, 오피스텔 기준시가(지방) 				
1.부동산총액			- 합계계산하기	<input type="text"/>

● **예금** ?

건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고(원)	
예1	신한은행(수급비계좌)	100-12-1234567	321,000	-
예2	신한은행(정기예금)	100-25-3456789	2,000,000	- +
<p><small>⚙️ 작성란 부족시 화면 우측의 '+'를 눌러 추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삭제시 '-'를 눌러서 삭제하시면 됩니다.</small></p> <p><small>※ 1만원 미만은 기재하지 않습니다.</small></p>				
2.예금총액			- 합계계산하기	2,321,000

● **보험** ?

건명	보험회사명	증권번호	납입금 총액(원)	
보1	kb생명보험	100023455	5,000,000	- +
<p><small>⚙️ 작성란 부족시 화면 우측의 '+'를 눌러 추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삭제시 '-'를 눌러서 삭제하시면 됩니다.</small></p> <p><small>※ 1만원 미만은 기재하지 않습니다.</small></p>				
3.보험총액			- 합계계산하기	5,000,000

8) 그 외 적극재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유체동산 기타 피후견인이 제3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을 기재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 임대차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그림 19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그 외 적극재산

● 그 외 적극재산

자산항목	내용				
보증금 반환채권 ?	소재지		보증금(원)	임대기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51 - 주소찾기 (삼성동, 연남(Yeonnam)빌딩)		20,000,000	2015.05.20 ~ 2021.05.19	-
	서울 강서구 000로 11길 - 주소찾기 지하1층		5,000,000	2013.05.20 ~ 2015.05.19	+ +
	현금 <input type="text"/> (원)				
차량 ?	• 차량기준가액				
	건명	차종	년식	등록번호	시가(원)
	차1		선택 ▼		- +
유체동산 ?	▽ 골동품, 예술품, 귀금속, 악기 등 고가의 유체동산 내역을 작성합니다.				
	유체동산명	시가(원)	유체동산명	시가(원)	- +
	유1		유2		- +
기타 재산권 ?	▽ 피후견인의 저작권, 특허권 등에 관해 작성합니다.				
	재산권명	가액(산정가능한 경우) (원)			- +
					- +
대여금 ?	대여일	채무자명	채권액(원)	채권회수일	-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기타 채권 ?	채권발생일	채무자명	채권액(원)	채권회수일	-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5.그 외 적극재산 총액	- 합계계산하기			25,000,000	

9) 소극재산 및 재산 총액

피후견인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함.

소극재산까지 모두 기재하면 이들을 모두 합한 금액[적극재산 총액 - 소극재산 총액]이 “재산총액”란에 자동으로 기재됨.

그림 20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소극재산 및 재산총액

● 소극재산 소극재산이란 피후견인이 갚아야 할 채무(빚)를 말하며 담보대출, 보증금반환채무, 신용대출, 차용금, 기타 채무를 말합니다.

적극재산의 해당 건명을 표기한 후 구체적 내용을 작성합니다.

담보대출 ?	건명	금융기관	대출금(원)	상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가압류나압류등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
보증금 반환채무 ?	건명	채권자	채무반환일	반환채무액(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
기타채무	신용대출 ?	금융기관	대출금	대출만기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
	차용금 ?	차용일	채권자	차용금액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	
기타 ?	내용			금액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
6. 소극재산 총액		<input type="button" value="- 합계계산하기"/>			<input type="text"/>
재산 총액		<input type="button" value="- 합계계산하기"/>			32,321,000

10) 수입내역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등 피후견인이 얻는 수입을 기재함. 실제 예금 거래내역 등에서 드러나는 수입내역과 동일해야 함.

각 항목의 금액을 기재한 뒤 “합계계산하기”를 클릭하며 자동으로 수입액을 합산해줌.

그림 21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수입내역

● 수입내역

피후견인의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건명 란에는 위 재산목록에 작성했던 건명 중 소득이 발생하는 해당 건명을 작성합니다.

	부동산 건명	월소득×12개월 =1년 임대소득	
임대소득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원/월 × (<input type="text"/>) 개월 = (<input type="text"/>)원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
	① 임대소득합계		<input type="button" value="- 합계계산하기"/> <input type="text"/>
연금 및 사회보장 수급권 ?	수급 명칭	월 수금액×12개월 =1년 수급총액	
	기초생활수급비	(<input type="text" value="440,000"/>)원/월 × (<input type="text" value="12"/>) 개월 = (<input type="text" value="5,280,000"/>)원	<input type="button" value="-"/>
	기초연금	(<input type="text" value="300,000"/>)원/월 × (<input type="text" value="12"/>) 개월 = (<input type="text" value="3,600,000"/>)원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
	② 수급합계		<input type="button" value="- 합계계산하기"/> <input type="text" value="8,880,000"/>
이자소득 ?	건명	이자수익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원/월 × (<input type="text"/>) 개월 = (<input type="text"/>)원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
	③ 이자소득합계		<input type="button" value="- 합계계산하기"/> <input type="text"/>
수입항목	소득금액	첨부서류	
자영수입 ?	④ <input type="text"/>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해당 1년분	
근로소득 ?	⑤ <input type="text"/>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개인연금소득 ?	⑥ <input type="text"/>	수급 증명서	
보험료수입 ?	⑦ <input type="text"/>	보험금 수령 확인서	
기타수입 ?	⑧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관련 증명서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
수입총액			<input type="button" value="- 합계계산하기"/> <input type="text" value="8,880,000"/>

11) 지출내역

피후견인의 생활유지를 위해 지출한 내역 일체를 기재함.

피후견인 예금 거래내역상 지출된 내역과 일치되어야 함.

피후견인이 직접 지출한 것은 “용돈” 또는 “피후견인 직접 지출”로 기재하고, 그 액수를 기재함.

매번 부정기적으로 지출한 비용들은 1년 총액을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그림 22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지출내역

● 지출내역 피후견인의 지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지출항목 ?	세부항목 *	지출금액 *	
주거비 (임대료, 관리비 등)	임대료	(200,000)원/월 × (12)개월 = (2,400,000)원	- +
식비	과일, 식재료 등 구입	(100,000)원/월 × (12)개월 = (1,200,000)원	- +
건강유지 및 의료비	병원 진료비	(3,000)원/월 × (12)개월 = (36,000)원	-
	약제비	(5,000)원/월 × (12)개월 = (60,000)원	- +
공과금	도시가스비	(20,000)원/월 × (12)개월 = (240,000)원	-
	전기료	(8,000)원/월 × (12)개월 = (96,000)원	- +
교통비 및 차량 유지비		()원/월 × ()개월 = ()원	- +
피복비	의복구입비	(50,000)원/월 × (2)개월 = (100,000)원	- +
기타	피후견인 용돈	(100,000)원/월 × (12)개월 = (1,200,000)원	- +
지출총액	- 합계계산하기		5,332,000

그림 23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지출내역(매번 지출액이 다른 경우)

● 지출내역 피후견인의 지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지출항목 ?	세부항목 *	지출금액 *	
주거비 (임대료, 관리비 등)	임대료	(200,000)원/월 × (12)개월 = (2,400,000)원	- +
식비	과일, 식재료 등 구입	(1,340,000)원/월 × (1)개월 = (1,340,000)원	- +
건강유지 및 의료비	병원 진료비	(3,000)원/월 × (12)개월 = (36,000)원	-
	약제비	(5,000)원/월 × (12)개월 = (60,000)원	- +
공과금	도시가스비1월	(32,000)원/월 × (1)개월 = (32,000)원	-
	도시가스비2월	(43,000)원/월 × (1)개월 = (43,000)원	-
	도시가스비3월	(57,400)원/월 × (1)개월 = (57,400)원	-
	도시가스비4월	(10,000)원/월 × (1)개월 = (10,000)원	- +
교통비 및 차량 유지비		()원/월 × ()개월 = ()원	- +

12) 재산변동상황 및 전체의견

최초 재산조사 후 또는 종전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이후 변동된 재산내역을 기재함. 예금을 해지하거나, 신규로 개설한 경우, 그 내역도 기재함.

향후지출 및 관리계획, 재산보고관련 특이사항 및 의견, 후견인의 전체의견도 적절히 기재함. 후견사무보고서 작성란에서 기재할 수 없었던 주요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도 좋음.

그림 24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재산변동상황 등

● 재산변동상황 * ?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금	<input type="checkbox"/> 보험	<input type="checkbox"/> 증권 등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차량	<input type="checkbox"/> 유체동산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산권
<input type="checkbox"/> 대여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채권	<input type="checkbox"/> 담보대출	<input type="checkbox"/> 보증금반환채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채무	<input type="checkbox"/> 변동 없음		

변동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 □에 표기하고, 변동상황을 아래의 칸에 작성합니다.

예금 *	종전 후견사무보고서에서 보고한 농협 123-2-548372 계좌는 장기간 이용내역이 없어 해지하였음(첨부서류 - 해지영수증 참조).
기타 채무 *	E가 사건본인에게 받지 못한 돈이라고 주장한 대여금 300만 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채무내역에서 삭제하였음.
향후지출 및 관리계획 *	현행과 같이 사건본인의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을 관리할 예정임.
재산보고관련 특이 사항 및 의견 *	정기예금이 만기될 경우, 그 돈을 합하여 보다 나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후견인의 전체의견 *	지난 1년간 후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악화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함. 그러나 후견 개시 초기보다 현재 사건본인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양호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함. 앞으로도 사건본인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함.

13) 요약표

후견사무보고서를 나홀로소송을 통해 작성하면, 요약표는 자동으로 생성됨.

그림 25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요약표

재산목록 요약표			
적극재산항목	해당유무	건 수	항목소계(단위: 원)
1.부동산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2.보증금 반환채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3.예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2,321,000
4.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5,000,000
5.증권 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6.현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7.차량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8.유체동산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9.기타 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10.대여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11.기타채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① 적극재산 합계			7,321,000
소극재산항목	해당유무	건 수	항목소계(단위: 원)
12.담보대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13.보증금반환채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14.기타채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② 소극재산 합계			0
재산 총액			7,321,000

14) 첨부서류

첨부서류들도 나홀로소송에서 기재할 수 있음

그림 26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첨부서면 작성

재산목록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통	
		<input type="checkbox"/> 공시지가확인서	1 통	
	예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거래내역조회서	1 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거래내역서	1 통	
	보험	<input type="checkbox"/> 보험증권	1 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험가입확인서	1 통	
<input type="checkbox"/> 보험납입증명서		1 통		
그외적극재산	보증금반환채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통	
	차량	<input type="checkbox"/> 차량등록증 사본	1 통	
소극재산	담보대출	<input type="checkbox"/> 대출내역확인서	1 통	
	보증금반환채무	<input type="checkbox"/>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통	
	신용대출	<input type="checkbox"/> 신용대출내역확인서	1 통	
수입내역	수입항목 자영수입	<input type="checkbox"/>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해당 1년분)	1 통	
	근로소득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 통	
	개인연금소득	<input type="checkbox"/> 수급증명서	1 통	
	보험료수입	<input type="checkbox"/> 보험금 수령확인서	1 통	
기타첨부서면	기타(소명자료)	해지 영수증	1 통	-
기타첨부서면	기타(소명자료)	월 정기보고서	1 통	-
기타첨부서면	기타(소명자료)	금전지출내역서	1 통	-
기타첨부서면	기타(소명자료)	후견활동내역서	1 통	-
기타첨부서면	기타(소명자료)	후견인 대리 지출 내역 영수증	1 통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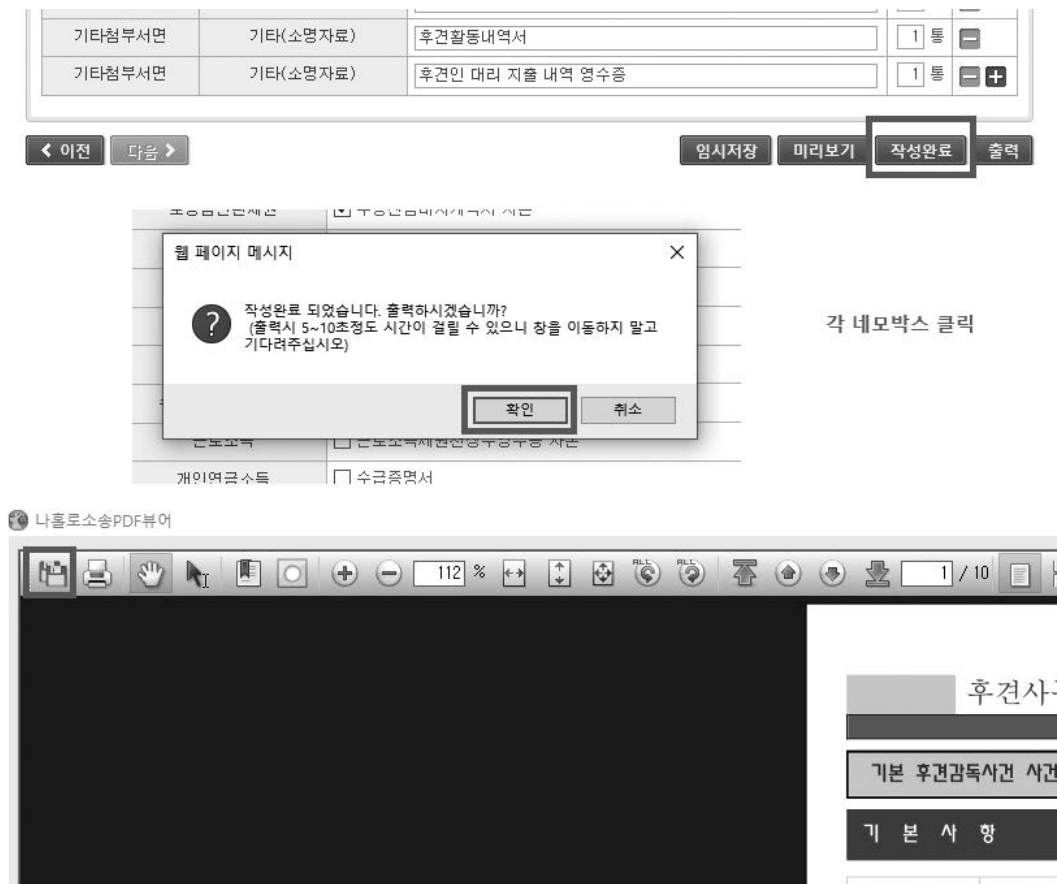
15) 작성완료 및 pdf 저장

첨부서류목록까지 작성이 완료되면 하단의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함.


이후 출력화면에서 “PDF로 저장하기” 클릭함.

저장된 PDF파일, 첨부서류들을 감독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거나 출력한 뒤 제출함.

그림 27 나홀로소송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작성하기 - pdf 저장하기



(5) 완성된 정기후견사무보고서 작성례

후견사무보고서		 서울가정법원	
기본 후견감독사건 사건번호 2019후감12345			
기 본 사 항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기본 신상 정보를 기재합니다.	
보고 대상기간	2019.04.01 ~ 2020.03.31	후견종류	<input type="checkbox"/> 상년후견 <input type="checkbox"/> 한정후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정후견 <input type="checkbox"/> 임의후견 <input type="checkbox"/> 미성년후견
피 후 견 인			
성명	B	주민등록번호	341203-2000000
주소	<small>우편번호 06160</small>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51 (삼성동, 연남(Yeonnam)빌딩)		연락처 010-1111-1234
후 견 인			
성명	A	주민등록번호	600415-2123487
주소	<small>우편번호 06160</small>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연락처 010-1234-5678
피후견인과의 관계	시민(공공)후견인	주소변경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경사항없음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있음
위 후견인 외에 다른 후견인이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있음에 √표한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후견감독인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있음에 √표한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명	서울시 강남구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02-222-3333
신 상 보 호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에 √표 하고 (나 빈 공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주소변경상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소변경 없음 ● 1년동안의 피후견인의 주소변경사항을 아래의 칸에 작성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주소변경 있음		
		변경시기	변경주소
	주소 1		
	주소 2		
주소 3			
대면접촉빈도	<input type="checkbox"/> 매일 <input type="checkbox"/> 주 ()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월 (2)회 <input type="checkbox"/> 연 ()회		
기타접촉빈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화,서신,이메일 등 <input type="checkbox"/> 매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 (2)회 <input type="checkbox"/> 월 ()회 <input type="checkbox"/> 연 ()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매일 <input type="checkbox"/> 주 ()회 <input type="checkbox"/> 월 ()회 <input type="checkbox"/> 연 ()회		

	거주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요양원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유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성명(김00) 관계(임대인)					
	동거인	성명	피후견인과의 관계	연령	직업	월수입
				세		원
			세		원	
			세		원	
건강상태	해당 <input type="checkbox"/> 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하고 상태변화가 있는 경우 아래 칸에 구체적인 상황을 작성합니다.					
	정신적 상태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음 <input type="checkbox"/> 상태 호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태 악화 치매가 심해져 장소, 시간에 대한 인지력이 저하되었음.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음 <input type="checkbox"/> 상태 호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태 악화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외부활동을 하지 못해 신체기능이 저하되었음.				
제공된 후견서비스	서비스 항목	서비스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활유지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간 호	요양보호사가 하루 4시간 방문하여 지원하고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거확보	임대인 김00에게 월 주거지를 월 20만 원에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 료	월 1회 병원에 방문하여 치매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교 육					
	<input type="checkbox"/> 재 환					
	<input type="checkbox"/> 시설입퇴소					
	<input type="checkbox"/> 기 타					
신상에 관한 특이사항 및 의견	후견지속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속 <input type="checkbox"/> 종료 사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경 없음 <input type="checkbox"/> 변경 있음 변경내용				
	향 후 보호계획	현행과 같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제안 목록

피후견인의 보육자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권입니다.
 재산목록요약표에 해당 재산이 있는지 하고, 「 있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작성합니다.

이 양식을 파일형태로 이용할 경우 아래 표 중 에 「□ 있음」에 √한 부분만 출력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모두 「□ 없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표 다음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 진술 혹은 불성실한 보고로 간주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요약표			
적극재산항목	해당유무	건수	항목소계 (단위: 원)
1.부 동 산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2. 보증금반환채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25,000,000
3. 예 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2,321,000
4. 보 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5,000,000
5. 증 권 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6. 현 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7. 차 량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8. 유 채 동 산 (귀금속,골동품,예술품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9. 기 타 재 산 권 (저작권,상표권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10. 태 여 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11. 기 타 채 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① 적극재산 합계			32,321,000
소극재산항목	해당유무	건수	항목소계 (단위: 원)
12. 담 보 대 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13. 보증금반환채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14. 기 타 채 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② 소극재산 합계			0
재산 총액		32,321,000	

부동산	건명	부동산 종류	소재지	시가
	부1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부2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부3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부4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부5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부6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부7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 작성란 부족시 건명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1. 부동산 총액	0			

예금	건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고
	예1	신한은행(수급비계좌)	100-12-1234567	321,000
	예2	신한은행(정기예금)	100-25-3456789	2,000,000
	예3			
	예4			
	예5			
	예6			
	예7			
※ 작성란 부족시 건명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예금 총액	2,321,000			

보험	건명	보험회사명	증권번호	납입금 총액
	보1	kb생명보험	100023455	5,000,000
	보2			
	보3			
	보4			
	보5			
	보6			
	보7			
※ 작성란 부족시 건명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보험 총액	5,000,000			

증권	권명	보유주식명	보유량	평가종역 (1주 평가액x보유량)
	주1			
	주2			
	주3			
	주4			
	권명	펀드명	계좌번호	평가종역
	펀1			
	펀2			
	펀3			
	펀4			

※ 작성란 부족시 권명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4.증권 등 총액	0
------------------	---

자산항목	내용				
	소재지	보증금	임대기간		
보증금 반환채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51 (삼성동, 연남빌딩)	20,000,000	2015.05.20 - 2021.05.19		
	서울 강서구 000로 11길 지하1층	5,000,000	2013.05.20 - 2015.05.19		
현금					
차량	권명	차종	년식	등록번호	시가
	차1				
	차2				
유체동산	▽ 금동품, 예술품, 귀금속, 악기 등 고가의 유체동산 내역을 작성합니다.				
	유체동산명	시가	유체동산명	시가	
	유1		유6		
	유2		유7		
	유3		유8		
	유4		유9		
	유5		유10		
그외	▽ 피후견인의 저작권, 특허권 등에 관해 작성합니다.				
	재산권명		가액 (산정가능한 경우)		

적극재산	기타 재산권					
	대여금	대여금	채무지명	채권액	채권회수일	
	기타 채권	채권발생일	채무지명	채권액	채권회수일	
	5.그외 적극재산총액		25,000,000			

적극재산의 해당 건명을 표기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담보대출	건명	금융기관	대출금	상태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가압류나 압류 등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가압류나 압류 등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가압류나 압류 등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가압류나 압류 등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가압류나 압류 등
보증금 반환채무	건명	채권자	채무반환일	변환채무액

소 극 재 산	신 용 대 출	금융기관	대출금	대출 만기일
	기 타 채 무	차용일	재권자	차용금액
	기 타	내용		금액
	※ 작성란 부족시 건명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6. 소극재산총액		0		

재산총액	32,321,000
------	------------

수 입 내 역 과후견인의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건명란에는 위 재산목록에 작성했던 건명 중 소득이 발생하는 해당 건명을 작성합니다.

임대소득	부동산 건명	월소득 X 12개월 = 1년 임대소득	
			월 ()원 ×
		월 ()원 ×	개월 = ()원
		월 ()원 ×	개월 = ()원
		월 ()원 ×	개월 = ()원
		월 ()원 ×	개월 = ()원
	① 임대소득합계	0	
	수급명칭	월소득 X 12개월 = 1년 수급총액	

연 금 및 사회보장 수 급 권	기초생활수급비	월 (440,000)원 × 12 개월 = (5,280,000)원
	기초연금	월 (300,000)원 × 12 개월 = (3,600,000)원
		월 ()원 × 개월 = ()원
		월 ()원 × 개월 = ()원
		월 ()원 × 개월 = ()원
	② 수급합계	8,880,000
이자소득	건명	이자수익
	③ 이자소득합계	0
수입항목 자영수입	소득금액	첨부서류
	④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해당 1년분
근로소득	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개인연금소득	⑥	수급 증명서
보험료수입	⑦	보험금 수령 확인서
기 타 수 입	⑧	관련 증명서
수입총액	8,880,000	

지 출 내 역 비우견인의 지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지출항목	지출금액
주 거 비 (임대료, 관리비 등)	임대료: 월(200,000)원×12개월 = (2,400,000)원
식 비	과일,식재료 등 구입: 월(100,000)원×12개월 = (1,200,000)원
건강유지및 의 료 비	병원진료비: 월(3,000)원×12개월 = (36,000)원 약제비: 월(5,000)원×12개월 = (60,000)원
공 과 금	도시가스비: 월(20,000)원×12개월 = (240,000)원 전기료: 월(8,000)원×12개월 = (96,000)원

교 통 비 및 차 량 유 지 비	
피 복 비	의복구입비: 월(50,000)원 × 2개월 = (100,000)원
기 타	용돈: 월(100,000)원 × 12개월 = (1,200,000)원
지출총액	5,332,000

재산변동상황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금 <input type="checkbox"/> 보험 <input type="checkbox"/> 증권 등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차량 <input type="checkbox"/> 유채동산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산권 <input type="checkbox"/> 대여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채권 <input type="checkbox"/> 담보대출 <input type="checkbox"/> 보증금반환채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채무 <input type="checkbox"/> 변동 없음
	<p>예금 : 종전 후견사무보고서에서 보고한 농협 123-2-548372 계좌는 장기간 이용내역이 없어 해지하였음(첨부서류 - 해지 영수증 참조).</p> <p>기타채무 : E가 사건본인에게 받지 못한 돈이라고 주장한 대여금 300만 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채무내역에서 삭제하였음.</p>
향 후 지 출 및 관 리 계 획	현행과 같이 사건본인의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을 관리할 예정임.
재산보고관련 특이 사항 및 의 견	정기예금이 만기될 경우, 그 돈을 합하여 보다 나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후 견 인 의 전 제 의 견	<p>지난 1년간 후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건강이 악화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함. 그러나 후견개시 초기보다 현재 사건본인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양호한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보다 행복한 노후를 영위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함. 앞으로도 사건본인이 본인의 지난 삶을 존중받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함.</p>
<p>※ 감독법원에 최종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귀하가 후견사무보고서에 기재한 후 '부동산, 예금, 보험 등 항목은 반드시 위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기간에 변동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p> <p>※ 증빙서류 예: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은행계좌의 잔고확인서, 보험계약(보험금수령)확인서, 대상 기간의 수입 및 지출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영수증 등 일체</p>	

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 대상 기간 중 피후견인, 후견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금융거래내역조회서 1부
2. 금융거래내역서 1부
3. 보험가입확인서 1부
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해지 영수증 1부
6. 원 정기보고서 1부
7. 금전지출내역서 1부
8. 후견활동내역서 1부
9. 후견인 대리 지출 내역 영수증 1부

후견인은 위와 같이 피후견인의 신상 및 재산 상황을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후견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3. 후견종료 실무

가. 종료사유

특정후견은 기간만료, 피후견인 사망³², 후견인 사임 또는 변경³³으로 종료함. 단 후견인 사임 또는 변경으로 특정후견 자체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후견인의 입장에서 종료되는 것뿐임.

나. 연장여부 심사

후견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감독인과 함께 심사함.

특정후견의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후견이 없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연장하지 않고 종료함(후견의 보충성 원칙).

후견을 연장하여야만 특정후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거나, 새롭게 후견을 유지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후견을 연장함.

연장을 결정할 경우, 현재 후견인이 계속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좋을지, 후견인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는 것이 좋을지 여부도 심사해야 함.

다. 종료보고서 작성³⁴

(1) 종료보고서는 종전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이후 종료시까지의 후견사무 수행 내역에 대한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하고 있음. 기간만료로 종료할 경우를 대비하여 심판문에서도 종료시점에 후견사무보고서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보통임.

만약, 후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후견이 종료한 경우, 직전 후견사무보고서 기준일 다음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2) 후견인 사임 또는 변경의 경우, 현재까지는 관련 법원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바 없으며, 법원에서도 종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은 없는 상황임. 다만, 종료보고서는

32 자세한 내용은 “III., 3.” 참조(P. 151)

33 자세한 내용은 “IV., 2., 사., 아., 자.” 참조(P. 228)

34 그 밖에 종료보고서 작성은 “II., 2., 마.” 참조(P. 57)

후임 후견인에 대한 인수인계 성격이 있고,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 공백 상태의 방지를 위해 작성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종료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함.

(3) 후견인은 후견이 종료되면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하는데³⁵, 위 종료보고서에도 이 계산내역을 함께 기재하여 보고함.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를, 피후견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기재함.

(4) 종료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감독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³⁶.

그림 28 후견개시심판문에서 종료시까지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예

5. 특정후견감독인은 2021. 3. 31.을 시작으로 2023. 3. 31.까지 매년 3. 31. 특정후견인의 후견사무보고서와 함께 후견감독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특정후견인은 2021. 2. 28.을 시작으로 매년 2. 28. 후견사무보고서[사건본인의 감호상황에 관한 사진 10매 이상을 첨부할 것]를 작성하여 특정후견감독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종료등기 신청

(1) 후견인은 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함³⁷. 종료등기신청은 피후견인 본인, 배우자, 후견감독인도 할 수 있음³⁸. 단, 후견인 사임, 변경의 경우에는 종료등기신청이 불필요함.

후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종료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³⁹.

35 민법 제959조의13, 제957조 제1항

36 민법 제959조의13, 제957조 제2항

37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38 같은조 제2항

39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2) 종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종료보고서 작성,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등의 사무를 처리해두는 것이 적절함. 종료등기 이후에는 금융거래내역서 발급 등 기존 후건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임.

(3) 종료등기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순번	서류명	비고
1	종료등기신청서	
2	기본증명서(폐쇄)	피후견인 사망시에만 제출
3	주민등록초본	
4	후견등기사항증명서	
5	후견인 신분증사본	
6	후견인 인감증명서	

마. 종료 후 긴급사무 처리

〈사례 1-13〉 후견인 A는 후견기간이 만료된 후 감독인과 협의 끝에 후건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함. 이에 후건종료 후 피후견인 B에 대한 특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다시 하였음. A는 후건이 종료되고, 다시 후건개시심판이 있을 때까지의 공백을 염려하여 최대한 병원비, 약제비 등 예상가능한 지출들을 정산하여 납부해두었음. 또한, 체납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스비, 전기료 등 공과금에 대하여는 자동이체신청을 해두었음. B가 사용할 용돈도 미리 현금으로 한 달치를 인출해두고, B에게 일주일마다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음. 공백기간 동안 피후견인의 수급비 입금내역, 공과금 자동이체 지출 내역 등은 통장정리를 통해 확인하고 있음.

그러던 중 B가 갑자기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음. 입원절차는 지자체에서 협조해주었음. 그 후 병원에서 입원비 중간정산내역서를 보내오며 병원비를 납부하라고 알려왔음. A는 병원비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였음. 은행은 A의 후견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후견업무에 협조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음. A는 민법 규정에 따

라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종전 후견인인 A가 B를 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은행 직원은 병원비를 납부하는 것이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거절하였음. A는 감독인과 협의 끝에 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후견심판을 빨리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아울러 중앙치매센터 도움 아래 가정법원에 임시후견인 선임심판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음. 가정법원은 “발생한 병원비를 지급하는 것은 민법 제959조의13, 제691조에 따라 급박한 사정이 있어 후견인이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해야 할 때로 보이므로, 임시후견신청을 재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했음. A는 위 보정명령을 은행직원에게 제시했고, 은행직원은 그제서야 병원비 이체사무에 협조하였음.

(1) 긴급사무의 의의

후견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함. 이 경우에는 후견이 존속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⁴⁰.

이 때의 “급박한 사정(긴급사무)”이란 후견종료시 피후견인이 스스로 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 종래 후견의 취지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으면 피후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를 말함⁴¹.

이런 “급박한 사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40 민법 제959조의13, 제691조

41 편집대표 김용담, 주석 민법, 제3편 제2장,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6., p.654

표 14 급박한 사정의 예

	종료사유	급박한 사정	비고
사망	상속인 부존재	상속재산관리인 미선임	
	상속인 존재	주소, 연락처 등 확인불가, 연락 불가능	
		상속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사망 후 장례 등 사무	“III., 3.” 참조(P. 151)
후견 기간 만료	후견연장	후속 후견 미개시 (재신청에 따른 후견개시심판 청구 지연)	
		후견개시심판 후 후견인 활동개시 전	
	후견종료	피후견인 본인 주위의 안전망 미형성	
		피후견인 지원자에 대한 인수인계 미흡	
공동		채무 변제기 도래	미변제시 지연손해금 등이 발생하여 피후견인에게 불이익함.
		공과금·세금 납부	미납부시 가산세 등이 발생하여 불이익함.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사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얻을 수 있음.

(2) 채무 변제, 세금납부

(가) 피후견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공과금이 있다면, 후견인은 업무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나) 피후견인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할 때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변제하는 것이 피후견인의 이익에 부합함⁴².

42 그 밖에 채무 변제에 대하여는 “II., 1., 바., (7)., (나).”, “III., 1., 자.” 각 참조(P. 48, P. 122)

(3) 병원비 정산

피후견인이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데 후견이 종료된 경우, 병원비 납부가 문제됨.

(가) 후견기간이 만료된 경우, 후임 후견인 선임심판이 있을 때까지 또는 다른 지원자가 등장할 때까지 병원비가 체납될 경우 피후견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함. 그러므로 후견인은 후견이 종료된 뒤라도 병원비를 정산하여 피후견인 재산에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나)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역시 장례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남은 병원비를 정산하고 납부해야 함.

(4) 장례비용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피후견인이 무연고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망 후 장례비용 정산 등 사무도 지자체 담당자가 처리해야 함. 이 때 장례비용은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拂하는 것이 원칙임⁴³.

바. 후견연장 결정시, 종료 후 재개시까지의 사무처리

후견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종료후 다시 후견개시심판이 있게 될 때까지 공백이 발생하게 됨.

전술한 것과 같이 새로운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종전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이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음.

다만, 후견 재신청의 경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음⁴⁴. 그러므로 단기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과금 자동이체신청, 조만간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지출에 대한 선지출 등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함.

43 피후견인 사망 후 장례사무에 대하여는 “III., 3.” 참조(P. 151)

4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경우에도 후견 재신청을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후견공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함.

III. 개별 후견사무



III. 개별 후견사무

1. 재산관리와 관련한 후견실무

가. 후견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처리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함이 원칙임⁴⁵. 이 때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은행 업무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 공적 서류 신청과 관련한 수수료, 대리권추가·변경·허가 등 부수사건 심판청구에 발생하는 인지대·송달료 등이 있음. 그 밖에도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이 해당됨.

후견인이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교통비는 후견인이 받는 활동비에 포함되므로, 피후견인 재산에서 비용을 보전받아서는 안 될 것임.

위와 같은 비용들이 발생할 때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출해야 할 것임. 만약 후견인이 본인 비용으로 먼저 지출한 경우라면 그 후 피후견인 재산에서 이를 보전받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다만, 피후견인이 위 비용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감독인과 논의하여 적절한 비용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나. 예금관리

예금관리는 후견업무의 가장 기본이나, 후견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일 중 하나임.

정확한 예금관리는 후견사무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기초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서 잘 관리해야 할 것임.

(1) 예금관리 기초

45 민법 제959조의12, 제955조의2

〈사례 2-1〉 후견인 G는 피후견인 H, 감독인과 상의 끝에 H의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음. H명의로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그 계좌에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등 공적부조가 입금되도록 하였음. 월 차입, 전기료, 가스비, 통신비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어 행여나 G나 H가 지급시기를 놓치더라도 연체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두었음.

그 밖에 H가 간식을 사먹거나 친구를 만날 때 사용하는 용도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그 용돈이 매월 10일 현재 H가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될 수 있도록 자동이체신청도 마쳐두었음.

최초 후견사무를 개시하면서 피후견인의 예금계좌 내역을 파악한 후, 후견인이 주로 관리할 계좌, 피후견인이 사용할 계좌를 분리하는 것을 추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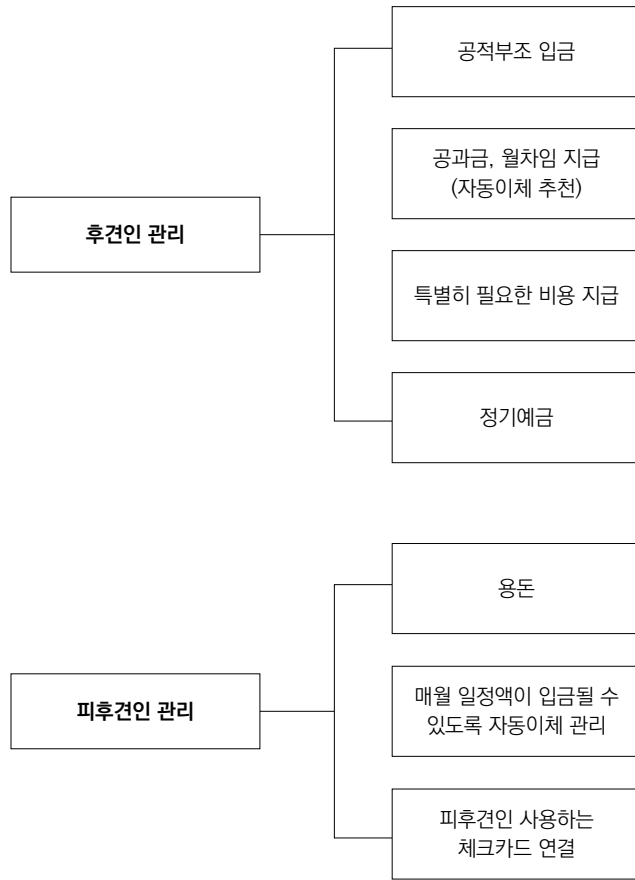
피후견인 명의 계좌 리스트를 별도로 정리하여 두고, 통장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따로 기록해두는 것이 적절함.

정기적인 계좌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피후견인의 재정상황을 항상 점검하고,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표 15 계좌리스트 예시

은행	계좌번호	통장재발행/신규일자	내역	보관
신한	100-12-1234567	2020.4.5.재발행	수급비계좌	후견인
	100-25-3456789	-	정기예금(2020.5.30.만기)	감독인
나라	200-01-000349	-	피후견인 용돈계좌	피후견인

그림 29 피후견인 예금계좌 관리 기초



(가) 후견인이 관리할 계좌

Check List

기초생활수급비 등 공적부조가 입금되는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위 계좌의 통장을 재발행하였는가
 그렇다 아니다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공과금, 월 차임이 위 계좌에 지급되고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공과금 출금 계좌 : _____

월 차임 출금 계좌 : _____

공과금, 월 차임에 대한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었는가

그렇다

자동이체 신청해 둔 공과금, 월차임 내역

아니다

정기예금, 적금계좌가 있는가?

그렇다

(1) 계좌번호 : _____, 만기일 : _____, 예금액 :
_____ 원

(2) 계좌번호 : _____, 만기일 : _____, 예금액 :
_____ 원

(3) 계좌번호 : _____, 만기일 : _____, 정기 납입액 :
_____ 원

아니다

위 통장들을 후견인이 보관하고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감독인이 보관 중 피후견인이 보관 중

후견인이 관리할 계좌에는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등 공적부조가 입금되도록 하고, 공과금, 월 차임 등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지정함.

공과금과 같이 매월 특정액이 지출되는 것은 미리 자동이체신청을 해두면 후견인이 미처 챙기지 못하여 연체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음.

그 밖에 피후견인과 상의하여 일정액을 저축하는 경우, 그 계좌(정기예금, 정기적금)도 후견인이 관리하게 될 것임.

후견인이 관리하는 계좌는 통장을 재발행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혹시 모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혹시라도 피후견인 통장을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제3자가 계속 재산을 유출·은닉할 수 있기 때문임.

(나) 피후견인이 관리하는 계좌

〈사례 2-2〉 후견인 G는 피후견인 H와 매월 용돈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혹시라도 돈이 더 필요할 경우, 추가로 이체해주기로 하였음. 그런데 최근 3개월 동안 매번 H는 돈을 다 썼다며 추가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고 있음. 처음에는 20만 원을 받고 2-3주 정도 지난 다음에 달라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번달에는 20만 원을 받은지 이틀만에 돈을 다 썼으니 더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음.

이상하게 생각한 G는 H의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해보았음. H가 2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그 돈을 전부 인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H에게 돈을 전부 인출한 이유를 물어보아도 H는 그냥 썼다고만 대답할 뿐 정확한 답변을 회피할 뿐이었음.

G가 임대인과 옆집 주민 등 이웃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어떤 사람이 찾아와 H와 함께 외출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 수 있었음. G가 확인한 결과, H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 밖에 나가 그가 사달라는 대로 음식과 술을 사주고 있었던 것이었음.

G는 H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끔 식사를 대접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쓰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당부하였고, 이웃들에게 그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하였음.

그 후 임대인으로부터 그가 다시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은 G는 곧바로 H집으로 갔고, 또

H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그 사람과 만날 수 있었음. G는 앞으로 H를 데리고 비싼 식사와 술을 얻어먹거나, H의 돈에 손을 대려고 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였음.

Check List

피후견인이 관리하는 계좌가 존재하는가

그렇다 아니다

위 계좌에 정기적으로 용돈을 지급하고 있는가?

그렇다

금액 : _____ 원, 지급일 : _____

아니다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위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수상한 입·출금내역이 발견되었는가?

그렇다 아니다

수상한 입·출금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였는가?

그렇다

아니다

재산상 피해가 발견되었는가?

그렇다

피해의 내용 : _____

검토 중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 _____

아니다

피후견인이 직접 관리할 계좌는 용돈과 같이 그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이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피후견인이 관리하는 계좌 역시 후견인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피후견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임.

특히, 피후견인이 계좌에서 수상한 현금 인출, 이체내역이 발견될 경우, 그 내역을 반드시 조사하여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다) 예금계좌 관리 방법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후견인이 선임된 피후견인의 계좌에 대하여는 인터넷뱅킹·폰뱅킹 등 비대면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일부 은행의 경우 후견이 개시되면 기존에 신청해져 있는 비대면거래들을 모두 해지하고 있음.

이에 현재까지도 많은 은행의 경우 계좌 관리를 위해 후견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전표를 작성해야 함.

이 때 은행은 1 후견등기사항증명서(발급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2 후견인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음.

후술하는 비대면거래 이용이 어려운 경우, 후견인은 입금, 이체, 거래내역 확인 등 예금계좌 관리 업무가 필요한 경우, 위 서류들을 구비하여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야 함.

(라) 은행을 상대할 때 유용한 대처법

〈사례 1-14〉 예금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사례 01

후견인 A는 후견이 개시된 후, 피후견인 B 명의의 시민은행 계좌에서 공과금을 이체하기

위해 시민은행에 방문했음. 오랜 대기 끝에 담당직원에게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은행 전표를 작성하여 이체업무를 마쳤음. 업무를 마치고 나니 1시간이 훌쩍 지나있었음. A는 일반적으로 은행업무는 폰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등 비대면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과 비교할 때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음.

그러던 중 A는 자신의 대리권 범위 중 “체크카드 발급 신청, 해지, 이용”에 대한 사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기억났음.

A는 은행 직원에게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음. 은행 직원은 난처해하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시작했음. 이윽고 부지점장까지 나와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주겠다고 했음. 그렇게 1시간을 더 허비한 A는 일단 돌아와야 했음. 다음날 시민은행 창구 직원은 본사에서 후견이 개시된 경우 체크카드와 같은 비대면 금융거래수단을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A의 신청을 거부했음.

A는 자신이 대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은행 창구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해줄 수 없는 근거가 뭐냐고 항의했음. 시민은행은 후견인이 체크카드를 갖고 재산범죄를 저지를 경우, 은행이 책임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사례 2-3〉 예금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사례 02

피후견인 H의 후견인 G는 나라은행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했음. H가 보유하던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으니 찾아가라는 나라은행의 연락을 받고 은행에 방문하였는데, 정기예금 반환을 거절당한 것이었음. G가 나라은행 정기예금액을 H의 주거래 계좌가 있는 시민은행으로 이체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음. 그 이유를 묻자 나라은행 직원은 G가 “예금계좌 해지, 이체, 신규개설”에 대한 대리권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예금 해지 및 이체사무도 가능하나, 후견인이 다른 은행의 H계좌로 예금을 이체할 경우, 이를 횡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나라은행 직원은 G가 정기예금액을 시민은행으로 이체하는 것에 대한 법원 허가를 받아오면 업무를 해주겠다고 하였음.

G는 중앙치매센터, 감독인의 도움 아래 법원에 정기예금해지 및 예금액 이체에 대한 허

가를 구한다는 심판을 청구하였음. 법원에서는 G가 이미 관련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청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려는 보정명령을 내렸음. G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지참하고 나라은행에 다시 방문하였음. 나라은행은 그제서야 이번만 해준다는 식으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예금액을 H명의로 시민은행 계좌로 이체해주었음.

〈사례 1-15〉 예금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사례 03

A는 B의 재산관리를 위해 매일 시민은행에 방문하고 있음. 시민은행에서는 A가 은행업무 볼 때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원본을 요구하였음. A도 처음 몇 번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원본을 시민은행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은행에 제출하기 위해 1부당 1,200원의 수수료와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음.

그런데 시민은행과 달리 나라은행은 A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하면, 확인만 할 뿐, 제출받지는 않음.

A입장에서는 매번 은행업무를 볼 때마다 번거롭고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하는 시민은행 보다는 나라은행이 업무를 보는데 편리하였고, B의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등 공적 부조금 입금계좌를 모두 시민은행에서 나라은행 B계좌로 변경하였고, 시민은행 계좌의 잔액도 모두 나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음. 그리고 시민은행 계좌는 모두 해지하였음.

〈사례 2-4〉 예금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사례 04

G는 H의 재산내역을 조회하다가 새롭게 나라은행 계좌를 발견하였음. 거래내역을 조회해본 결과, 최근까지도 그 계좌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G는 사회조사보고서에 H의 먼 친척이 H의 돈을 유용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는 기재가 떠올랐음. G는 더 이상 누군가가 H의 돈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통장 재발행 및 비밀번호 변경신청을 하였음. 그런데 나라은행은 통장 재발행 및 비밀번호 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G의 신청을 거절하였음. G로서는 통장 재발행 및 비밀번호 변경 등 은행업무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 나라은행의 답변을 수

용할 수 없었음. 이에 G는 감독인과 상의 끝에 나라은행에 H 통장 재발행 및 비밀번호 변경을 거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 며칠 뒤 G는 나라은행으로부터 통장 재발행 및 비밀번호 변경을 해줄테니 다시 방문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음.

<사례 3-1> 예금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사례 05

부부인 J,K에 대하여 I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음. J와 K에게는 자신이 조카라고 주장하는 X가 있었음. 그러나 J, K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어디를 찾아봐도 X라는 이름을 가진 가족은 존재하지 않음. 더욱이 X는 J, K에 대해 후견이 개시되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음.

그러던 중 아내 K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음. I는 K의 장례절차를 지원함과 동시에 법원에 별도 심판을 통해 J의 상속사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음.

그 후 I는 K의 은행예금이 존재하는 시민은행에 방문하고, K의 폐쇄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법원 심판문을 제시한 뒤 K의 유일한 상속인이 J이므로 K의 상속예금을 모두 J명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하였음. 그런데 시민은행은 얼마전 조카 X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K의 상속인이므로, 다른 후견인이 나타나더라도 K의 예금을 지급하지 말고,만에 하나 K의 예금을 후견인 또는 J에게 지급할 경우 은행을 고소하겠다고 한 일이 있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시민은행 입장에서는 I가 제시하는 여러 공적 서류들에도 불구하고, X가 자신도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J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I의 신청을 거절하였음.

이에 I는 강하게 항의하였음. 그러자 시민은행은 K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금을 법원에 공탁하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통보하였고, 얼마뒤 법원 공탁서를 보내왔음.

I는 법원 공탁계에 방문하여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 J의 후견인이고, 상속사무에 대한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한 뒤 공탁금을 수령하여 J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음.

은행은 금융사고를 통한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증지급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본

질적으로 계좌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극히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은행의 그러한 태도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일면 당연한 것이므로 그 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은행을 상대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므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은행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마저도 생략해달라고 하거나, 은행이 내부 확인·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에 항의하는 등 은행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은 오히려 후견인과 은행 사이의 불신이 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여야 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후견인이 이용하는 은행 지점에 방문하거나, 특정 지점을 정하여 계속 방문하는 것이 좋음. 그럴 경우, 같은 직원과 반복적으로 계좌관리 업무를 함으로써, 시간이 단축되고 담당 직원의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향후 새로운 은행 업무를 진행할 때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임.

또한, 어느 직원과 충분히 논의를 하였음에도 업무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그 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지점에서는 그 업무를 앞으로도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은행 본점에 문의하거나, 다른 지점에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같은 은행이어도 담당자마다 후견인 응대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임. 다른 지점에 방문했는데도 비협조적인 태도가 동일하다면, 아예 피후견인 계좌를 다른 은행에 새로 개설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원칙적으로 은행을 상대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들은 감독인과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함.

(2) 비대면거래 신청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카드·체크카드·ATM기기 이용 등 소위 은행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서 계좌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을 “비대면거래”라고 함.

현재까지 은행들은 후견이 개시된 고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대면거래를 제한하고 있음.

다만, 법원, 전문직 후견인 단체, 기존 공공후견 수행기관들의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조금씩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는 금융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음.

2020. 4월을 기준으로 파악된 은행의 주요 비대면거래 허용 여부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6 은행 비대면거래업무 허용 여부(2020. 4.기준)

순번	항목	가능여부	비고
1	현금카드, 체크카드 발급	대리권 보유할 경우 가능	신한,우리,제일,씨티,국민,하나,기업,농협,경남,광주, 대구,전북,부산은행 가능 (근거: 2019. 12. 6.자 금융기관 간담회 자료)
2	인터넷뱅킹	X	시스템 구비되지 않음.
3	ATM 이용	△	현금카드, 체크카드 발급시 가능해질 것임
4	폰뱅킹	△	계좌거래내역 조회 업무는 가능

(3)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원본 제시 문제

은행업무를 할 때 후견인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이 때 은행업무를 볼 때마다 매번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원본을 제출받는 은행들이 많음.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방문해야 하고, 발급수수료도 장당 1,200원이 발생하는데, 결국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위해 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보다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더욱이 피후견인의 부족한 재산형편에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음. 그렇다고 후견인이 매번 발급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없음.

은행의 입장에서도 매번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원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후견이 지속되고 있는지, 방문한 자가 후견인이 맞는지, 후견인이 은행 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 될 뿐이기 때문임. 은행으로서 는 그 사실을 확인한 뒤 원본대조필을 날인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사본만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해줘도 무방함.

후견 관련 거래에 대한 경험이 다수 있는 담당자는 매번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원본을 제출받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도 함. 이 경우 3개월에 1회만 원본을 제출받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은행거래에는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해주기도 함.

이렇게 할 경우, 후견인은 3개월에 한 번만 원본을 발급받으면 되므로 피후견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후견업무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음.

(4) 금융거래내역 조회

후견인은 매년 정기후견사무보고서를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도 정기적으로 피후견인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함. 혹시 모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함임.

이 때 금융거래내역은 은행에 직접 방문, ATM기기를 통한 통장정리, 폰뱅킹을 통한 거래내역 확인, 폰뱅킹을 통한 거래내역 팩스 수신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단지 금융거래내역 확인만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폰뱅킹을 통한 거래내역조회를 자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함.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폰뱅킹을 통한 거래내역조회서비스 및 거래내역 팩스 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를 이용하여 감독인 팩스 등으로 거래내역을 수신하면 손쉽게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다. 체크카드 등 이용

〈사례 1-16(사례1-14에서 연결됨)〉 후견인 A는 최근 은행들이 후견이 개시된 고객에 대해서도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발행해주기로 하였다는 기사를 접했다. 이에 해당 기사를 지참하고 시민은행에 다시 방문하였음. 시민은행 담당자 역시 자신도 해당 기사를 보았고, 본점의 자문도 받아두었다며 이번에는 체크카드를 발행해주겠다고 하였음.

A는 피후견인 B에게 용돈을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음. 그러나 평소에도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던 B는 현금이 더 편하다고 밝혔음. A가 생각하기에도 오히려 B가 체크카드를 분실할 위험이 커 보였음.

A는 체크카드를 본인이 보유하면서 B를 만날 때마다 필요한 식료품을 구입해주고, 병원비 결제, ATM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등의 업무를 보기로 하였음.

체크카드를 활용할 경우 계좌거래내역에도 지출내역이 기록되기 때문에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평소보다 수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Check List

피후견인에게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있는가

그렇다

카드번호 : _____

보관자 : _____

대금결제계좌 : _____

아니다

피후견인 명의의 직불카드가 있는가

그렇다

은행(카드사) : _____, 카드번호 : _____

아니다

체크카드를 요양보호사 등 지원자에게 맡겨두었는가

그렇다 아니다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를 별도로 두었는가

그렇다

해당 계좌에 정기적으로 일정액만 이체하고 있음.

이체액 : _____ 원, 정기입금일 : 매월 ___ 일

해당 계좌에 일정수준의 금액을 입금해두었음.

입금액 : _____ 원, 입금일 : _____

아니다

피후견인이 이미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현금 겸용 체크카드 발급, 갱신, 해지” 등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어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후견인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일상생활비 지출 등의 업무를 하거나, 피후견인에게 제공하여 용돈 등을 직접 관리하게 할 수 있음.

후견인이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 주요 장점은 아래와 같음.

1. 통장 거래내역에 지출내역이 바로 기재되므로 별도 증빙서류 없이 명확하고 투명한 증빙이 가능함.
2. 매번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됨.
3. 피후견인 보유 자산 한도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보다 계획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함.

다만, 후견인이 자신이 보유하는 카드와 혼동하여 실수로 피후견인의 체크카드를 잘못 이용하거나,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후견인의 체크카드를 주의하여 관리해야 함.

피후견인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체크카드를 맡겨두고, 필요한 식료품 등을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이 때는 안전을 위하여 요양보호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사용할 금액만 입금해두는 별도의 계좌를 지정하고, 그 계좌에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카드를 연결해두는 것이 필요함.

피후견인이 직접 체크카드를 이용할 때에도 현금을 이용할 때보다 피후견인의 재산 지출 내역을 알기 쉽고, 수상한 지출에 대한 조사가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임.

라. 공적부조 관리

피후견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적부조는 크게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이 있음. 후견이 개시되면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 피후견인이 각종 공적 부조를 수령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급여관리자 제도

〈사례 3-2〉 후견인 I는 피후견인 J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는 급여관리자로 조카라

고 주장하는 X가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X는 자신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후견이 개시된 이후에도 I에게 수급비 사용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있고, 수급비가 입금되는 J명의 계좌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

이에 I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신이 J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리고, 급여지정자 신청을 취소하였으며, 수급비가 입금되는 계좌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재발행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

기초생활수급비의 경우, 후견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지정된 급여관리자가 있을 수 있음⁴⁶. 이 때 급여관리자는 1 부양의무자·형제자매, 2 사회복지기관 재가복지 담당자, 의료기관 복지담당자, 3 수급자(피후견인)의 생활실태 파악 및 지원이 용이한 이웃 등을 지정함.

수급자에 대해 후견이 개시되면 전술한 급여관리를 제외하게 되어 있으므로, 급여관리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이 직접 수급비 등 공적부조금을 관리하면 됨.

(2) 급여 대리수령 제도

〈사례 4-1〉 피후견인 M은 배우자 N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음. 기초생활수급비는 모두 M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음. 후견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배우자 N이 M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급비로 생활하였음.

그러던 중 후견인으로 O가 선임되었음. N도 나이가 들어 복잡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O가 배우자 M의 후견인으로 선임되는데 동의하였음. O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자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N이 더 이상 M의 계좌를 관리할 수 없고, O가 관리해야 하며, N은 O에게 부탁하여 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였음.

N은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M에게 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이 M계좌를 관리하지 못하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음. 게다가 매번 후견인 O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음.

46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274이하

후견인 O 역시 M이 수령하는 수급비에는 N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M과 N이 이 돈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중간에서 하나하나 개입하여 돈을 N에게 내어주는게 번거롭기도 하고, 부담도 되었음. 더욱이 이 문제로 불필요하게 N과 대립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음.

이에 O는 감독인과 상의 끝에 법원에 M의 수급비를 N이 대리수령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을 받고, 수급비를 N명의 계좌로 입금하는데 동의해 주었음.

대신, N은 O에게 3개월에 한 번씩 수급비 계좌 거래내역을 제공해주기로 하였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은 각 수급자에 대해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거나,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급여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음^{47,48}.

표 17 공적부조 대리수령제도 비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요건	성년후견개시 또는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개시 또는 치매 등으로 거동 불가능
동의 필요 여부	수급자 본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필요	X
신청권자	대리수령인	수급자 또는 대리수령인
대리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약, 피후견인에게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그를 신뢰할 수 있다면 수급비 대리 수령신청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그렇게 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배우자 또는 동거 자녀에게 수급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배우자 또는 동거 자녀로부터 수급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는 것이 적절함. 특히, 사례와 같이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후견인의 수급비로 배우자도 생계를 함께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우자

4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3, 시행령 제36조의3, 시행규칙 제41조의2

48 기초연금법 제14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명의로 대리수령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3)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

피후견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그 명의의 일반 계좌에 수급비를 수령하면 계좌가 압류되어 수급비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제도 아래에서는 수급비 등이 압류되어 수급자 본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수급비를 압류할 수 없게 하고 있음

4950 .

나아가 압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음⁵¹⁵²⁵³. 만약, 기초생활수급비 수령을 위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기초연금을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별도로 개설할 수는 없음. 이 때는 기초연금 수급 계좌를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변경할 수만 있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표 18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 비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개설가능 통장 개수	1개 (이미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있다면, 그 계좌로 수급계좌 변경 가능)	
급여 외 다른 금원 입금 가능 여부	불가능 (수급비만 입금)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시중은행, 우체국, 신한, 새마을금고 등)	수급자의 수급 계좌 변경 신청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 사본 첨부)

4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50 기초연금법 제21조

5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제2항, 제27조의2 제1항

52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240

53 보건복지부, “2020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162이하

마. 생활비 관리

(1) 평균 지출내역 파악

생활비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피후견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내역(고정비)과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평균치를 파악해야 함.

사회조사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를 참고하되, 후견개시 후 3개월~6개월 간 직접 재산관리를 수행하면서 평균 지출액을 파악하면 됨.

(2) 일상생활비

일상생활비로 건별로 지출할 때는 그리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음. 그러나 한 번에 여러 건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등,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음. 그러므로 예상 밖의 지출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피후견인의 식비, 간식비, 의복비, 생활용품 구입비 등을 계획적으로 잘 관리해야 함. 또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의복(여름용 내의, 겨울용 내의, 겨울 점퍼 등) 또는 생활용품(겨울용 이불, 여름용 이불 등), 형광등, 주방용품, 화장실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도 계획적으로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함.

수급비에서 일정액을 비상금조로 마련해두면 예상하지 못한 일상생활비 관련 지출에 대비할 수 있음.

(3) 동거친족, 요양보호사 등 지원자에게 일상생활비 지출 업무 위임

〈사례 1-17〉 피후견인 B에게는 매일 4시간씩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가 있음. 후견인 A는 후견개시 초기부터 요양보호사가 요청하는 식재료, 생활용품을 구입해서 전달해주곤 했음. 그러다 보니 필요할 때 즉시 물품들이 제공되기 어려웠고,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지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음. 결국 요양보호사의 불만이 커져갔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일하기가 어렵다고 통보하기에 이르렀음. A 역시 매번 요양보호사의 연락을 기다리며 그가 요구하는 물품을 구입해주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A는 감독인과 논의 끝에 요양보호사가 요청하는 일상생활비용이 평균 월 10만 원 정도

라는 점에서 피후견인 B명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그 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이체하기로 하였음. 그리고 그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개설하고, 요양보호사에게 맡겨두고, 필요한 일상생활용품들을 바로 구입할 수 있게 조치해두었음.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A 휴대폰으로 문자연락이 오게 하여 사용내역을 A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음.

피후견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일일이 후견인이 구입해 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그렇다고 피후견인, 배우자, 동거친족, 요양보호사 등 지원자에게 후견인이 구입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피후견인의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 때 피후견인 명의의 계좌 중 하나를 일상생활용품 비용 지급용으로 지정한 뒤, 그 계좌에 매월 평균 지출하는 일상생활비를 이체해두고, 이를 지원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두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음.

동시에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함께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이용내역을 후견인 휴대폰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해두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함.

바. 주거 관련 관리⁵⁴

(1) 새로운 주거지 물색 방법

피후견인이 계속 현 거주지에 머무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이사가 필요할 수 있음.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현 거주지의 환경이 열악한 경우, 현 거주지가 피후견인과 연고가 없는 곳인 경우 등임.

이 때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가능하다면 피후견인과 함께 집을 보러 다니면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만약 피후견인이 직접 집을 보러 다니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진·동영상 등을 찍어와 피후견인의 의사와 기호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함.

54 임대차계약 내역 조사 방법은 "II. 1. 바., (4)." 참조(P. 46)

(2) 임대차계약 체결

〈사례 1-18〉 후견인 A는 피후견인 B가 현재 머무르는 집이 반지하 방에 노후된 주택이라 환경이 열악하여 기회가 되면 이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후견개시 당시 후원할 사무의 범위 중에도 새로운 주거지 물색을 위한 사무가 있었고,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변경, 종료에 대한 대리권도 부여받은 바 있음.

A는 주민센터 담당직원의 도움 아래 인근에 현재보다 조금 더 넓고 깨끗한 집을 찾을 수 있었음. 다만, 보증금 2,000만 원, 월 20만 원에 지내고 있는 현 거주지에 비해 보증금 3,000만 원, 월 30만 원으로 조금 비싼 것이 단점이었음. 주민센터 담당직원은 보증금 차액 1,000만 원은 지자체에서 주거비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음.

A는 B가 종전 임대인 E로부터 얼마전 받은 미반환 보증금 500만 원(사례1-10 참조)과 정기예금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의 목돈이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3,7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월 차임을 23만 원으로 감액해달라고 요청하였음. 임대인은 A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였음.

A는 B를 대리하여 임대인과 보증금 3,700만 원, 월 차임 23만 원에 새로운 주거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전술한 것과 같이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 2,000만 원, B 보유 현금 700만 원, 동 주민센터 지원금 1,000만 원으로 조달하기로 하였음.

피후견인이 머무르기 적절한 곳을 찾으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해당 부동산의 하자 여부, 신체가 불편한 피후견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등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함. 특히,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전세권 등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법률상 제한이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함.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아야 함⁵⁵. 만약 공인중개사를 두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등기부등본을 받아볼 수 있음.

55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그 밖에도 최근 무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보증금, 월차임, 임대차기간 등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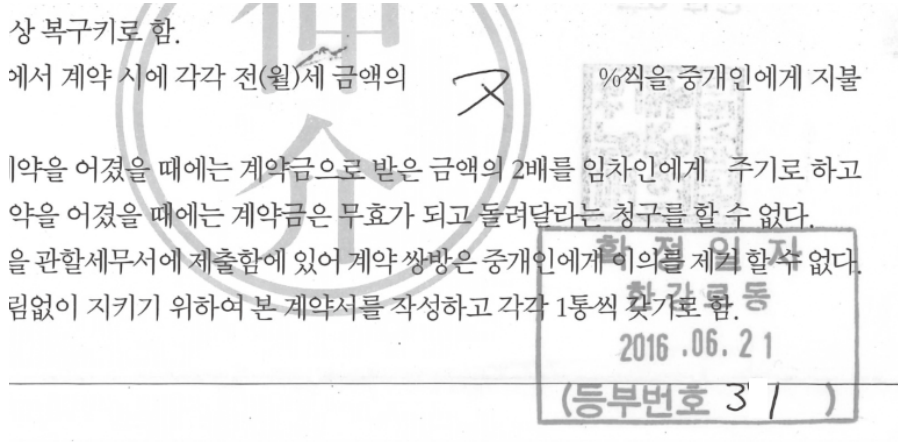
아울러, 보증금을 나중에 틀림없이 반환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점유, 주민등록, 확정일자)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함. 아울러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상실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에도 이에 대하여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

표 1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요건

대항력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1 점유 2 주민등록	3 확정일자

- 1 점유는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을 의미함. 보통 보증금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날 이사함으로써 점유를 이전받음.
- 2 잔금을 지급하는 날, 즉 이사하는 날 바로 임대차계약을 소지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쳐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임. 예를 들어, 2020. 4. 5. 잔금을 치르고 이사 및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은 2020. 4. 6. 0시부터 발생함.
- 3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을 소지하고 주민등록을 할 때 함께 부여받는 것이 보통이므로,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정일자도 부여해달라고 요청해야 함.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임대차계약서에도 도장을 찍고 확정일자 번호를 기재해줌.

그림 30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기재된 모습



서기 2016 년 4 월 30 일

(3) 임대차계약 유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월 정해진 날에 월 차임을 지급해야 함. 만약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⁵⁶, 월 차임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4) 임대차계약 종료

〈사례 1-19〉 후견인 A는 피후견인 B가 이사하기 위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 기존 임대인 C(사례 1-8 참조)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으니, 만료일에 주택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통지하였음.

C는 보증금을 돌려주겠으나, B가 집을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여러 곳이 망가진 게 많으므로 이를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음.

A가 보기에도 장판과 벽지가 뜯어진 곳이 많고 화장실이나 부엌도 일부 고장난 것들이

56 민법 제652조

많이 있었음. 장판과 벽지는 교체한지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뜯어진 것이었으나, 싱크대는 3개월 전에 교체한 것인데 B가 치매로 인한 망상증상으로 부순 것이었음.

A는 C에게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노후되어 어차피 교체해야 하는 장판과 벽지를 원상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새로 교체하라는 것은 과도하나, 싱크대는 교체비용을 B가 부담하겠다고 밝혔음.

이에 A와 C는 보증금 2,000만 원에서 싱크대 교체 및 기타 B가 손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보수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100만 원을 제외한 1,900만 원만 반환받기로 합의하였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직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함(묵시적 갱신)⁵⁷.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 때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됨⁵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통상 목적물을 임대할 때 상태대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⁵⁹. 이 때 원상회복의 범위를 놓고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적절함.

(5) 특수사례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사례 2-5〉 후견인 G는 피후견인 H의 치매가 심해지고, 그에 따라 재가(在家)생활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H를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음. 기초생활수급자인 H가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요양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시설급여로 전환될 수 있게 한다

5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5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59 민법 제654조, 제615조

는 것이었음. 문제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요양원 입소를 위해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었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에는 동의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음. 그러던 중 H의 상태는 악화되기 시작했고, 요양원에서도 다른 대기자를 먼저 입소시키겠다고 G를 재촉하고 있음.

G는 우선 H는 요양원에 입소하게 하고, 가재도구는 집 안에 둔 채 문을 잠그고 돌아왔음.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주면 열쇠를 넘겨주겠다고 연락해두었음. 요양원에는 일단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까지 이용료는 H 개인비용으로 부담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음. 그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음.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주민등록을 요양원으로 옮기려고 함.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 특히 피후견인이 갑작스러운 건강악화, 치매악화로 요양원 등으로의 입소가 필요한 경우,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해 입소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처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두고 있음⁶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하고,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야 함. 이 때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6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표 20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필요서류

순번	서류명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2-1	주택 등기부등본(임대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2-2	건축물대장(등기가 없는 경우 등)
3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4	주민등록초본 등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6) 특수사례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사례 2-6〉 후견인 G는 임차권등기를 마친지 2달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음. 그동안 세 차례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은 차일피일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만 할 뿐이었음. 결국 G는 H를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음. G는 감독인의 도움 아래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허가심판을 청구했음. 법원의 허가심판이 있는 뒤 G는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갔음. 공단의 변호사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주기로 하였음. 소송은 6개월 정도만에 H의 승소로 종결되었음. 그 후 G는 임대인의 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음.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이 있자, 임대인은 보증금과 그 간의 지연손해금까지 H에게 반환하였음. 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G는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⁶¹신청을 할 수밖에 없음. 지급명령절차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절차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우선 고려하는 것이 유리함. 지급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

61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 민사소송법 제462조

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만약,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됨.

후견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에 나서기 위해서는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함. 대부분의 경우 소송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없거나, 소송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행사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임. 후견인은 감독인의 도움 아래 감독법원에 소송행위에 대한 허가심판청구를 하고, 그 심판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⁶².

후견인은 지급명령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음. 경매절차에서 주택이 매각되면, 그 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이 때 임차인인 피후견인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라면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애써 경매신청을 했는데 정작 그 대금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임.

만일 피후견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보증금으로 그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달라고 대항할 수 있음.

사. 병원비 관리

병원들 중에는 후견이 개시된 환자에 대한 진료를 꺼리거나, 후견인에게 병원비 지급 등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곳이 있음.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병원비를 연대보증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므로, 거절해야 함⁶³.

만약, 피후견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병원비 부담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병원비를 피후견인 자력으로 부담하기 어렵다면 이를 지원해주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피후견인이 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정기적으로 입원비와 병원비를 중간정산하므로, 그때 발생한 병원비를 확인하여 피후견인이 부담하기 어렵다면 병원비를 지원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 사회복지팀에서 병원비 지원프로그램을 두고 있으

62 소송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IV., 2., 라." 참조(P. 188)

63 병원비 연대보증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III., 2., 아., (2)." 참조(P. 147)

므로 우선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함.

아. 각종 공과금 관리

도시가스비, 전기료와 같은 공과금을 연체할 경우, 피후견인의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후견인으로서의 공과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들은 자동이체신청을 해두는 것을 추천함. 그 밖에 주민세 등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경우에도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자. 기타 채무 관리

(1) 채무 변제

피후견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채무를 갚아 가는 것이 필요함. 연체 이자로 채무가 늘어나면 피후견인의 생존이나 생활에 위협이 되기 때문임. 채권자가 피후견인 명의 계좌에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두었다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비롯한 공적부조금을 사용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야 함⁶⁴.

(2) 금전 대출 경우 참고할 점

〈사례 1-20〉 피후견인 B는 대부업자 X에 대해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 후견인 A는 대부업자 X로부터 1,000만 원을 연 15%의 이율로 빌려주기로 하되, 선이자로 1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850만 원만 지급하였다는 얘기를 들 수 있었음. X는 지난 1년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이자 150만 원을 합하여 1,15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였음.

A는 동 주민센터 무료 법률상담 기회를 통해 이 문제를 변호사와 상의하였고, 대부업법상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채무 원본은 선이자를 빼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돈이라는 얘기를 들 수 있었음. A는 X에게 B의 채무 원본은 850만 원이고, 그에 대한 1년치 이자

64 압류방지통장에 관하여는 "III., 1., 라., (3)." 참조(P. 112)

는 127만 5천원(850만 원 X 0.15 X 1년)이므로, 이를 합한 977만5천 원을 변제하겠다고 통보하였음.

만약, 피후견인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이율을 확인해야 함. 금전을 빌리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허용하는 최고 이율이 연 24%이고⁶⁵,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임⁶⁶.

피후견인이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명목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에게 원금 외에 지급한 돈은 모두 이자로 봄⁶⁷. 나아가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피후견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를 산정해야 함⁶⁸.

(3) 채무가 여러 건이 있는 경우 주의할 점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가 여러 건이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채무 모두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 채권자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그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⁶⁹가 되어 그 행위는 취소될 수 있음.

〈사례 1-21⁷⁰〉 피후견인 B는 X에 대하여 1,000만 원, Y에 대하여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채무 모두 변제기가 지났음. 그에 반해 B에게는 정기예금 600만 원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음.

마침 후견인 A는 평소 이웃 주민인 Y를 잘 알고 지내고 있었기에 Y가 B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음.

그러던 중 X는 B 명의의 위 예금에 대한 가압류하고,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

65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동시행령 제5조 제2항

66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67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단,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제외함(시행령 제5조 제4항).

68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69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406조 제1항).

70 본 사례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을 각색한 것임.

기하였음.

A는 Y가 빌린 돈을 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 B를 대리하여 Y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 Y는 이 공정증서를 갖고 B의 예금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아 갔음.

X는 B가 Y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하여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 결과, 법원은 A가 B를 대리하여 Y와 작성한 공정증서는 다른 채권자 X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음.

(4)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자가 피후견인을 상대로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한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의 무거운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므로, 채무의 존재 등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분쟁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이 필요함.

그에 반해, 채무의 존재여부, 채무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소송에 응하되, 패소할 경우 지연손해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으므로, 미리 어느 정도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추천함. 법원에 공탁할 경우, 그 날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공탁해야 변제로서 효력을 발생 하는지에 대해서 법률 비전문가가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반드시 감독인과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함.

2. 신상보호와 관련한 후견실무

가. 신상보호의 의의

(1) “신상”의 개념

신상이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신변에 관한 사항으로서, 요양과 감호에 대한 사항,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주거·거소의 결정,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과 관련된 사

항 등이 대표적인 예임⁷¹.

(2) 신상보호의 의의

이처럼 개인의 신상에 대한 사항들은 본인 외에는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다만, 본인에게 판단능력이 있을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이후 발생하는 의료계약 체결, 주거결정에 따른 임대차계약체결 등의 신상에 대한 결정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법률행위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

그런데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위와 같은 본인 신상에 대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이 본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대신 결정해줄 필요가 있음. 그런 관점에서 성년후견제도는 신상결정권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음.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⁷².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의 신상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음⁷³. 이 때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로서, 그 결과로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사후허가 가능),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⁷⁴.

표 21 신상결정권한에 대한 민법 제947조의2 규정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71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신상보호-신상결정의 대행과 그 한계-”, 가족법연구 제25권 2호, 2011. 7. p.153

72 민법 제938조 제3항, 제959조의4 제2항(한정후견)

73 민법 제947조의2 제1항, 제959조의6(한정후견)

74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제959조의6(한정후견)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삶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노력, 그 이해를 바탕으로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임.

(3) 특정후견인에게 신상결정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

그러나 신상결정에 대한 위 규정들은 특정후견에 적용되지 않아 특정후견인에게 피후견인에 대한 신상결정권한이 있는지 논쟁이 있음. 다만,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특정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신상에 대한 결정권한 또는 그와 관련된 대리권을 수여 받지 않으면, 신상결정권한이 인정될 수 없음. 그러므로 공공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후견인의 신상결정에 관한 특별 권한이나 신상과 관련된 사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아서 보유하고 있을 때에만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⁷⁵.

(4) 신상보호사무 개관

이하에서는 신상보호와 관련한 사무를 1 통상적으로 특정후견인에게 해당 사무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들(ex.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일상적인 병원치료 등)과 2 특히 논쟁이 되는 것들(ex. 요양병원 입원, 중요한 수술행위 동의)로 나누어서 서술함.

75 민법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1) 기초생활수급 여부 확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후견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통상 사회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후견개시 후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음. 이 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두는 것도 유용함.

피후견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그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야 함.

(2) 복지로 활용⁷⁶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소개되어 있는 곳임. “노년”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피후견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비교 및 연계가 가능함.

그림 31 복지로 메인화면 - “노년”카테고리



76 www.bokjiro.go.kr

그림 32 복지로 메인화면 - 민간 복지서비스 카테고리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온라인신청	복지도움요청	부정수급신고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복지 뉴스·이슈	이용방법	도움요청 안내	부정수급이란?
클릭! : 찾기	뉴스레터	복지서비스 신청	도움요청하기	부정수급 신고안내
▶ 민간 복지서비스	그림으로 보는 복지세상	민원서비스 신청	나의 요청내역	부정수급 신고하기
나의 복지정보 조회	복지 갈림	증명서 발급	함께 도와요!	나의 신고내역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사회보장통계	나의 이용내역	따뜻한 복지이야기	부정수급 신고사례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우리동네 복지시설		129 복지상담	신고제도 제안
복지정책 제안	복지 공유방			

(3) 서비스연계

피후견인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인 경우, 대부분 주민 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음. 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해당 복지시설로 직접 전화를 걸어 복지서비스 이용 가능여부·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여야 함.

(4) 복지서비스 신청 시 지참서류

법원에서 발급받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및 후견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면 됨. 특별한 경우 후견개시 심판문 또는 후견인의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함.

다. 일상적인 병원 치료

(1) 만성질환 일상관리

고령의 피후견인은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후

견인은 피후견인의 만성질환을 파악하고, 정기적인 병원방문, 투약관리 등을 통한 방법으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특히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질병의 경우 투약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급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항상 조심해야 함.

(2) 정기검진

고령의 피후견인은 만성질환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예방을 꾀할 필요가 있음. 평소에 병원을 가지 않는 피후견인도 병원방문을 독려하여 정기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건강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후견사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3) 응급상황

피후견인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⁷⁷.

라. 주거에 관한 지원

(1) 주거지원의 중요성

주거란 피후견인의 삶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임.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그가 희망하는 곳에서 양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이러한 지원은 신상보호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임.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⁷⁸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음.

(2) 주거의 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기본적인 집안 내 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함.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기본시설부터

77 응급치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III.,2.,아.,(3)" 참조(P. 149)

78 민법 947조의2

배관, 전등, 방풍, 벽지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임대인과의 관계

피후견인이 세입자라면 집주인과 소통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임대인 중에는 세입자를 대신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후견인을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음. 후견인으로서의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그와 대립하기보다는 원만히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관계를 잘 맺는 것이 필요함. 더욱이 임대인은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로서도 활동할 수 있는바, 그와의 원만한 관계는 후견업무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됨.

그러므로 임대인의 성향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면서 임대인이 비협조적인 경우, 직접적인 요구는 어느 정도 후견인과의 관계가 형성된 후에 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임.

(4) 공과금 관리

주거와 관련된 공과금 등이 잘 납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이 있으며 이 외에 월세, 유선방송, 인터넷, 통신료 등을 점검하여 공과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5) 거주지 이전

〈사례 4-2〉 피후견인 N은 배우자 M의 입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혼자 지내게 되었음. N은 M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가깝고 혼자 지내기에 부담이 안 되는 곳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뜻을 후견인 I에게 말하였음.

I는 월세로 거주하는 N을 위해 적절한 곳이 있는지 조사해주었음. 조사를 하면서 LH(한국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 임대주택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공고에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얼마 후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9천만 원짜리 전세를 계약하게 되었고, 병원 근처 도보

권에 위치한 집에서 N은 살게 되었음. 월세에서 지내던 N은 매월 부담하던 비용도 없어 너무 좋다며 후견인 I에게 감사를 전함.

피후견인의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전술한 것과 같이 피후견인 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 이 때 가능하다면 이전할 거주지 후보지들을 몇 군데 정하여 피후견인과 함께 방문해보는 것이 적절함. 피후견인이 만족스러워하는 곳을 찾는다면, 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좋음. 피후견인에게 너무 생소한 지역은 가능한 피해야 함.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한 뒤 이사를 갈 수 있음. 어느 경우든 후견인이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법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함. 만약 대리권은 보유하고,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면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피후견인이 보증금, 월 차임 등을 감당할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므로 후견인은 이러한 정보 등을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보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볼 수 있음.

거주지를 이전한 뒤에는 통장, 이웃 등과 친밀하게 소통하여 피후견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계 형성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임.

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장기요양서비스는 피후견인에게 유용한 지원제도가 될 수 있음. 매일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를 통해 피후견인의 안부를 확인한다거나, 적절한 서비스 제공여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기 때문임.

피후견인이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입소한 경우라면 시설에서 피후견인에게 24시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 이 때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시설에서 잘 지내는지, 방임 또는 학대를 당하지는 않는지 등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함.

(1) 재가서비스

재가서비스란 주로 집에 장기요양요원 등이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임. 재가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피후견인에 한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대여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표 2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주·야간보호 (데이케어센터)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 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표 23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의 종류

품목명	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 실외)

(2) 시설

〈사례 2-7〉 후견인 G는 피후견인 H가 입소하기에 적절한 시설은 어디인지 고민을 많이 했음. 시설이 좋은 점 혹은 일하는 인력의 전문성, 비용문제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인 H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았음. G는 평소 H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조용한 편인 것을 고려하여 1인실 사용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음. 하지만 대부분의 요양시설이 2인실부터 있기 때문에 1인실이 있는 곳을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거나 거리가 멀었음. 서울시내에 위치하면서 1인실이 있는 요양원이 없어 G는 공동생활가정이라는 형태의 소규모 요양시설까지 조사하였고, 몇 주 후 자리가 나면 연락을 준 다던 동대문구에 위치한 시설에서 1인실이 한 자리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음. 시설도 깨끗하고 월 20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하여 그 자리에서 입소계약을 맺고 H를 집에서 요양시설로 우선 모실 수 있게 되었음. 입소한 뒤 H는 ‘내집이니 나가라’, ‘혼자 있어서 좋다’ 등 입소한 시설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있음.

요양원,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피후견인이 더 이상 재가생활이 불가능해질 때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함. 시설에 입소할 경우, 집에서 생활할 때에 비해서는 피후견인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임. 그러므로 시설입소가 필요한지 여부는 신중하게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함.

시설 입소를 결정할 경우, 피후견인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곳이면서 후견인이 방문하기 용이한 곳을 선정하여야 함.

시설에 입소한 직후에는 평소보다 자주 방문하여 피후견인이 시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피후견인이 시설에 적응한 뒤부터는 방문횟수는 줄이되, 시설관계자와 소통하여 꾸준히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표 24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의 종류

시설 종류	시설급여의 정의	입소정원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3)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 이용

〈사례 5-1〉 피후견인 Q는 평소 거동이 불편하긴 하지만 걸을 수는 있었고, 인지기능도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음. 후견인 P는 Q가 외부활동을 혼자 하기에는 어려워 무료하게 집에서만 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음. P는 Q가 장기요양등급 5등급 재가급여를 인정받았다는 점을 기억하였음. P는 주야간보호서비스(데이케어센터)에 다닐 수 있도록 이용절차를 지원하였고, Q의 거소지 인근에 있는 데이케어센터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아침마다 집 앞으로 오는 동행서비스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며 위협하게 나갈 필요가 없이 여가도 즐기고, 후견인이 매일 방문하지 않더라도 데이케어센터에서 Q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P에게 보고하는 등 후견 업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음.

주야간보호서비스(이하 “데이케어센터 이용”)의 경우 무연고자는 이용하기 어려움. 매일 이용료를 결제해주어야 하는 법적 보호자가 있어야 입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임. 그러므로 피후견인의 신체조건이 양호하고, 재가(在家)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후견인이 지정된 후 신청을 고려해 볼 만함.

데이케어센터 이용의 가장 큰 장점은 후견인 외에 추가로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구축된다는 점임. 매일 데이케어센터 관계자가 피후견인을 등·하원시켜주며(동행서비스) 그의 안부를 확인하고, 주간동안 보호받으며 식사, 개인위생 등을 양호하게 지원받을 수 있

기 때문임. 데이케어센터 이용은 하루 3~4시간 동안 제공되는 방문요양서비스보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다만,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동이 어렵거나, 인지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방문요양서비스를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

표 25 데이케어센터 이용 정보

-
- ①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② 이용시간 : 평일, 8:30~20:30, 토요일 9:00~18:00
(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함)
 - ③ 예상비용 : 월 20회 이상 이용시, 식비포함 20~25만원 선
-

바. 기존 지지체계와의 관계 설정

(1) 가족과의 관계 설정

〈사례 6-1〉 피후견인 S는, 피후견인을 학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아들 T와 동거하고 있음. S의 치매증상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T는 S를 돌보기는커녕 S의 기초연금을 출금하여 음주하는 데에 대부분을 지출하기 일쑤였음. 후견인 Z가 집에 방문하였으나 T는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불쾌하다는 모습이 역력했음. T는 S에게 반복적으로 Z에대한 험담을 하여 S가 Z를 피하게 하기까지 하였음.

Z는 T가 지속적으로 후견업무를 불편하게 하고 면담을 방해하여 T와 관계 맺기가 매우 어려웠음. Z는 T와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이 S의 안정적인 생활에 전제라는 판단 아래, T와 많은 대화를 해보기로 하였음. Z가 방문 빈도를 높이자 T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 하였음. Z는 T에게 구청에 자활수급 선정을 신청하라고 조언하였음. T는 정기적으로 자활센터로 출근하여 소정의 근무를 하기 시작하였음. Z는 T가 출근하는 시간에 주로 방문하여 S의 상태를 살폈고, T도 가끔 만나면서 근황을 살폈음. T는 자활센터에 근무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후 정식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는 구직신청을 하였고, 근처 인테리어 시

공업체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음.

T는 근로하면서 급여를 받자 더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였고, 더 이상 S의 돈에 손을 대거나, 술에 의존하지 않았음. 그럼으로써 S의 생활은 안정을 되찾았고, T 역시 Z에게 협력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조금씩 관찰되고 있음.

피후견인 중에는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 상황에서 제3자인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방문하여 그와 라보형성을 시도할 때, 그 가족 중 일부가 불쾌해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음. 이 때 후견인은 조심스럽게 피후견인과의 가족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음. 특정후견이 종료된 뒤에도 피후견인 옆에서 그를 지원할 가장 강력한 자원은 다름 아닌 그의 가족이기 때문임.

그러므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가족과 면담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방문 횟수를 늘려 친밀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피후견인의 가족이 잘못된 방법으로 금전 관리나 피후견인을 보호하고 있더라도, 직접적인 비판과 조언은 감정적인 관계로 발전되기 쉬우므로 신중해야 함. 단, 피후견인의 가족이 피후견인을 학대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함.

가족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 가족이 해오던 방식을 인정해주는 등 가족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함. 또한 가족들이 겪는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면 후견업무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임.

(2)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설정

〈사례 1-22〉 피후견인 B에게는 지난 3년간 보호자 역할을 해오며 관리하던 요양보호사가 있음. A는 후견인으로 지정된 후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B의 일상생활을 모니터링 해오던 중 요양보호사의 불편한 기색 때문에 후견사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요양보호사는 후견인이 통장을 주면 본인이 인출하여 생활비를 사용하면 편한데, 일부러 불편하게 하려고 월 10만원 한정된 돈에서 쓰게 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갖고 있었음. A는 이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우선 요양보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방문요양기관에 연락하여 요양보호사의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하였음. 나아가 요양보호사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B의 후견인으로서 요양서비스 계약의 변경 및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알렸음. 방문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근무 모니터링을 실시함. 근무태도를 지적 받자, 감정적이던 요양보호사의 태도도 개선되었음. A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주 요양보호사와 대면하면서 친밀감을 높였음. 전화 연락도 주고 받으면서 B에 대한 돌봄의 어려움과 그 수고를 서로 나누면서 가깝게 지냈음. 현재는 B를 위해 각별히 협업하는 동반자로 서로 조력하면서 지내고 있음.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요양보호사와 소통이 잘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음. 서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 후견사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함.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요양보호사가 후견사무를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어려움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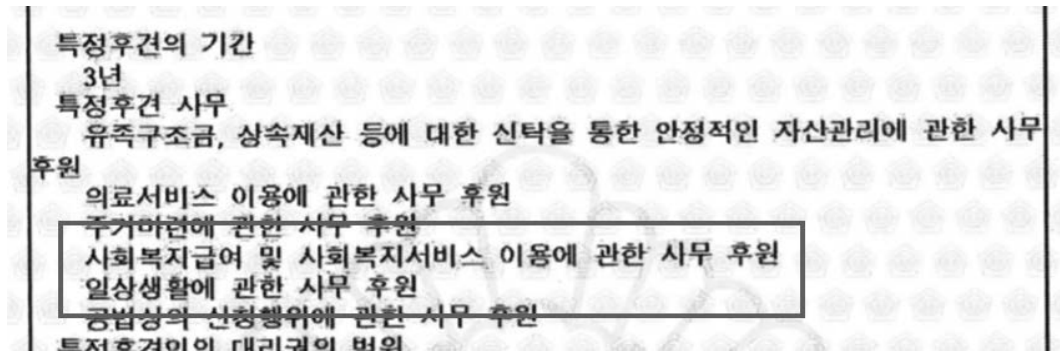
피후견인과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피후견인과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형성된 경우가 많음. 후견인보다 피후견인의 선호, 생활습관, 평소 기분 등 개인적 특성을 잘 알고 있으므로, 원활한 후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협조가 필수적임.

그러므로 후견인은 요양보호사와 초기부터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초기에 불명확한 관계를 설정하면 오히려 피후견인과 가깝다는 점을 무기삼은 요양보호사에게 휘둘리게 될 위험이 높기 때문임. 그러므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적 보호자로서,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위에 있고, 요양보호사는 계약에 따라 피후견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고지해야 함.

만약, 후견인이 사회복지서비스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새롭게 방문요양센터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휘·감독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함.

후견인은 요양보호사가 피후견인 복리에 반하여 태만하게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일 경우, 지체 없이 교체를 추진해야 함. 이미 어긋난 관계를 맞추는 것보다 새로운 요양보호사와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기 때문임.

그림 33 신상보호 사회복지서비스 대리권 예시



(3) 이웃과의 관계 설정

이웃은 언제든지 피후견인의 조력자가 될 수 있음. 특히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설정해두면, 응급상황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함. 피후견인의 조력자로서 활동할 이웃의 대표적인 예는 통장, 같은 건물 주민, 집주인, 상점주인, 동년배 어르신 등이 있음.

(4) 요양기관과의 관계 설정

(가) 재가시설 (방문요양 등)

재가시설은 피후견인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써 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관리하는 곳임.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이용하는 방문요양기관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연락해두는 것이 좋음.

방문요양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하게 관찰해야 할 점은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파견, 관리, 감독하는가’임. 피후견인이 독거 무연고자인 경우, 후견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홀히 관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그 밖에도 요양보호사가 정시 출·퇴근을 하는지 여부, 집안 청소 상태, 식생활지원, 병원 동행 등 피후견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재가시설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입소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등)

피후견인이 입소하는 시설은 크게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있음. 요양원은 장기요양제도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한 곳임.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운영되어 의료적 진단이 있다면 언제든지 입소가 가능함.

어느 시설이든 대부분 후견인의 방문이나 관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음. 다만, 요양병원은 의료행위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견인에게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음⁷⁹. 후견인은 방문할 때마다 시설이 피후견인에게 적절히 생활 환경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입소시설에 있을 때, 자주 모니터링해야 하는 부분으로는 ①‘대·소변 등의 위생문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②‘일일 건강체크가 정기적이며 그 누락은 없는지’, ③‘만성질환의 투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④‘식사는 제대로 제공되는지’, ⑤‘요양보호사·간병인 등의 근무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등이 있음.

(5) 기타 지원자와의 관계 설정

(가) 후원자

피후견인에게 그 밖에 정기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후원자)이 있는 경우, 후견인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보호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여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가 많음. 이 때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지원하는 자로서, 후원자와 비슷한 지위이므로, 계속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는 점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음.

(나) 복지시설 관계자

피후견인이 복지서비스 사례관리대상자일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업무담당자, 노인종합복지관·재가서비스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등 사례담당자와 밀접한 관계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함.

79 “III., 2., 아.” 참조(P. 144)

후견인이 지정되어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피후견인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함께 논의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음.

피후견인이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주변 복지시설을 탐색하여 협력할 수 있는 담당자를 찾을 수 있고,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음.

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한 문제

(1)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정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음.

이 때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함.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함⁸⁰.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란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와 같은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함⁸¹.

그리고 19세 이상의 사람은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부름.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함. 이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호스피스의 이용, 작성

80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 제5호

81 같은 조 제6호

연월일, 작성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작성자가 등록기관으로부터 제12조 제2항 각호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열람허용여부, 등록기관 및 상담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⁸².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⁸³,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음. 다시 작성한 의향서를 등록한 경우, 기존의 의향서는 그 효력을 상실함⁸⁴.

만약,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으로부터 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받지 않았거나, 그에 대한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효임⁸⁵.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함.

82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3항, 동시행령 제8조 제3항,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2항

83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6항

84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8항 제4호

85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8항 제1호 내지 제3호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대리 작성 불가능

〈사례 1-23〉 후견인 A는 피후견인 B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뒤, 지인들로부터 B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둘 수 있다는 점을 듣게 되었음. 더욱이 퇴원 후 B가 다니는 주간보호센터 센터장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검토해보라고 권고하기도 하였음.

이에 A는 B가 임종과정에 이르렀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는 것보다 존엄하게 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음.

A는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자신이 B의 후견인임을 밝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음.

등록기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만이 작성할 수 있고, A가 B를 대리하여 작성할 수 없다고 밝혔음. 또한, B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이를 작성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음. 만약 B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를 작성하였다면, 그 의향서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하였음.

이에 A는 B에게 3개월 간 수 차례에 걸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설명하고, 등록기관에도 모시고 가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럼에도 B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작성하는 것에도 반대하였음.

A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포기하였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미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결정으로서 타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음. 연명의료결정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음.

그러므로 후견인 역시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 가능성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착오로 후견인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후견인이 대리로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는 무효임.

(4) 후견개시 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이 작성된 경우

〈사례 4-3〉 후견인 O는 피후견인 M의 배우자 N으로부터 과거 M과 N이 보건소에 방문했다가 홍보자료를 접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해두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후 후견이 개시된 경우, 종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효냐는 N의 질문에 O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주었음. 다만, 이미 M의 판단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상, 종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답변을 해주었음.

아울러 O는 N에게 향후 M이 임종과정에 이르게 될 경우, 담당의사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꼭 알려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음.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두었거나,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직계가족의 진술 등이 있다면, 이를 존중하여 그에 따른 연명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다만, 연명의료 중단 등은 후견인이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후견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담당의사에게 알리거나, 피후견인의 직계가족들을 병원으로 방문하게 하여 피후견인의 의사를 담당의사 등에게 진술하도록 하는 등의 사실적인 도움을 주면 충분함.

아. 요양병원, 종합병원 입원과 관련한 문제들

(1)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문제

(가) 본인의 뜻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이행

〈사례 4-4〉 후견인 O는 피후견인의 배우자 N으로부터 피후견인 M이 갑자기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입원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음. 즉시 병원에 방문한 O는 N으로부터 담당의

사와의 다음과 같은 대화를 전해 들었음. 담당의사는 O에게 M이 소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 임종을 준비하는게 좋겠다고 하면서, 혹시 M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는지, 만약 작성하지 않았다면 연명치료를 하는 것에 대한 직계가족들의 의견이 어떤지 물어보았고, 그에 대하여 O는 담당의사에게 미리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음을 알려주었음.

담당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M이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등록된 의향서의 내용을 M의 의사(意思)로 보고, 연명치료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임종과정에 있는 피후견인이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거나, 의료기관에서 피후견인과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의 뜻으로 보고, 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을 하게 됨⁸⁶.

만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고, 피후견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피후견인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배우자, 피후견인의 부모 또는 자녀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피후견인의 의사로 봄.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피후견인 가족의 진술,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녹음물, 녹화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⁸⁷.

(나) 본인의 뜻에 의하지 않은 연명의료 중단

〈사례 1-24〉 피후견인 B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 재발하여 다시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음. 후견인 A는 담당의사로부터 신장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복부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음. 담당의사는 B가 일주일 넘기

86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87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동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연명치료에 대한 얘기를 꺼냈음. 연명치료를 진행하면 수개월 정도 생존할 수는 있으나, 무의식 상태에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뿐이고, 그 과정에서 B도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며, 비용도 과도하므로, 연명치료를 진행해야 하는지 잘 고민해달라고 하였음.

A는 B가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지 않았고, B의 직계가족도 아닌 제3자인 A가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권한이 없고, 달리 B를 위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해 줄 가족이 없으므로, 원칙대로 연명의료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음.

피후견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충분한 기간동안 일관하여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더라도, 예외적으로 연명의료중단을 허용하고 있음.

즉, 피후견인의 배우자, 1촌이내의 직계 존속(부모)·비속(자녀)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한 경우가 그것임. 만약 배우자, 부모·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2촌 이내의 직계 존속(조부모)·비속(손자녀) 전원의 합의, 만약 그것도 없다면 형제자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수 있음⁸⁸.

그러므로 피후견인이 임종과정에 이르렀고, 별도로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힌 바가 없는 경우더라도, 후견인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수 없음. 만약,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하더라도 후견인은 그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거부해야 함.

(다) DNR 동의서

의료기관 중에는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이 입원할 때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DNR이란 단어 그대로 심폐소생술 거부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생명유지를 하지 않는 것, 즉 연명의료 중단을 뜻함.

그러므로 DNR 동의서 작성 역시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대로 배우자, 1촌이내의 직계 존속·비속, 그들이 없다면 2촌 이내의 직계존속·비속, 그마저 없다면 형제자매 전원의 합

88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의로 작성해야 함.

만약, 의료기관이 후견인에게 DNR동의서를 요구할 경우, 후견인은 작성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를 거절해야 함.

(2) 병원비 연대보증 요구와 관련한 문제

〈사례 1-25〉 피후견인 B가 응급실에 입원하자, 병원에서는 후견인 A에게 보호자로서 병원비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입원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음. A는 자신이 후견인인 것은 맞지만 B에게 발생하는 병원비를 모두 부담할 수 없고, 그럴 지위에 있지도 않다고 연대보증을 거절하였음. 다만, A는 병원에게 B가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서 충당되지 않는 간병비 등 자기부담금 역시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득하였음. 병원측에서도 사회복지팀을 통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A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것을 양해해주었음.

많은 의료기관들은 향후 환자들에게 병원비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자들에게 병원비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원을 거부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의 이와 같은 관행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후견인으로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함.

아울러 감독인으로서 연대보증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즉,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고,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⁸⁹. 나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⁹⁰. 그런데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

89 의료법 제15조

90 의료법 제89조 제1호

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⁹¹, 모든 국민은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함⁹². 의료기관의 장은 위와 같은 내용을 환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함⁹³. 요컨대, 환자가 병원비를 부담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거나, 그 병원비를 연대보증할 보호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임.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11. 13. 보건복지부에, 공공병원의 경우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을 작성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민간병원에는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란을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도록 개선하라는 권고를 하였음. 보건복지부는 위 권고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 병원비 연대보증 관행을 개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음.

(3) 긴급한 수술행위에 대한 동의 문제

〈사례 3-3〉 후견인 I는 피후견인 K가 사망하기 전 응급실에서 담당의사로부터 긴급히 수술이 필요하니 이에 동의하라는 요청을 받았음. 그러나 후견인 I는 피후견인 K에 대한 수술행위에 대한 동의를 할 권한이 없었음. I는 의료기관에 본인은 후견인이기는 하지만 수술에 동의를 할 권한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음.

(가) 의료법에 따른 동의 없는 수술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수술등”)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⁹⁴. 이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91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제1항

92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제2항

93 의료법 제4조 제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 별표1,

94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임⁹⁵.

즉, 의사는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술을 함에 있어 피후견인 본인 또는 그 결정 권한이 있는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피후견인 본인이 이에 동의할 의사능력이 없고, 후견인도 그에 동의할 권한이 없는 경우, 그렇다고 하여 수술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피후견인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대단히 부당한 결과임. 나아가 그와 같은 의료기관의 결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한 것으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임.

이에 의료법에서도 동의 절차를 이유로 수술 등이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술행위에 대한 동의 권한이 없는 후견인은 의료법 제24조의2를 근거로 의료기관에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해야 함⁹⁶.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의 없는 수술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기관은 필요한 응급의료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만약 피후견인이 직접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응급의료, 수술 등에 대한 동의권한이 있다면 법정대리인으로서 응급의료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음.

나아가 응급의료기관은 피후견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후견인도 동의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고, 동의권이 없는 후견인 등 피후견인과 동행한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를 하면 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⁹⁷, 응급의료종사자는

95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96 의료기관 중에는 동의 없이 수술을 할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 되어 의료법 제92조 제1항 제1호의3호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난색을 표하는 곳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야 함.

9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음⁹⁸. 나아가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협해지는 경우 등에는 응급환자의 동의 없이 응급의료를 진행할 수 있고⁹⁹,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는 그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임¹⁰⁰.

자. 사교활동

피후견인의 활발한 사교활동은 사회적 접촉기회를 증대시켜 노년기의 고립감을 해소시킬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면서 피후견인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피후견인이 다닐 수 있는 여가시설로는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등이 있지만 비교적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음. 피후견인이 거동이 불편하다면 지역에 위치한 재가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여가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지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함.

(2) 종교활동

피후견인에게 종교가 있고, 오랜기간 다니고 있는 종교시설이 있다면, 계속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종교시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신도를 직접 동행하여 모시는 곳도 있으므로, 후견인은 종교시설에 연락을 취해보고 연계하는 노력을 해볼 수 있음.

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9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차. 감염병 유행시기 신상보호

2020년 상반기를 덮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후견인의 신상보호활동 역시 큰 제약을 받게 되었음. 새로운 세상(“New-Normal”)에서 후견업무의 변화도 불가피한 바, 후견업무에도 신기술들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독거노인이라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감지기·가스감지기·활동량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인근 119에 신고하는 설비를 제공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그 밖에도 후견인은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기술이 접목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임.

3. 피후견인 사망과 관련한 후견실무

〈사례 1-26〉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피후견인 B는 결국 퇴원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음. 후견인 A는 B가 사망하자마자 감독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였음. 감독인은 사망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B의 사망사실을 보고하였음. A는 무연고자인 B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 끝에 하루 짧은 장례식을 치러주기로 하였고, 시신은 화장하기로 하였음. 사망 후 장례, 화장 절차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기로 하였음. A는 남은 병원비를 정산하고, 사망신고를 마쳤음. 그 후 A는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후견종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후견업무를 종료하였음.

〈사례 2-8〉 피후견인 H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 V가 있었음. 후견개시청구 당시 V는 자신이 미국에 있어 H를 부양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가 공공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보낸 바 있었음. 후견인으로 G가 선임된 뒤에도 V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H를 찾아오곤 했음. 그러던 중 H가 사망하였음. G는 즉시 V에게 연락하여 H가 사망하였음을 알리고,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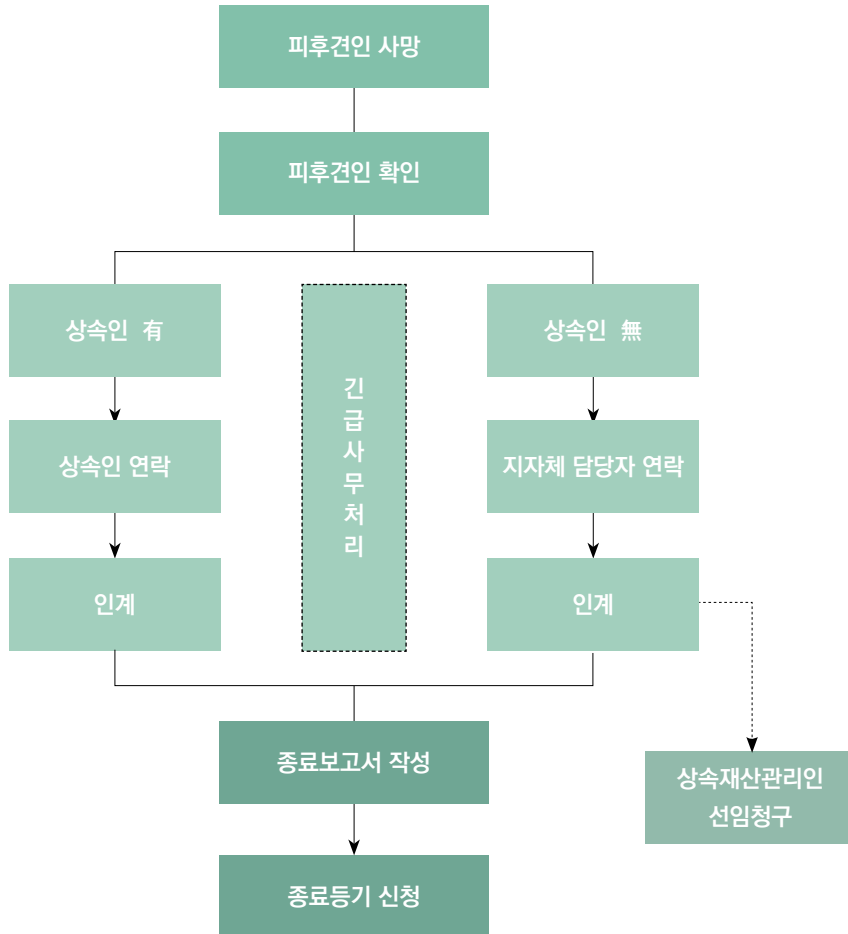
에 바로 입국할 것을 요청하였음. V는 항공권을 알아보고 가장 빠른 비행기편으로 귀국 하겠다고 알려왔음. G는 V에게 혹시 평소에 염두에 두고 있던 장례식장이 있는지 물어 보았음. V는 그런 곳은 없으니 후견인이 적당한 곳에 H를 모셔주면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였음. G는 H가 살던 곳 인근의 종합병원 장례식장에 H를 안치하였음. 장례식장에는 미국에 있는 자녀 V가 오고 있으니, 그 이후에 빈소를 마련하겠다고 해두었음. 장례식장에서는 그때까지 일단 H를 안치실에 모셔두고 기다리겠다고 하였음. H가 사망한 날로부터 이틀 뒤 V가 귀국하였고, G는 장례식장에서 V를 만나 장례절차 등을 인계하였음. 장례식이 모두 끝난 뒤 G는 V에게 후견종료 이후 절차를 안내하였고, H 명의 통장 등을 전달하였으며, H의 재산은 모두 V가 상속하였으므로 H가 사망한 뒤부터 발생하는 문제 들은 V가 처리하여야 한다고 알렸음.

G는 V에게 법원에 보고할 때 필요하니 상속예금 처리차 은행에 방문할 때 H명의로의 계좌거래내역들을 발급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음. V로부터 이 서류들을 받은 뒤 G는 종 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인에게 제출하고, 종료등기신청을 하였음.

* 사례 2-8의 경우, 피후견인의 자녀가 후견인에게 특별히 요청해서 수행한 사례임.

가. 사망 이후 후견사무의 개요

그림 34 피후견인 사망 후 업무 개요도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인의 업무는 종료됨. 전술한 것과 같이 종료보고서 작성 및 후견종료등기신청, 긴급사무 처리¹⁰¹ 정도만 처리하면 됨. 후견인은 긴급사무 처리의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 사망 후 사무들에 대해 어느 정도 조력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절차를 알아

101 후견이 종료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여야 함(민법 제959조의13, 제691조).

둘 필요가 있음. 사망 이후 업무는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이에 차이가 있음.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인에게 이후 사무를 인계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지자체 담당자에게 인계함이 원칙임.

나. 사망 직후

(1) 피후견인이 요양병원, 요양원, 종합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가) 피후견인 시신 확인

먼저 피후견인 시신을 확인하고, 담당의사·직원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함.

(나) 상속인 또는 지자체 담당자 연락

1) 피후견인이 무연고자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해야 함. 지자체 담당자로 하여금 공영장례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함¹⁰².

2) 피후견인에게 연락이 닿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인에게 즉시 연락하여 피후견인 사망 사실을 알리고, 즉시 외출 것을 요청해야 함. 만약 상속인이 해외에 있거나 먼 지방에 있어 즉시 방문하기 어렵다면, 상속인이 희망하는 장례식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곳에 안치해야 함.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지체없이 피후견인 시신을 인근 장례식장 안치실로 옮겨 보관해야 하기 때문임.

3)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 일단 무연고자와 동일하게 진행해야 함. 그 후 지자체 담당자로 하여금 상속인을 수색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사망진단서 발급

상속인 또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연락한 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함.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 제출, 법원 보고, 사망신고, 은행 제출 등 여러 용도로 필요하므로 충분히 발급 받

102 무연고자 사망에 대하여는 "III, 3., 마." 참조(P. 158)

는 것이 좋음.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그 비용은 피후견인 계좌에서 지출해야 함.

(라) 장례식장으로 시신 안치

1) 미리 봐둔 장례식장이 있거나, 무연고자라서 공영장례가 필요한 경우, 그 장례식장으로 피후견인의 시신을 안치함. 일단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시설, 병원에서는 그 이후의 절차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후견인 또는 지자체 담당자가 진행해야 함.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때 이동수단은 별도로 요청해야 함. 병원에 문의하면 업체를 알려줌.

2) 상속인이 있는데 먼 지방에 있거나 해외에 있어 곧바로 찾아오기 어려운 경우,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장례식장으로 모시는 것은 후견인이 도와줄 수 있음.

(2) 피후견인이 집에서 사망한 경우

피후견인이 집에서 사망한 경우 우선 경찰과 119에 동시에 신고해야 함. 경찰이 출동하여 변사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임. 경찰 변사자 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가 진행되면 그에 협조하여야 함.

검사가 마쳐지면 경찰의 안내에 따라 장례식장 등으로 피후견인의 시신을 안치하면 됨. 그 밖의 절차는 (1)항과 같음.

(별지 제204호 서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제 2016-1 호

결 재	담당	팀장	계장

범죄유형	변사	KICS접수번호	사건담당
발생일시	~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병원 장례식장(병원)		
감식일시	시작 2016.	종료 2016.	기상상태 맑음
사건개요	2016. . 13 : 39분경 서울 병원 응급실에서 변사자(여/85세)가 치료중 사망한것임 - 변사자는 2016. 분경 서울 아파트 동 호라인 에 시 로 넘어져 119에 의히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이 - 형사팀 경사 - 사망진단서(뇌출혈, 출혈성뇌타박상/ 의사)		
현장상황	1. 사건접수 - 담당형사가 병원으로 임장요청 2. 현장상황 - 현장은 서울 동 이며, - 현장 복도 바닥에는 혈흔등 특이점은 발견치 못함 3. 변사자 상태 - 변사자는 응급실서 치료중 사망하여 이미 장례식장으로 이동한 상태 - 전신에 경직은 없으며, 좌측 쇄골 부분 손등 팔등에서 명자국이 관찰됨		
감식사항			

다. 사망신고

(1) 관련 규정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동거친족, 친족,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사람,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¹⁰³, 사망장소의 동장, 통·이장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여야 함¹⁰⁴. 이때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함¹⁰⁵.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화장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해야 함¹⁰⁶.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¹⁰⁷이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한 경우에는 사망지·매장지·화장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¹⁰⁸.

(2) 후견인은 사망신고 의무자가 아님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의무자가 아님. 그러므로 사망신고는 피후견인에게 친족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게, 그렇지 않다면 동 주민센터 담당자 등에게 사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족함.

(3) 사망신고의 효과

사망신고를 할 경우, 피후견인 명의 재산은 모두 동결됨. 특히, 은행계좌 등 금융재산들은 바로 동결되어 후견인이 계좌거래내역 등을 조회하거나, 장례비용, 병원비 등 잔여 채무를 정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짐.

그 이후에는 피후견인의 상속인만이 피후견인의 계좌거래내역 등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을 뿐임.

103 요양원, 요양병원 시설장 등

10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85조

1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10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조, 제4조

10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

(4) 사망신고 전 계좌거래내역 등 발급

피후견인이 무연고자이거나, 상속인으로부터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은 마지막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기준일부터 사망일까지를 기준으로 한 피후견인 보유 예금 계좌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향후 업무에 도움이 됨.

라. 상속인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견인은 피후견인 사망 사실을 상속인에게 알리고,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인에게 제출한 뒤 후견종료등기신청을 하는 것으로 업무가 종료됨.

다만, 전술한 것과 같이 상속인이 해외에 있거나 먼 지방에 있어 즉시 찾아오기 어려운 경우, 상속인이 도착할 때까지 상속인과의 협의 하에 피후견인의 시신을 임시로 안치하는 등 사실상의 조력을 해야 할 수 있음. 긴급사무 처리의 범위 내에 포함되기 때문임.

마. 상속인이 없는 경우

(1) 무연고자 장례절차 지원과 관련한 제도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장례절차는 각 지자체의 무연고자 장례 혹은 공영장례와 관련한 조례, 지침에 따라 진행하게 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¹⁰⁹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¹⁰. 그리고 사망자가 남긴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위 시신 처리 비용을 충당하고,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¹¹¹.

노인복지법 역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은 법 28조에 따라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

10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매장 또는 봉안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음.

1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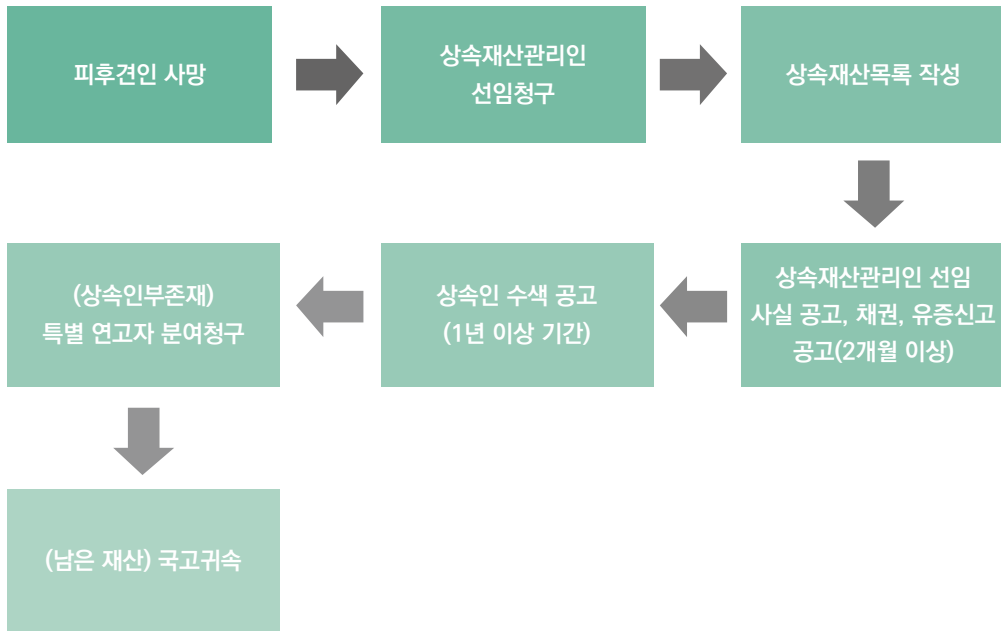
1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하고 있고¹¹²,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위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¹¹³.

나아가 지자체 중에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두고 있는 곳이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피후견인의 후견인은 이를 참고하기 바람.

(2) 상속재산 처리와 관련한 사무

그림 36 상속인이 없을 때 사후 사무 처리 개요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후견인인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민법은 상속인이 없는 재산에 대한 청산 절차를 두고 있음. 이하에서는 그 절차를 소개함.

112 노인복지법 제28조 제3항

113 노인복지법 제48조

(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함¹¹⁴. 이해관계인에는 지자체 담당자, 후견인, 요양원·요양병원 등 시설장 등이 포함됨. 지자체 중에는 직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진행하는 곳도 있는바, 우선 지자체에 그와 같은 청구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만, 피후견인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¹¹⁵,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한 재산 청산절차를 진행할 비용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음¹¹⁶.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후견인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피후견인의 상속재산 목록을 전달하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 예금통장, 체크카드, 패물, 기타 동산들을 인계하여야 함. 종료보고서와 후견사무보고서 일체를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전달하면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될 것임.

이하에서 서술하는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절차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업무이므로 후견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후견인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견인과 감독인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상속재산목록 작성

상속재산관리인은 그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함¹¹⁷.

(다) 상속재산 청산

1)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때에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¹¹⁸. 이 때

114 민법 제1053조 제1항

115 예를 들어 수십만 원 정도만 남은 경우

116 사망자가 남긴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처리 실무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지자체 담당자에게 인계함으로써 종결하는 것이 적절함.

117 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4조

118 민법 제1056조 제1항, 제1053조 제1항

관리인은 채권자, 수증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청산에서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함¹¹⁹. 관리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들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함¹²⁰.

2) 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한 자, 상속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나누어 지급해야 함. 단,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¹²¹. 상속재산관리인은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도 전술한 것과 같이 변제해야 함¹²². 단,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함¹²³. 상속재산관리인은 위 채권신고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음¹²⁴.

3) 상속재산관리인은 위와 같이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함¹²⁵.

4) 상속재산관리인이 2)항, 3)항을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¹²⁶.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는 그 사정을 알고서도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¹²⁷.

5)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알지 못한 자는 위 절차에 따라 청산된 뒤에도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음¹²⁸.

(라) 상속인 수색 공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그리고 2개월 이상의 상속채권자, 수

119 민법 제1056조 제2항, 제88조 제2항

120 민법 제1056조 제2항, 제89조

121 민법 제1056조 제2항, 제1034조 제1항

122 민법 제1056조 제2항, 제1035조 제1항

123 민법 제1056조 제2항, 제1035조 제2항

124 민법 제1056조 제2항, 제1033조

125 민법 제1056조 제2항, 제1036조

126 민법 제1056조 제2항, 제1038조 제1항 전단

127 민법 제1056조 제2항, 제1038조 제2항 전단

128 민법 제1056조 제2항, 제1039조

증자에 대한 공고기간이 경과되어도 상속인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1년 이상의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¹²⁹.

(따)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수여

상속인 수색공고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사망자)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줄 수 있음¹³⁰. 이 때의 청구는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함¹³¹.

(바)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위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도 남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됨.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함¹³². 상속재산이 국가로 귀속된 이후에는 상속채권자나 수증자가 있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없음¹³³.

129 민법 제1057조

130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131 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132 민법 제1057조

133 민법 제1059조

IV. 후견사무 심화

후견사무 심화 파트는 모든 후견 케이스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무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실제 공공후견 사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으나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사례 발생 시, 중앙지원단 변호사와 상담 및 자문 통해 사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IV. 후견사무 심화

1.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무

〈사례 1-27〉 후견인 A는 피후견인 B가 X와 Y에게 가지고 있는 채무 총 1,500만 원을 시급히 변제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B가 임대인 C에게 갖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하여 시민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기간 1년으로 하여 대출하였음. 법원은 위 대출을 허가하면서 향후 이 대출계약의 변경, 연장 등의 사무를 할 때에는 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음.

대출기간이 지난 뒤 후견인 A는 대출기간 연장을 위해 감독인에게 동의서를 요청하였음. A는 감독인에게 받은 동의서를 시민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연장하였음.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그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음¹³⁴. 공공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이 후견개시심판을 하면서 후견인의 대리권행사에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기도 함. 이는 개별 사례마다 상이하므로, 후견개시심판문 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함. 다만, 후견인이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독인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월 정기보고서 등 감독인의 상시적인 감독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감독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음.

그 밖에 심판문에서 반드시 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후견인의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고, 법원에 대리권 변경 또는 허가를 구할 때 감독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고 심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음.

134 민법 제959조의11 제2항, 제1항

가. 심판문에서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무 예시

주로 법원에서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때 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음. 그 중 민법 제950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통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사후적으로 그런 행위의 대리가 필요하여 대리권을 부여받을 경우, 별도로 법원의 허가심판을 받거나¹³⁵, 대리권 변경심판을 하면서 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음.

표 27 감독인 동의 또는 법원 허가를 요구하는 행위

항목	실무상 운용실태	비고
영업에 관한 행위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경우에도 보통 감독인보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민법 제950조, 제959조의6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에 적용됨. 특정후견의 경우, 법원에서 해당 행위를 특정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음.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Ex. 증여)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Ex. 부동산 매각, 부동산 담보제공)	“중요한 재산”에 대한 해석문제가 있음. “중요한 재산”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해당 거래가 그에 관련된 행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임.	
소송행위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경우에도 보통 감독인보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피후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임을 주의)		
임대차계약 체결	공공후견이 아닌 일반 후견의 경우, 법원에서 감독인을 선임하면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135 민법 제959조의8

그림 37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례

공법상의 신청행위(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각종 서류 발급, 인감등록, 인감증명 관련 서류 발급, 개인 정보 신청의 신청 등)의 대리권
 주거마련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변경, 해제, 해지 등에 관한 대리권(단,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을 것)

그림 38 한정후견에서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구분한 사례

다. 기타 사항
 아래 사항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함

가. 영업에 관한 행위
 나. 금전을 빌리는 행위
 다.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라.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마.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바.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사.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피한정후견인 명의의 각각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1개 계좌에서 합계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거나 이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양도, 직권설정 등 포함)하는 행위

4. **법원의 허가사항**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행위

그림 39 성년후견에서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구분한 사례

II.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

1. 아래 사항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함

가. 영업에 관한 행위
 나. 금전을 빌리는 행위
 다.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라.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마.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바.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사.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일체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1개의 계좌에서 합계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거나 이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양도, 직권설정 등 포함)하는 행위

2. 아래 사항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가.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담보제공행위
 나.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나. 내부적으로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한 사무 예시

(1) 원칙

심판문에서는 감독인의 동의 없이 후견인이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무더라도, 해당 사무가 피후견인에게 미치는 영향, 중요성, 사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할 때 내부적으로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음. 후견인이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을 덜고, 감독인 역시 후견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겼다가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임. 다만, 대외적으로는 후견인이 단독으로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으므로, 감독인의 동의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음. 오히려 감독인의 동의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경우,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그 자체만을 놓고 위험이 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후견인이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더라도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적절한 대표적인 사무로는 1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사무, 2 신탁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무, 3 소송행위 및 변호사선임행위가 있음.

(2)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의 경우, 피후견인의 거주지를 결정하고, 고액의 보증금이 지출된다는 점에서 피후견인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 하나인 바, 법원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변경, 해지 등의 사무를 대리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그 세부사항을 감독인과 협의하고, 동의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함.

표 28 임대차계약 관련 감독인과 협의가 필요한 주요사항

항목	주요 협의 및 동의사항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목적물 주소, 현황, 임대인, 보증금액수, 월 차임, 임대차기간
임대차계약 변경	변경하는 계약의 내용(보증금, 월 차임,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계약 해지	해지 사유, 피후견인 주거지 확보 여부,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과 관련한 임대인 협의사항 등

(3) 신탁계약

신탁계약 역시, 피후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피후견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그러므로 신탁계약 체결 변경, 해지 등의 사무를 대리할 때에도 내부적으로 그 세부사항을 감독인과 협의하고 동의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적절함.

표 29 신탁계약 관련 감독인과 협의가 필요한 주요사항

항목	주요 협의 및 동의사항
신탁계약 체결	수탁자, 신탁 수수료, 신탁조건, 신탁기간, 후건 종료 후 신탁계약 유지 방안,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여부 등
신탁계약 변경	변경하는 계약의 내용(신탁조건, 신탁기간 등)
신탁계약 해지	해지 사유, 해지 후 신탁재산의 귀속 방안(다른 수탁자에게 신탁하는지, 피후견인 재산으로 귀속시키는지) 등

(4) 소송행위

후견개시 당시 분쟁이 존재하거나, 분쟁이 예견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소송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미리 수여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따라서 소송행위가 필요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추가로 부여 받거나 그 행사에 허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소송행위는 보통 피후견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더라도 소송과 관련한 주요한 결정들은 감독인과 미리 협의하고, 동의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적절함.

표 30 소송행위 관련 감독인과 협의가 필요한 주요사항

항목	주요 협의 및 동의사항
소송 초기	소제기(원고), 응소(피고), 형사고소·고발 여부, 변호사 선임 여부, 선임할 변호사, 선임조건(착수금, 성공보수 등) 등
소송 중기	항소 여부, (조정예 회부된 경우) 조정안 수락 여부, 항소심에서 변호사 변경 여부, 항소심 변호사 선임 시 선임조건(착수금, 성공보수 등) 등
소송 말기	판결 확정 이후 후속 조치(판결 이행을 위한 상대방과의 협의, 강제집행 등) 등

다. 법원 허가, 대리권 수여심판을 구할 때 동의서 제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후원하기 위해 새롭게 대리권이 필요하거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별도로 대리권 수여 또는 허가 심판을 받아야 함. 법원에 허가심판청구를 할 때 미리 감독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해당 행위가 피후견인의 후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감독인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짐. 나아가 감독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감독인의 의견을 진술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신속한 심리에도 도움이 됨.

표 31 격리행위 허가심판청구 사건에 제출하는 감독인의 동의서 예시

<h2>동 의 서</h2>
사 건 2020느단12345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특정후견감독인 서울시 OO구
청 구 인 A (특정후견인)
사 건 본 인 B
<p>사건본인 B의 특정후견감독인 서울시 OO구는 특정후견인 A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기간 동안 사건본인을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2020. 4.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 서울시 OO구 대표자 구청장 000
서울가정법원 귀중

동 의 서

사 건 2020느단12345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특정후견감독인 서울시 OO구

청 구 인 A

(특정후견인)

사 건 본 인 B

사건본인 B의 특정후견감독인 서울시 OO구는 특정후견인 A가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하고, 이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동의합니다.

2020. 4.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

서울시 OO구

대표자 구청장 000

서울가정법원 귀중

동 의 서

사 권 2020년단12345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특정후견감독인 서울시 OO구

청 구 인 A

(특정후견인)

사 건 본 인 B

사건본인 B의 특정후견감독인 서울시 OO구는 특정후견인 A가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소유 별지 기재 예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사단법인 OO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0. 4.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

서울시 OO구

대표자 구청장 OO

서울가정법원 귀중

라. 후견감독인 동의 수령 방법

후견인은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감독인에게 그 사정을 알리고, 동의서를 요청해야 함. 감독인은 후견인의 요청이 있으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한 뒤 동의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함. 이 때 동의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후견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감독인이 보관하는 것이 좋음.

그림 40 은행 대출연장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된 후견감독인의 동의서(성년후견)

동 의 서

- 성년후견인 : (6)
- 피성년후견인 : (3)
- 성년후견감독인 : 사단법인 온을 (110121-0107922)

- 법률행위
피성년후견인 명의 우리은행 우리아파트론(일반)
가계일반대출 기간연장 행위
계좌번호:
금액 : 원
연장 후 기한 : 2018년8월16일

본 성년후견감독인 사단법인 온을은 성년후견인 이 상기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첨부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2017. 8. 10.

성년후견감독인 사단법인 온을
대표자

마. 후견감독인 동의 후 사무처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후견인이 그 사무를 수행한 경우, 감독인에게 그 경과를 보고하고, 후속조치에 대하여도 협의함이 바람직함.

2. 후견부수사건 실무

가. 후견부수사건의 종류

후견개시심판 이후 후견사무 수행이나 후견감독 사무와 관련하여 감독법원에서 처리되는 각종 사건들을 통칭하여 “후견부수사건”이라고 부름. 여기에는 후견인이 후견개시심판 때 부여받은 대리권 외에 다른 사무를 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대리권 범위 변경 청구나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처분명령 청구, 법원이 대리권을 부여하면서 그 행사를 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한 경우에 하는 허가 청구, 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후견인 변경 청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 등이 있음.

공공후견의 경우, 후견심판에서 후견인의 대리권이나 사무로 정해진 범위 외에, 추가로 지원할 사무나 별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무가 많지 않으므로, 부수사건청구가 필요한 경우 역시 많지 않음.

그러나 치매고령자의 경우 고령과 치매 악화 정도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 등에 입소하면서 종전 주거지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부수사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후견인과 감독인은 부수사건심판청구 실무를 알아둘 필요가 있음.

나. 대출행위

〈사례 1-28〉 후견인 A는 피후견인 B가 X와 Y에게 가지고 있는 채무 총 1,500만 원을 시급히 변제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B가 임대인 C에게 갖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하여 시민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기간 1년으로 하여 대출하였음.

공공후견의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금전을 빌릴 일이 많지는 않을 것임. 그러나 이미 피후견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일로 많은 병원비 또는 요양비가 발생하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때 피후견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대출이 어려울 것이지만, 임대차보증금 등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음.

통상 공공후견인은 대출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이므로, 감독인과의 협의 후 법원에 대출행위 허가 또는 대리권 추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음¹³⁶.

다. 부동산 처분행위

〈사례 5-2〉 피후견인 Q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가 4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이 주택은 6개월 전까지만도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었으나, 인근지역의 개발소문을 타고 가격이 급등하였음. 그러나 Q는 그밖에 다른 재산은 없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후견인 P는 일단 Q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통해 최대한 생활자금을 마련하고, 그마저도 다 소비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통해 공적부조를 받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이에 P는 1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안, 2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조금 저렴한 곳을 임차한 뒤,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방안, 3 현재 주택에 계속 지내면서 주택연금상품에 가입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먼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변변한 소득이 없는 Q는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¹³⁷에 걸려 대출액이 많이 나오지 않았음. 당장 1억 원은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그 돈으로 일정 기간 생활비에 충당할 수는 있지만,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음.

주택을 매각하는 것 역시 고민이 되었음. P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4군데를 돌아보았는데, 현재 4억 원은 거품이 있는 가격이고, 실제로는 그 가격에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음. P입장에서는 Q가 이 주택을 이용하여 여생을 살아야 하는데, 장기간의 전망 없이 당장 부동산 중개업소의 얘기만 듣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매매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음. 감독인 역시 매매는 조금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36 대출과 관련한 추가사항은 “IV., 2., 다., (3).” 참조(P. 180)

137 대출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020년 5월 현재 소득이 없는 개인의 경우, 대출원금 1억 원까지만 DTI가 적용되지 않음.

P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을 알게 되었음. 주택연금은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주택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대출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품임. 즉,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되, 그 대출금을 분할하여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임. P는 주택 시가를 2억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을 때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122만 원 정도인바, 이 정도면 Q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음. 더욱이 주택연금은 그 주택에서 Q가 계속 생활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음. 그러다가 Q가 병원비 등 큰 돈이 필요하게 되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매각대금에서 대출을 상환한 뒤 남은 돈을 이용하면 됨.

P는 감독인과 협의 하에 주택연금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1) 부동산 처분행위의 의의

부동산 처분행위란 부동산 매매, 전세권·저당권 설정 등 부동산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함. 피후견인이 저소득층인 경우, 보유하는 부동산이 없어 후견인이 부동산 처분행위를 대리하게 될 일은 많지 않을 것임. 그러나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친족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이처럼 피후견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후견인은 생활비·병원비 마련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그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수 있음. 사례에서와 같이 부동산 담보대출, 매매, 주택연금 가입 모두 부동산 처분에 해당함.

(2) 부동산 매매

피후견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당장 큰 돈이 필요한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음. 이때 후견인은 적절한 가격에 부동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고, 시세를 확인해야 함.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매매시점의 일반적인 시세에 맞게는 매각해야 할 것이기 때문임.

일단 대략적인 시세 조사가 마쳐지면 법원에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심판을 청구해

야 함. 이 때 청구서에는 1 대출 등 다른 방법이 아닌 매각을 하려는 이유, 2 현재 시세(KB 부동산시세,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 첨부), 3 예상 매매가격, ④ 매각대금의 사용 및 보관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함. 특히, 부동산 매각 사유와 매매대금의 사용 및 보관 계획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함.

표 34 부동산 매각허가심판청구서 예시

심 판 청 구

청 구 인 P (주민등록번호 :)
 (특정후견인) 주소 :
 연락처 : , 이메일 :

사건본인 Q (주민등록번호 :)
 (피특정후견인)주소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 이메일 :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피특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서울 00구 00동 123-2 현대아파트 1동 405호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청구인은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사건본인(피특정후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 현황

사건본인은 현재 서울 OO구 OO동 123-2 현대아파트 1동 4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합니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 등기부등본 참조).

2. 사건본인의 현금자산

사건본인은 2020. 4. 30. 현재 현금자산을 약 65만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 사건본인 잔고증명서(2020.4.30.기준) 참조].

3. 사건본인 정기지출

그런데 사건본인은 매월 생활비, 병원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등으로 월 12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바, 현재 남은 현금자산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4. 부동산 매각 필요성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 이외에는 사건본인의 생활을 감당할 자력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알아보았으나,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3곳에 방문하여 시세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약 2억 5,000만 원 정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부동산 시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갑 제3호증 - KB부동산시세 캡처본 참조).

5. 이 사건 부동산 매각 후 사건본인 주거지 마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보증금 1억 원 정도의 전세임대차로 사건본인이 머무를 다른 주거지를 찾아볼 예정입니다.

6. 나머지 매매대금의 보관 및 사용 계획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제세공과금 및 사건본인이 머무를 주거지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사건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해 둘 예정입니다. 청구인은 이 돈을 사건본인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비, 병원비, 여가생활을 위한 비용 등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7. 결론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 시세인 2억 5,000만 원 정도로 매각하려고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1. 갑 제1호증 - 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 사건본인 잔고증명서(2020.4.30.기준)
1. 갑 제3호증 - KB부동산시세 캡처본

첨부서류

위 각 입증자료

2020. 5. 7.

청구인 P

서울가정법원 귀중

주 문

1. 청구인(· !후견인)이 사건본인(피· 후견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 하는 행위를 허가한다.
2. 청구인(· 후견인)은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사건본인(피· 후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 여야 한다.
3. 청구인(· 후견인)은 제1, 2항의 이행결과와 매각대금 사용 및 보관 내역을 제1항 기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원(· 후견감독 사건)에 보고하되, 매각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 결정 확정 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2개월마다 그 진행 상황을 위 법원에 보고하 여야 한다.

(3)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담보가치에 맞는 금액을 대출받는 것을 의미함. 부동산 대출의 경우 정부대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고, 피후견인이 소유하는 주택이 위치하는 지역, 피후견인의 소득 정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액수에 큰 차이가 나는 편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허가심판을 청구할 경우, 병원비 마련, 생활비 마련 등 대출이 필요한 사유, 그 사용 및 보관 방법을 충분히 소명해야 함.

심 판 청 구

청 구 인 P (주민등록번호 :)

(특정후견인) 주소 :

연락처 : , 이메일 :

사건본인 Q (주민등록번호 :)

(피특정후견인)주소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 이메일 :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피특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시민은행과 사이에, 서울 00구 00동 123-2 현대아파트 1동 405호에 관하여, 채무자 사건본인(피특정후견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시민은행,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시민은행으로부터 3억 원 한도 내에서 금원을 대출받는 것을 허가한다.

2. 청구인은 제1항에 의한 대출금을 사건본인(피특정후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 현황

사건본인은 현재 서울 00구 00동 123-2 현대아파트 1동 4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합니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 등기부등본 참조).

2. 사건본인의 현금자산

사건본인은 2020. 4. 30. 현재 현금자산을 약 65만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 사건본인 잔고증명서(2020.4.30.기준) 참조].

3. 사건본인 정기지출

그런데 사건본인은 매월 생활비, 병원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등으로 월 12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바, 현재 남은 현금자산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4. 부동산 담보 대출 필요성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예금계좌를 주로 관리하는 시민은행 00동지점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다행이도, 시민은행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대출시 이자는 3%이고, 6개월마다 변동된다고 합니다.

5. 대출금의 사용 및 보관 계획

청구인은 대출금 중 인지대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사건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해 둘 예정입니다. 청구인은 이 돈을 사건본인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비, 병원비, 여가생활을 위한 비용 등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6. 결론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시민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1. 갑 제1호증 - 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 사건본인 잔고증명서(2020.4.30.기준)

첨부서류

1. 위 각 입증자료

2020. 5. 7.

청구인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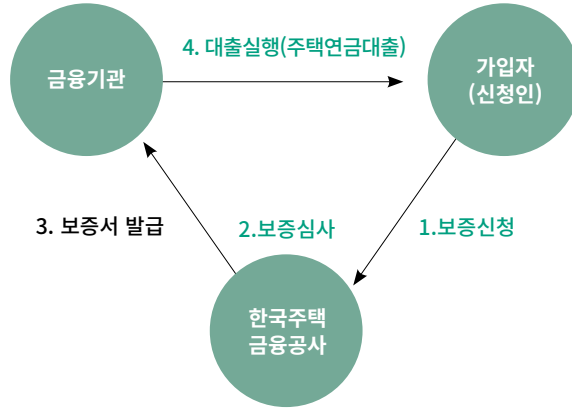
서울가정법원 귀중

그림 42 부동산담보대출 허가 심판 주문례

1. 청구인(피후견인)이 사건본인(피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사건본인(피 피후견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원의 한도 내에서 금원을 대출받는 것을 허가한다.

(4) 주택연금

그림 43 주택연금 개요도



주택연금은 1 주택 소유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돈을 대출받
 되, 그 대출금을 분할하여 매월 일정액을 받고,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 소유자의 금융
 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하며, 3 주택소유자는 그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근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소
 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수령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상품으로서 앞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 이용기간 동안 그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고, 다
 른 사람에게 그 주택을 임대할 수 없으며, 다른 담보권 설정 등 권리제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는 점에서 피후견인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나, 그만큼 그 주택을 이용하여 안
 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장점임.

또한,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피후견인이 요양병원,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거나,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라면 주택연금은 중도해지하고, 그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그 동안 은행
 에서 수령한 연금액(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음.

심 판 청 구

청 구 인 P (주민등록번호 :)

(특정후견인) 주소 :

연락처 : , 이메일 :

사건본인 Q (주민등록번호 :)

(피특정후견인)주소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 이메일 :

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피특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서울 OO구 OO동 123-2 현대아파트 1동 405호에 대하여 시민은행과 사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계약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이에 위 계약에 대한 보증계약을 각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청구인은 제1항 기재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주택연금액을 사건본인(피특정후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 현황
사건본인은 현재 서울 OO구 OO동 123-2 현대아파트 1동 405호(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고만 합니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 등기부등본 참조).

2. 사건본인의 현금자산

사건본인은 2020. 4. 30. 현재 현금자산을 약 65만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 사건본인 잔고증명서(2020.4.30.기준) 참조].

3. 사건본인 정기지출

그런데 사건본인은 매월 생활비, 병원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등으로 월 12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바, 현재 남은 현금자산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4. 주택연금 가입 필요성

가. 담보대출, 매각의 부적절함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매각도 검토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사건본인의 애착이 큰 편이기 때문에 사건본인이 마음에 들어할 다른 주거지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지난 6개월간 급등하여 4억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다시 2억 5,000만 원 선으로 급락하였는바, 부동산을 매각하기에는 적기가 아니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나. 주택연금 가입 상담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매월 일정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며,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연금 가입을 검토하였습니다. 주택연금은 사건본인이 익숙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고, 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시민은행에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이 사건 주택으로 사건본인은 사망할 때까지 월 122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바, 주택연금 가입만으로도 사건본인의 정기적인 지출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연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자 료

1. 갑 제1호증 - 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 사건본인 잔고증명서(2020.4.30.기준)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자료

2020. 5. 7.

청구인 P

서울가정법원 귀중

라. 소송행위

〈사례 1-29〉 피후견인 B는 2019. 5. 8. 임대인 C와 서울 ○○동 원룸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20.~2020.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원룸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 위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음.

임대인 C는 2020. 1. 10. 피후견인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음. 그런데 피후견인 B가 2020. 2. 20. 이후에도 위 원룸에서 나가지 않자, 임대인 C는 2020. 4. 10. 점심 경 마스터키로 피후견인 B가 살고 있는 원룸에 들어와 피후견인 B의 물품 일부를 건물 밖으로 내놓았음. 피후견인 B는 그 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현장을 확인하고 화를 참지 못한 채 임대인 C가 살고 있는 5층으로 올라가 마침 밖으로 나오던 임대인 C를 지팡이로 수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힘. 한편, 2020. 4. 10. 당시 임대인 C가 소유하고 있는 위 원룸 건물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음.

대부분의 후견인은 법률비전문가일 것이기 때문에 피후견인에게 소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데 부담이 될 것임. 그러나 후견인은 소송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뒤,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그 소송을 진행해 줄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받으면 됨. 법률 비전문가인 후견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함.

(1) 소송행위와 관련한 기본 이론 및 심판청구사례

후견인은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야 함. 특히, 소송행위가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후견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소송행위 허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후견감독 재판부에 연락하여 급박한 사정을 알리며, 신속한 허가를 요청하여야 함.

표 37 급박하게 소송행위가 필요한 대표적 사례

<p>민사</p>	<p>피후견인이 미처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피후견인이 소장은 받아보았으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된 경우 피후견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1심에서 패소하여 즉시 항소가 필요한 경우</p>
<p>형사</p>	<p>피후견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p>

그러므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대해 소송행위가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소송행위 허가 심판청구를 하여 소송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뒤, 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함¹³⁸.

만약,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송행위 허가 심판청구를 기다리기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라면 후견감독인과 협의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곧바로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¹³⁹.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은 그 소송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고, 그 범위에서 후견인의 권한은 정지됨¹⁴⁰.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 및 후견감독 재판부에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해당 소송에 대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실은 보고해야 함.

138 이하 (2)항 참조(P. 199)

139 민사소송법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 ②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③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 ④ 특별대리인의 선임·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⑤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140 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제1항, 제62조 제3항

2. 청구인은 제1항의 이행결과와 해당 소송이 종료된 경우 그 소송결과를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 법원 2020후감0000 성년후견감독사건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임대차계약 종료 및 임차권등기

사건본인은 임대인 김을수로부터 서울 OO구 000동 1층 2호(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고만 합니다)를 임대차기간 2018. 4. 5.부터 2020. 4. 4.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에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갑 제1호증 - 임대차계약서 참조).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즈음 사건본인은 OO요양원에 입소하였고, 청구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요양원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양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만 했는데,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고, 2020. 5. 2. 임차권등기가 마쳐졌습니다(갑 제2호증 - 이 사건 주택 등기부등본 참조).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을 요양원으로 이전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있던 사건본인의 짐을 정리하였습니다.

2. 임대인 김을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거부

이 사건 주택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에도 청구인은 여러 차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고, 2020. 5. 10., 5. 12., 5. 20., 세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 기발송 내용증명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고, 최근에는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입니다.

3.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필요성

청구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동원 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4. 결론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자 료

1. 갑 제1호증 -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 이 사건 주택 등기부등본
2. 갑 제3호증 - 기발송 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자료

2020. 5. 7.

청구인 G

서울가정법원 귀증

(별지) 허가받고자 하는 소송행위

서울 00구 000동 1층 2호에 관하여 임대인 김을수를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위 소송과 관련한 보전소송의 제기(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금의 공탁 또는 그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포함), 지급명령신청, 반소 항소 상고의 제기 및 취하, 응소행위,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소의 취하, 복대리인의 선임, 변제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 공탁 대리 및 공탁물과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담보취소신청, 위 소송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 일체의 강제집행 신청 및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배당금 수령, 배당표 확인,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송 제기 등)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등 끝.

표 40 소송행위 허가(형사) 심판청구서 예시

심 판 청 구¹⁴³

청 구 인 G (주민등록번호 :)

(특정후견인) 주소 :

연락처 : , 이메일 :

사건본인 H (주민등록번호 :)

(피특정후견인)주소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 이메일 :

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143 사례 2-4와 연결됨.

청 구 취 지

1. 청구인(특정후견인)이 사건본인(피특정후견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청구인은 제1항의 이행결과와 해당 소송이 종료된 경우 그 소송결과를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 법원 2020후감0000 성년후견감독사건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의 재산 유출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중 매월 20만 원을 용돈으로 사건본인에게 지급하고 있고, 이 돈은 사건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 4월경부터 사건본인은 청구인이 20만 원을 보내주자마자 돈을 다 썼다면서 돈을 더 보내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이웃들에게 수소문을 해보았고,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김병을이 사건본인의 집에 들어와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 김병을의 주장

이에 청구인은 김병을을 찾아갔고, 사건본인의 돈을 가져간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김병을은 사건본인이 자신에게 돈을 주길래 받아서 먹을 것을 사서 나누어 먹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자세한 내막을 확인할 길이 없어 앞으로는 사건본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말라고 통보하였습니다.

3. 반복되는 김병을의 범행

그 이후에도 사건본인은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했고, 이웃들에게 확인한 결과, 여전히 김병을이 사건본인을 찾아와 돈을 빼앗아 가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4. 김병을에 대한 형사고소 필요성

청구인이 추산하기에 2020. 4.경부터 현재까지 약 2달간 김병을이 가져간 사건본인의 돈은 100만 원에 이릅니다(갑 제1호증 - 계좌거래내역 참조). 더욱이 김병을은 청구인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를 묵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청구인은 김병을을 준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건본인이 같은 피해를 반복하여 입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5. 김병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의 필요성

전술한 것과 같이 사건본인은 김병을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김병을의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바,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6. 결론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김병을을 형사고소하고, 재산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자 료

1. 갑 제1호증 - 계좌거래내역

첨부서류

1. 위 각 입증자료

2020. 5. 7.

청구인 G

서울가정법원 귀중

(별지) 허가받고자 하는 소송행위

1. 김병을에 대한 형사고소, 고소의 취하, 형사조정, 합의
2. 김병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소송의 제기, 보전소송의 제기(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금의 공탁 또는 그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포함), 지급명령신청, 반소 항소 상고의 제기 및 취하, 응소행위,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소의 취하, 복대리인의 선임, 변제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 공탁 대리 및 공탁물과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담보취소신청, 위 소송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 일체의 강제집행 신청 및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배당금 수령, 배당표 확인,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송 제기 등)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등 끝.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사 건 2020가단134567 건물인도
신청인 A(500415-1234567)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전화번호 : 010-1234-5678

원 고 C
피 고 B

신청취지

신청의 C와 신청의 B 사이의 이 법원 2020가단134567 건물인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 A(주민등록번호 : 500415-1234567,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전화번호 : 010-1234-5678)를 신청의 B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의 C, B와의 소송의 존재

신청의 C는 2020. 5. X. 귀원 2020가단134567호로 신청의 B를 상대로 서울 ○○동 원룸 301호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6. X.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첨부서류 - 나의사건검색 화면 캡처).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은 신청의 B가 치매로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청의 C가 마치 B의 가족인 것처럼 위장하여 소장을 송달받아 B 또는 B의 후견인인 신청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2. 신청의 B의 의사결정능력 부족 및 법정대리인 부존재

그런데 신청의 B는 중등도 치매로 인하여 서울가정법원 2019년 단000호로 특정후견 개시심판이 있었고, 후견인으로 신청인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첨부서류 - 신청의 B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참조). 그러나 신청인은 위 소송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리 신청의 B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3. 소송절차 지연됨에 따른 손해 발생 가능성

물론 신청인은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서울가정법원 담당 재판부로부터 소송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후견감독재판부로부터 소송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기 위해서는 별건의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그 심리에 시간이 1개월 가까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술한 것과 같이 위 사건에 대하여 신청의 C의 방해로 인해 조만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바, 신청인이 후견감독재판부로부터 소송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는 것을 기다릴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가정법원의 심판을 기다리다가 판결이 선고되어 신청의 B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제1항, 제62조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신청의 B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적절한 대응을 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나의사건검색 캡처화면

2. 신청의 B 후견등기사항증명서

2020. 5. .

신청인 A

OO지방법원 귀중

(2)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가) 법률전문가 조력 원칙

전술한 것과 같이 후견인은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으면, 피후견인을 위해 소송을 직접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함. 이 때 피후견인이 변호사 보수를 감당할 재산이 있다면, 변호사를 물색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임.

그러나 변호사 보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의 경우, 법률구조공단¹⁴⁴,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¹⁴⁵ 등 법률구조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그림 44 법률구조공단 상담 안내 화면

전화상담 안내



※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으로 서비스 제공

사이버상담 안내



※ 국내거주국민 상담: 하루 100건, 신청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답변(공휴일제외)

※ 재외동포 상담: 대상사건은 본국(대한민국) 사건으로 한정

144 <http://www.klac.or.kr/>, 132

145 <http://www.legalaid.or.kr/main/main.php>, 02-3476-6515

(나) 그 밖에 각종 소송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그 밖에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¹⁴⁶”,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홀로소송¹⁴⁷” 등에서 각종 소송에 대한 정보 및 법률서식들을 참고할 수 있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에 앞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때 참고하면 유용함.

그림 45 법률지원센터 화면



그림 46 나홀로소송 사이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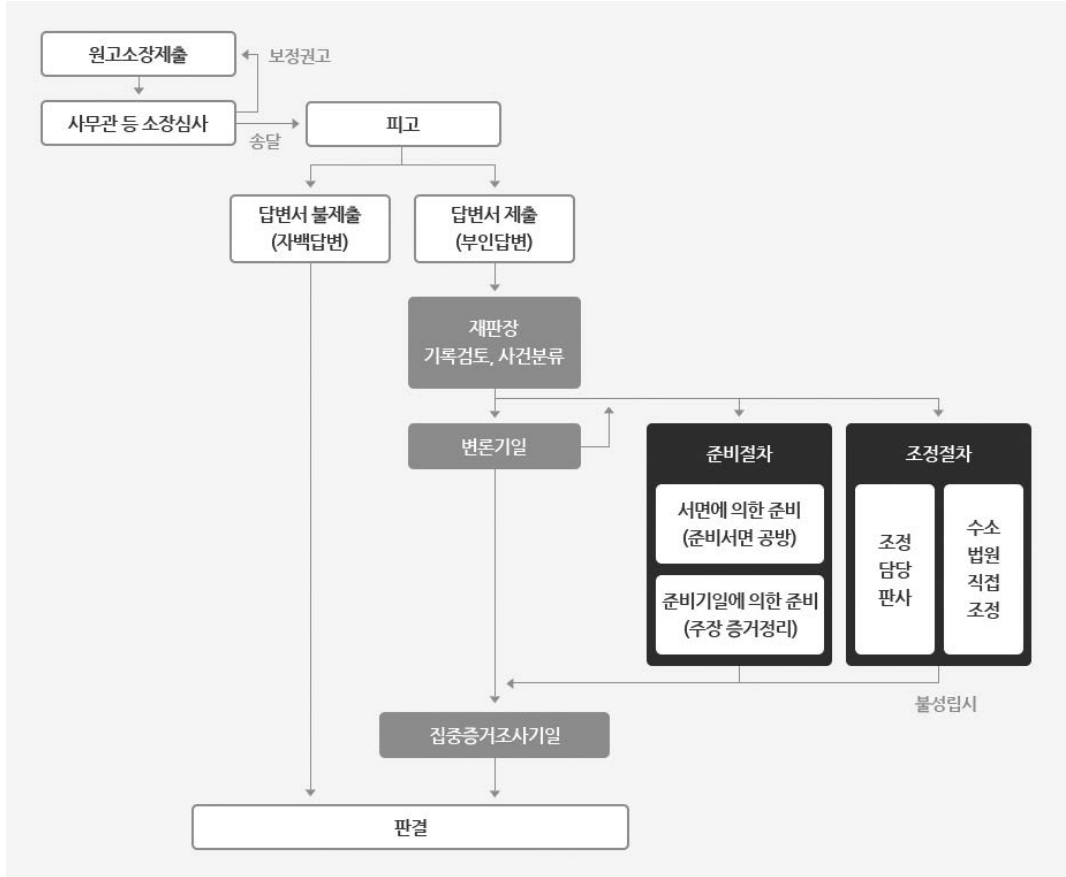
146 <https://support.klac.or.kr>, 각종 법률서식 참고 가능

147 <https://pro-se.court.go.kr>

(3) 민사소송

(가) 민사소송 절차

그림 47 민사소송 절차 개요도(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피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밝히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여야 함.

소 장

- 원 고** 〇〇〇 (주민등록번호)
 〇〇시 〇〇구 〇〇길 〇〇(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피 고** ◇◇◇ (주민등록번호)
 〇〇시 〇〇구 〇〇길 〇〇(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20〇〇. 〇. 〇. 피고 소유의 〇〇시 〇〇구 〇길 〇〇 소재 〇〇아파트 203동 401호를 임차보증금 68,000,000원, 임대차기간 20〇〇. 〇. 〇.부터

2년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임대차계약서 |
| 1. 갑 제2호증 | 영수증 |
| 1. 갑 제3호증 | 통고서(내용증명우편)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1통 |
| 1. 소장부분 | 1통 |
| 1. 송달료납부서 | 1통 |

2000. 0. 0.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원고가 접수한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심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원고에게 이를 보정하도록 함. 원고가 해당 부분을 보정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의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함. 만일 원고가 이를 보정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대로 소송을 끝낼 수 있음.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소장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밝히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출처: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답 변 서

사 건 2000가단0000 건물인도

원 고 000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시 00구 00길 00 지상 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의 소유

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중 2층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인도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원이 있습니다.

즉, 피고는 2000. 0. 0. 소외 ○○○와의 사이에 소외인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 중 2층 전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500만원으로, 임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0. 0. 00. 보증금 4,5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3. 임대인 지위 승계

가.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0. 00. 0. 접수 제12345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인이고 원고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임차주택 양수인으로 위 소외인이 가지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 2층을 점유할 수 있으므로 무단점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 0. 0.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피고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내용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인 경우 법원은 원고의 소장 내용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음.

피고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 답변서 부분을 다시 원고에게 송달하고, 일시를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를 법정에서 출석하게 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는 '변론기일'을 열게 됨. 그 이후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공격과 방어가 진행되고, 법원은 통상 약 3~4주 간격으로 몇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원고와 피고가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고 보이는 경우 더 이상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그 일시에 판결을 선고함. 여기까지가 '제1심' 재판 절차임.

제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음. 항소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제2심' 재판이 제1심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됨. 제2심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는 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그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음. 상고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제3심' 재판이 대법원에서 진행되는데, 제3심은 보통 서면 제출로 진행됨.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끝나게 됨.

(나) 피후견인이 원고인 경우

사례1-29에서 피후견인 B는 임대인 C를 상대로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 C가 피후견인 B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이때 피후견인 B는 원고로서 소송을 통하여 법원이 피고에게 어떠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하고 피후견인 B가 바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소장 과 준비서면에서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 주장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해당 부분에 함께 적어 법원이 원고가 밝히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도 해당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는 방식 등의 적절한 증거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피후견인 B가 이러한 방법으로 원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해당 판결이 임대인 C가 피후견인 B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임대인 C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힘들게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그 판결대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임대인 C의 재산을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임대인 C 소유의 원룸 건물에 대한 가압류 결정 등 ‘보전처분’을 받는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음.

(다) 피후견인이 피고인 경우

사례1-29에서 임대인 C는 피후견인 B를 상대로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후견인 B가 원룸 301호를 반환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이때 피후견인 B는 피고로서 기본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원고일 경우와 같은 정도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피고의 입장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다만 피고의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오히려 피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후견인 B로서는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해당 소송에 임하여야 할 것임.

(라) 강제집행 절차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그 판결내용에 따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를 국가공권력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가 필요함.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그림 48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도(출처 :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 경매절차 - 강제경매절차 중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통상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강제경매는 크게 압류, 매각, 배당의 순서로 진행됨.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신청이 적법하면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과 함께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며, 직권으로 그 결정 정보를 채무자에게 송달함. 채무자에게 그 결정 정보가 송달되거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마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함.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후 법원은 매각방법을 정하고, 매각기일을 거쳐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며,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 등에게 통지하며,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함.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할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에게 배당순위에 따라 변제하는 배당절차를 진행함.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반영하여 배당표를 확정하는데, 채무자와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음. 배당표가 확정되면 법원은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

사례1-29에서 피후견인 B는 해당 원룸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음. 피후견인 B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에 해당하기 때문임.

구체적인 사례에서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거나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견인의 입장에서는 피후견인이 적절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음.

2)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통상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크게 압류, 현금화, 만족(변제)의 순서로 실시됨.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하여 채권을 압류한 후, 그 현금화를 위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발령하여 현금화 함. 이후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없는 경우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되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절차가 실시됨.

(마) 조정

민사조정절차는 조정을 담당하는 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분쟁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임.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음. 후자의 경우 당사자가 반드시 조정에 응할 필요는 없음.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는 경우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사자들은 위 결정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시 소송절차로 돌아가

고, 당사자들이 모두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바) 변호사와의 소통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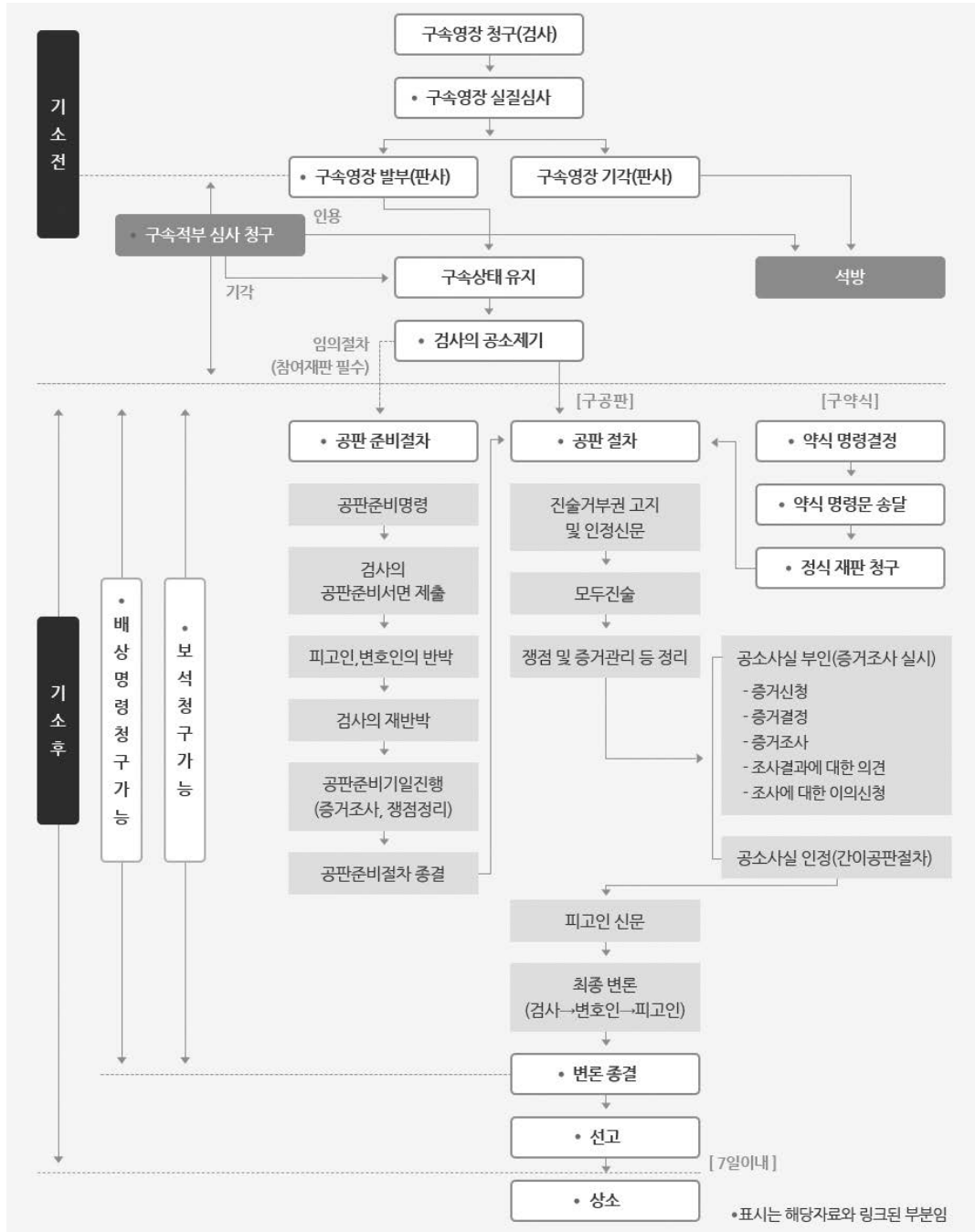
판결의 방향은 대부분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길 것으로 기대한 소송이라도 재판 과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음. 재판부 또는 법률가가 사건을 보는 시선이 일반인이 사건을 보는 시선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임. 따라서 소송절차에서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함. 변호사와 만나기 전 당사자들의 관계,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두면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음.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전달할 때에는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알릴 필요가 있음. 변호사가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 측에서 해당 사정을 주장하는 경우 대응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4) 형사소송

(가) 형사소송 절차

그림 49 형사소송 절차 개요도(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됨.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함.

[출처: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고 소 장

고 소 인 ○ ○ ○

○○도 ○○시 ○○길 ○○번지

피고소인 △ △ △

○○도 ○○시 ○○길 ○○번지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직장문제로 서울에서 20 ○○. ○.경 현재 살고 있는 ○○도 ○○시 ○○길 ○○번지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온 주택은 지은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주택으로 대문이나 울타리가 콘크리트나 벽돌로 사람의 키만큼 높이 쌓은 담이 아니고 밖에서 울타리 안을 훤히 볼 수 있게 된 철근식 울타리이며 대문도 늘 개방되어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사온 지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옆집에 사는 중년의 피고소인은 열려진 대문으로 수시로 들어와 창문을 열고 거실을 들여다보고, 가끔은 고소인과 눈이 마주쳐 고소인이 놀라기도 했으며 아이들과 아내는 무서워 다시 이사를 가자고 합니다. 피고소인은 심지어 밤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수차례 주의를 주었는데도 상대방은 이를 그만두지 않아 이 건 고소를 하게 되었으니 의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피고소인은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않고 전에도 그런 사실이 있다는 반장의 말이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참고인으로 반장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 0. 0.

위 고소인 ○ ○ ○ (인)

○○경찰서장(또는○○지방검찰청검사장) 귀중

수사기관은 보통 먼저 ‘고소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듣고, 이후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 진술을 듣는 등 조사를 진행하게 됨. 보통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개시된 이후 검사가 경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함.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구속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이후 수사결과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하여 공소를 제기(‘기소’)하면 ‘공판’ 절차가 개시됨.

처음으로 열리는 ‘공판기일’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이 이름과 주소 등을 물어 피고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며,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음. 이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으며, 그 결과에 따라 3~4주 간격으로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 등이 진행됨.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고, 피고인 측에서 최종의 의견을 진술하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함.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함. 형사소송에서도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는데,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나) 피후견인이 피의자/피고인인 경우

사례1-29에서 임대인 C는 피후견인 B를 폭행죄 또는 폭행치상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음.

1) 수사단계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조서 등은 수사과정은 물론이고 공판과정에서도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에 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조사자는 질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음. 선불리 진술을 하다가 불리한 진술 또는 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거나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어떻게 진술하여야 할지 모르는 경우 진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조사를 마치면 조사자가 조서를 읽어 보고 서명·날인하도록 함. 이때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게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이러한 부분을 잘 확인하여 수정하여야 함.

피의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가족 등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므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위와 같은 동석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2) 공판단계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등 일정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

후견인은 피후견인과 변호인 사이에서 신속하고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음. 변호인으로부터 사건 진행에 필요한 사실관계 및 자료들을

확인하고 이를 준비하여 제공하며, 공판의 진행 정도에 따라 변호인이 요청하는 사항들에 협조하고, 한편으로 수시로 변호인에게 향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피후견인이 구속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도 원칙적으로 10일이지만,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구속기간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음.

구속된 피의자 본인,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 일정한 사람은 법원에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으나, 상소심(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음.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 일정한 사람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며, 위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음.

법무부 교정본부 인터넷 홈페이지¹⁴⁸를 통하여 당일 또는 예약 접수를 통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접견할 수 있음. 예약 접수를 하는 경우 접견순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예약한 시간에 바로 접견이 가능함.

148 <http://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114/subview.do>

그림 50 접견예약 안내화면

접견예약제

접견예약제도는 전화(1363),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을 통하여 접견예약을 하는 경우 미리 수용자를 접견실에 대기하게 하고, 민원인은 신분확인 후 접견순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접견이 가능하므로 접견 대기시간 단축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민원인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예약자 범위
가족 또는 민원인도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요령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관계 등을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됨 (신청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교정민원콜센터 1363 이용 시 지인등록 후 이용 가능 (지인등록방법: 가까운 교정기관 방문, 신분증 필수)
3. 방문예약접수시간
→ 접견 전일부터 10일 전 까지(공휴일은 제외)
→ 접수시간: 일반접견 접수시간과 동일
4. 예약신청시 유의사항
→ 예약하신 접견 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 접견 예약 후 예약된 접견시간에 접견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1개월 동안 접견예약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견당일 예약취소는 늦어도 예약시간 30분전까지는 하셔야 하며, 예약 불이행이란 예약을 하고 지키지 않음을 말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무죄만을 주장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또는 그 이후부터 판결 선고 전 까지 기간 중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 사실 및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만일 피해자 측에서 연락을 피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2부, 공탁통지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

(다) 피후견인이 피해자인 경우

사례1-29에서 피후견인 B는 임대인 C를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음.

1) 수사단계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보, 수사진행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음.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등 피후견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

2) 공판단계

범죄피해자는 검사에게 요청하여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처분 결과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재판부에 신청하여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음.

범죄피해자는 재판부에 신청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3) 합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요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합의에 응할 필요는 없음. 다만 가해자 측에서 상당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적절할 수 있기 때문임.

4) 피해자로서 검찰과의 소통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에서 확인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피해상황 등 변동이 있는 부분을 지체없이 검찰에 알릴 필요가 있음. 검찰에서 연락이 없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검찰에 연락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마.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격리행위 허가

(1) 격리행위와 통상적인 입원행위와의 구분 필요성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경우, 병원에 입원하는 행위가 격리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종종 문제 됨. 신상결정권한을 보유하는 후견인이더라도 격리행위의 경우에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임¹⁴⁹.

149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그에 반해 공공후견인은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격리행위뿐만 아니라 병원 입원에 대한 동의도 할 수 없으므로, 격리행위와 그렇지 않은 입원행위를 구분하는 실익이 많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격리행위는 피후견인의 의사에 반해 그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피후견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공후견인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극히 신중해야 할 것임. 특히, 특정후견의 경우 피특정후견인의 의사에 반하여 격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법률상 해석됨. 나아가 법원 역시 피후견인을 격리하는 것을 허가할 것인지 심리할 때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므로 공공후견에서도 격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2) 격리행위의 의의

격리라 함은 공간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함. 공간 자체가 개방되어 있더라도 피후견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이에 해당¹⁵⁰.

즉, 종합병원 응급실과 같은 곳은 공간이 개방되어 있고, 응급상황만 해결되면 피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원할 수 있는바, 그곳에 입원한다고 하여 격리행위라고 볼 수 없음. 마찬가지로 종합병원의 일반병실도 피후견인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므로, 입원행위는 격리가 아님.

그러나 종합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은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는 관계자의 도움없이 누구든 자유로운 출입이 어려우므로, 그곳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격리행위라고 보아야 함.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각 입원, 입소행위가 격리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비교한 것은 아래와 같음.

150 김형석, "피후견인의 신상결정과 그 대항", 가족법연구 제28권 제2호(2014), p.255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 구 취 지

1. 청구인(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피한정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XX정신병원[병원장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에 입원하게 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청구인(한정후견인)은 제1항의 이행결과와 사건본인(피한정후견인)의 치료상황을 매월 한정후견감독인에게 보고하고, 한정후견감독인은 위 상황을 매 6개월마다 이 법원 2020후감0000 한정후견감독(기본) 사건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 XX정신병원 응급입원

사건본인은 2020. 5. . 행인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고, 행인의 신고로 광진경찰서 담당 형사가 출동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당일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를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갑 제1호증 - 응급입원 관련 자료).

청구인은 그 즉시 사건본인이 응급입원한 XX정신병원에 방문하였고, 정신과 담당의는 사건본인이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어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으니 동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진단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 담당의사 진단서 참조).

2. 사건본인 의사 확인

청구인이 보기에도 일단 사건본인의 상태가 완화될 때까지 단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에게 2주 정도만 치료를 위해 병원에 머무르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사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당장 퇴원하고,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3. 후견감독인과의 논의

XX정신병원 담당의사는 사건본인이 현재 치료를 거부하는 것도 치매로 인한 피해망상 등으로 인한 것이고,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감독인에게도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감독인 역시 일단 담당 의사의 진단대로 입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갑 제3호증 - 감독인 의견서 참조).

4.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진행 필요

사건본인이 입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으로서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결론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치료 목적으로 단기간 XX정신병원에 입원하게 하려고 하니, 이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자 료

1. 갑 제1호증 - 응급입원 관련 자료
1. 갑 제2호증 - 담당의사 진단서
1. 갑 제3호증 - 감독인 의견서

첨부서류

1. 위 각 입증자료

2020. 5. 7.

청구인 P

서울가정법원 귀중

그림 51 격리행위 허가심판문 주문례

주 문

1. 청구인(피후견인)이 사건본인(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2019. 4. 15.까지 서울 [] 병원에 입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기간을 초과하여 사건본인(피후견인)을 병원에 입원, 격리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구인(피후견인)은 이 법원에 별도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청구인(피후견인)은 제1항의 이행결과를 이행 즉시 이 법원 2017년 [] 후견감독사건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치료, 입원 등의 상황, 청구인(피후견인)이 사건본인(피후견인)을 방문한 결과를 2개월마다 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요양병원 입원

피후견인의 치매 정도 및 건강악화가 심해져 더이상 집에서 지내는 것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 입소할 수밖에 없음. 특히, 피후견인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되어 요양원에도 입소하기 어렵고, 당장 의료적 돌봄이 필요하다면 요양병원 입소를 검토해야 할 것임.

요양병원은 통상 외부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피후견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며,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억제대 등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격리시설에 해당함.

(5) 요양원 입소

일반적으로 요양원은 격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요양원 중 종사자들이 소지하는 카드를 접촉해야만 엘리베이터가 작동되는 곳, 각 층별 출입구를 폐쇄해두고 종사자들만이 개폐할 수 있도록 해둔 곳 등은 피후견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곳에 해당함. 그러므로 그런 요양원에 피후견인을 입소할 경우 이는 격리행위로 보아야 함.

(6) 정신의료기관(종합병원 폐쇄병동 포함) 입원

(가) 정신의료기관 입원과 관련한 절차를 알아야 할 필요성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 외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절차를 거쳐야 함.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바¹⁵¹, 여기에는 치매환자도 포함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나아가 현재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해 있는 치매가 있는 고령자가 공공후견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때 피후견인의 입원 연장 등을 결정할 때에도 법원 허가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함. 나아가 후견인은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므로¹⁵², 동 법에 따른 역할을 수행해야 함.

피후견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후견인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피후견인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함.

151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

152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나) 정신건강복지법상 주요 절차 소개 및 후견인의 역할

1) 동의입원

피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할 수 있음(동의입원)¹⁵³. 이 때 피후견인이 퇴원신청을 한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그를 퇴원시켜야 함. 단,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없는 경우 72시간 동안 퇴원거부를 할 수 있고, 그 시간 내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으로 전환하여 입원을 지속할 수 있음¹⁵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거부를 할 경우 피후견인과 후견인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퇴원 등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¹⁵⁵.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피후견인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후견인을 포함한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이 정신의료기관 등에 피후견인의 입원을 신청할 수 있음(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¹⁵⁶.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정신과 의사')가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진단해야 하고¹⁵⁷, 이를 위해 2주간 피후견인을 입원시킬 수 있음¹⁵⁸.

그 결과 피후견인에게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피후견인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하게 할 수 있음¹⁵⁹. 이 때의 입원기간은 최초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후 3개월 이내로 입원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원이 필요할 경우 6개월 이내

153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154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2항

155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3항

156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157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 전단

158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3항

159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4항

의 기간을 정해 연장할 수 있음¹⁶⁰. 입원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의 일치된 진단과 후견인을 포함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함¹⁶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피후견인 또는 후견인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 지체없이 피후견인을 퇴원시켜야 함. 이 때 지체없이 퇴원사실을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피후견인이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퇴원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피후견인과 보호의무자에게 거부사실 및 사유와 정신건강복지법 제 55조에 따른 퇴원 등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¹⁶².

3)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자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경찰관은 위와 같은 자를 발견하였을 때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위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 그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그에 대한 진단을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함¹⁶³. 정신과전문의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자체장은 그 사람을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할 수 있음. 이 때 지자체장은 후견인을 포함한 보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입원사유, 기간,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¹⁶⁴.

그를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에게 그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함. 그 결과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은 그 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음¹⁶⁵. 그 기간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와 동일함¹⁶⁶. 이 때 지자체장

160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5항

161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6항

162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9항, 제10항

163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1항 내지 제3항

164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4항, 제5항

165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6항, 제7항

166 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

은 그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기간, 퇴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절차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4) 퇴원 등 처우개선 심사청구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는 지자체장에게 퇴원, 퇴소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¹⁶⁷. 이 때 지자체장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퇴원 또는 임시퇴원 명령,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 3개월 이내 재심사,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전환, 외래치료지원, 입원등 기간 연장 결정, 계속 입원 등 결정 중 어느 하나의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함¹⁶⁸.

환자 본인, 보호의무자는 위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¹⁶⁹.

5)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로서 피후견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신의료기관등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특히,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하는 것은 치매 또는 다른 정신질환의 상태가 심각하여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에 국한되어야 할 것인바, 증상이 완화되어 그런 위험이 줄어들게 되면 일단 퇴원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지,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는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후견인의 권익을 대변해야 함.

바. 부수사건 처리 후 보고

부수사건 심판문을 보면 대부분 해당 사무가 종료되면 감독인 또는 감독재판부에 그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후견인은 그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사무가 종료되면 이를

167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 제1항

168 정신건강복지법 제56조, 제57조, 제59조

169 정신건강복지법 제60조

간략하게 정리하여 자유로운 양식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함. 정기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할 시기가 도래하였다면, 그 때 함께 부수사건의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겸하는 것도 좋음.

표 43 부수사건 이행 결과 보고서 예시

후 견 사 무 보 고 서

사 건 2020후감0000 특정후견감독(기본)

사건본인 Q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P

사건본인(피특정후견인)의 특정후견인은 다음과 같이 귀원 2020년단0000 심판에 따른 이행결과를 보고합니다.

다 음

특정후견인은 2020. 6. 귀원 2020년단0000 심판에 따라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서울 OO구 OO동 123-2 현대아파트 1동 405호에 대하여 시민은행과 주택담보 노후연금 대출계약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위 계약에 대한 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습니다(첨부서류 1. 주택연금 가입 계약서 참조).

위 심판청구서에서는 매월 122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으나, 그 후 위 아파트의 감정가격이 인상되어 사건본인은 매월 125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후견인은 위 연금을 통해 사건본인이 안락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첨부서류

1. 주택연금 가입 계약서

2020. 7.

특정후견인 P

서울가정법원 가사OO단독(비송) 귀중

사. 후견인 사임

〈사례 2-9〉 후견인 G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모시게 되었음. 장남인 G는 아들로써 쓰러진 아버님을 돌보기로 하였음. 그러다보니 G는 피후견인 H에 대한 후견사무를 계속하기가 어려웠음. G는 감독인에게 부친의 병간호 때문에 후견사무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감독인은 최근 피후견인이 사망한 A에게 H의 후견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였고, A는 이를 승낙하였음. 감독인 지자체의 장은 H의 후견인을 G에서 A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고, 열흘 뒤 법원의 후견인 변경심판이 있었음. 그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G는 H의 후견인으로서 사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심판이 확정된 뒤에는 마지막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기준일 다음날부터 후견인 변경심판 확정일 전달까지의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인에게 제출하였음. 아울러 G가 보관하던 H의 계좌, 체크카드, 기타 서류들 일체를 A에게 전달하였음.

후견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후견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음. 이때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함¹⁷⁰.

이 때 정당한 사유는 후견인의 질병이나 노령, 장기간 출장이나 이사, 피후견인과의 관계 악화, 피후견인의 친족 등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악화, 업무 과중 등이 있음¹⁷¹.

170 민법 제959조의9 제2항, 제939조

171 김성우, "성년후견실무", 박영사, 2018, p.165

후견사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후견인이 계속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피후견인의 복리에도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런 경우 후임 후견인이 그 업무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은 빠르게 사임하는 것이 적절함. 다만,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경우 후견인인 사임하는 경우, 후견감독기관이 후견인 변경청구 절차를 진행함.

표 44 후견인 사임허가 심판청구서 예시

심 판 청 구	
청 구 인	G (주민등록번호 :))
(특정후견인) 주소 :	
	연락처 : , 이메일 :
사건본인	H (주민등록번호 :))
(피특정후견인)주소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 이메일 :
특정후견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청 구 취 지	
1. 청구인(특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A[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 주소 : 서울시 강 남구 테헤란로 521]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의 후견업무 수행 곤란

청구인의 부친은 2020. 5. X.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된 뒤 지금까지 00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갑 제1호증 - 입원확인서 참조).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부친의 병간호를 책임지고 있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구인은 부친의 병간호를 하면서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서 사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 오히려 사건본인의 복리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하루라도 빨리 청구인보다 사건본인을 성심성의껏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정보

가. 기본 정보

후견인 후보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사건본인과의 관계 : 이해관계 없는 제3자(공공후견인)

나. 후견인 후보자의 적정성

후견인 후보자 A는 2019. X. X.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하였고, 귀원 2020 후감0000호 사건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성실하게 후견사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후견인 후보자는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바, 사건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 후견인 후보자의 동의

아울러 후견인 후보자 A도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라. 결격사유 부존재

후견인 후보자에게는 민법 제959조의9 제2항, 제937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습니다(갑 제2호증 - 후견인 후보자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갑 제3호증 - 후견인 후보자 진술서 참조).

다. 후견감독인의 동의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A를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는 후견감독인도 동의하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 - 후견감독인 동의서 참조).

3.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이상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워졌는바, 후견인직을 사임하려고 하고, 청구인의 후임 후견인으로 A를 추천하는 바이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자 료

- 1. 갑 제1호증 - 입원확인서
- 1. 갑 제2호증 - 후견인 후보자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1. 갑 제3호증 - 후견인 후보자 진술서
- 1. 갑 제4호증 - 후견감독인 동의서

첨 부 서 류

- 1. 위 각 입증자료

2020. 5. .

청구인 G

서울가정법원 귀중

아. 후견인 변경

〈사례 4-5〉 피후견인 M의 배우자 N은 최근 후견인 O와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후견인 O는 후견개시 초기 배우자 N을 존중해주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던 것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M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을 빌미로 N을 무시하시 시작한 것임. N은 여러차례 O에게 항의하였고, 호소도 해보았으나, O의 거만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음.

참다 못한 N은 결국 감독인에게도 O의 태도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음. 감독인 역시 O가 부적절한 태도로 후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음. 결국 감독인은 가정법원에 후견인 O를 I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음.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음¹⁷².

후견인 변경의 경우, 사임과 달리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를 소명하면 되는 바, 보다 폭넓은 사유로 이루어질 수 있음. 이때 후견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는 앞서 후견인 사임에서 예로 든 사유에 추가하여 제3자가 후견인으로 더 적합한 경우,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후견인의 연락두절 등이 있음.

172 민법 제959조의9 제2항, 제940조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 역시 후견인 O의 부적절한 업무 태도를 인지하고, 여러 차례 O를 만나 사건 본인과 N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필요할 때 사건본인 계좌에서 생활비를 지급해줄 것과 N을 존중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O는 감독인인 청구인의 지시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 감독인 사례기록지, 갑 제2호증 - 감독인 내부 사례회의록 참조).

2. 후견인 변경 필요성

이와 같은 O의 부적절한 업무 태도는 사건본인의 배우자 N 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사건본인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후견인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정보

가. 기본 정보

후견인 후보자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서울시 00구 00동

사건본인과의 관계 : 이해관계 없는 제3자(공공후견인)

나. 후견인 후보자의 적정성

후견인 후보자 I는 2019. X. X.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하였고, 귀원 2020 후감0000호 사건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성실하게 후견사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후견인 후보자는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바, 사건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후견인 후보자의 동의

아울러 후견인 후보자 I도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라. 결격사유 부존재

후견인 후보자에게는 민법 제959조의9 제2항, 제937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습니다(갑 제3호증 - 후견인 후보자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갑 제4호증 - 후견인 후보자 진술서 참조).

3.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이상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워졌는바, 후견인직을 사임하려고 하고, 청구인의 후임 후견인으로 A를 추천하는 바이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자 료

- 1. 갑 제1호증 - 감독인 사례기록지
- 1. 갑 제2호증 - 감독인 내부 사례회의록
- 1. 갑 제3호증 - 후견인 후보자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3. 갑 제4호증 - 후견인 후보자 진술서

첨 부 서 류

- 1. 위 각 입증자료

2020. 5. .

청구인 서울시 OO구

서울가정법원 귀중

자. 직무대행자 선임

후견인 변경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의 권한범위를 변경하거나 직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음¹⁷³. 아울러 피후견인 보호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음. 이때 직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¹⁷⁴. 즉, 특정후견의 경우,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도 특정후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됨.

실무상 직무대행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임¹⁷⁵.

3. 학대피해 고령자에 대한 권익옹호

〈사례 6-2〉 S의 이웃 U는 S의 아들 T가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음. 어느 날은 혼자 밖에 나와 있는 S의 팔과 다리에 멍이 들어 있는 것도 발견하였음. U는 S에게 혹시 아들에게 맞은 것이냐고 물어보았으나, S는 별일 아니라고 답변할 뿐이었음. 보다 못한 U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사례가 있다고 신고하였음.

신고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V는 경찰관을 대동하고 S의 집에 방문하였고, S와 면담을 진행하였음. S는 치매로 인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는 못했음. 그러나 S의 온몸에 누군가에게 맞은 듯한 멍 자국이 가득했음. 면담 중 집에 들어 온 아들 T는 거세게 항의하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임시로 S와 T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S에 대해 공공후견인을 선임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아래 S 주거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공공후견을 신청하였음. S의 공공후견인으로 Z가 선임되었음.

아들 T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3개월간 S에 대한 접근금지 및 보호관찰 처

173 가사소송법 제62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 제5호 가목

174 가사소송법 제62조,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1항

175 김성우, "성년후견실무", 박영사, 2018, p.95

분이 내려졌음.

그런데 T는 보호처분의 기간 내임에도 술에 취해 S를 찾아와 욕설을 하거나 폭력적인 모습
을 보이기를 반복했음. Z는 T에게 보호처분을 지킬 것을 수 차례 당부하였으나, T는
막무가내였고, Z에게도 욕설과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음.

Z는 다시 경찰에 T를 노인학대로 신고하였음. 경찰은 T가 보호처분을 위반하였다고 검
찰에 보고하였고, 담당검사는 법원에 보호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음. 법원은 T에 대한 보
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담당검사는 형사절차를 진행하였
음. T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음.

가. 개요

피후견인이 배우자, 자녀, 친척, 이웃, 요양원과 같은 요양시설·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이
용시설·병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경제적·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편에서 학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야 함. 나아가 이미 학대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해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
는 피후견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함.

피후견인에 대한 학대문제가 발생할 경우, 후견인은 가까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서
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그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나.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
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¹⁷⁶.
위 각 유형별 학대행위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음¹⁷⁷.

176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177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noinboho.or.kr) (최종접속일 : 2020.5.11), 각 유형별 학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

표 46 노인학대 유형별 정의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지원

만약, 학대가해자가 배우자, 자녀, 친척 등 가족인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 우선적용되는바, 동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

동법에 따라 후견인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¹⁷⁸.

또한, 후견인은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법원에 가정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정보호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청구를 해줄 것을 요청하거나¹⁷⁹,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¹⁸⁰.

가정보호사건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피해사실을 증언하길 희망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이 때 피해자는 후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¹⁸¹.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피해사실을 진술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그에 따라 법정에서 출석하여

178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179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29조 제1항

180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제1항

181 가정폭력처벌법 제33조 제4항

판사에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할 것임.

후견인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경우, 그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음¹⁸².

나아가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해자보호명령청구¹⁸³, 피해자보호명령 취소·변경 신청¹⁸⁴, 피해자보호명령 연장청구¹⁸⁵, 피해자보호명령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¹⁸⁶, 신변안전조치 청구¹⁸⁷를 할 수 있음.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보조인

후견인은 노인학대사건이 법원에서 심리될 경우, 그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음¹⁸⁸. 즉, 후견인이 피후견인이 학대를 받은 사건에서 보조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1 가정법원으로부터 학대사건 소송행위에 대한 허가, 2 노인학대사건 심리하는 법원의 보조인 선임 허가, 2가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마. 관계자들과의 관계 설정

학대피해 피후견인에 대한 지원 절차에서 후견인은 피해자인 피후견인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임. 그러므로 후견인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관 등 관계자들에게 학대피해사실 조사, 형사입건,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관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함. 후견인은 후견인대로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그를 지원하는 역할이 있고, 관계자들은 관계자들대로 관계 법령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무와 역할이 있으므로, 그 것을 후견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임.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계자 중에는 후견인이 있으므로, 자신들은 학대사건에 개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182 가정폭력처벌법 제49조 제2항, 제37조

183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184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3항

185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3 제1항

186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8 제2항

187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5항

188 노인복지법 제39조의8 제1항. 단, 후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노인학대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음.

바. 손해의 회복

(1) 손해배상소송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학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¹⁸⁹. 전술한 것과 같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행위에 대한 법원 허가를 얻은 뒤 법률구조공단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함.

(2)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피후견인이 학대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¹⁹⁰. 단, 가해자가 피후견인의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그 외의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¹⁹¹.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그럴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후견인의 친족이더라도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¹⁹².

이 때 피후견인은 가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손해배상금과 구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만약 피후견인이 구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국가는 피후견인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됨¹⁹³.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통상 경찰 수사단계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바, 후견인은 담당 형사가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안내하면, 이를 검토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구조신청을 하면 됨.

189 자세한 내용은 "IV., 2., 라." 참조(P. 188)

190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제1호

19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19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7항

19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V. 후견감독인의 직무



V. 후견감독인의 직무

1. 개요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음¹⁹⁴. 나아가 후견감독인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후술)에 관하여는 직접 피후견인을 대리함¹⁹⁵. 이처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을 감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 또는 후견인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담당함.

공공후견에서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는 이유는 도움이 필요한 치매고령자에 대한 보호의 무가 있는 국가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취지도 있음¹⁹⁶.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후의 보루로서 공공후견인을 통해 치매고령자를 지원하므로, 그에 대한 감독·지원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후견감독인을 지방자치단체로 선임하고 있는 것임.

그러므로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감독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후견인의 업무를 지원하고, 피후견인의 복리 보호를 위해 감독사무를 수행해야 함.

2. 주요 사무

기본적으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이 수행하는 후견사무를 감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함. 그러므로 상세한 각 사무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전술한 후견인의 업무 수행 부분을 참고하기 바람. 이하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후견감독인 고유의 사무를 설명함.

194 민법 제959조의10 제2항, 제940조의6 제1항, 제2항

195 민법 제959조의10 제2항, 제940조의6 제3항

196 참고로 후견감독인의 선임은 필수가 아님(민법 제959조의10 제1항).

가. 기본 후견감독사무

(1) 초기 후견감독사무

(가) 후견개시 사실 확인 등

후견감독인은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었는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후견인이 “후견감독절차안내문”을 수령하였는지 확인해야 함¹⁹⁷.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었다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창설되었는지 확인 후 후견인에게 피후견인 명의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라고 안내해야 함¹⁹⁸. 아울러 후견인에게 후견감독사건번호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함.

(나) 재산조사

1)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그 내역을 정리해두었는지 확인해야 함¹⁹⁹.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에게 제출할 첫번째 정기보고서에 이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향후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적절함.

2) 후견인이 피후견인 재산조회 등을 위해 처음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방문한 경우, 금융기관이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등을 오해하여 업무처리를 거부할 수 있음. 그럴 때 후견감독인은 금융기관 담당직원과 통화 등의 방법으로 후견인의 대리권의 내용 및 재산조회 및 기본적인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음²⁰⁰.

3)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임대인, 채권자 또는 채무자를 만날 때 그들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음. 그 때 후견감독인 담당자는 부당한 요구나 불법적인 위세를 보이는 임대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단호한 태도로 후견인의 요청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률에 근거한 조치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이 적절함. 아울러,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의 업무는 모두 법원에 보고된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협조를 요청해야 함.

197 “II., 1., 다.” 참조(P. 30)

198 후견등기사항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II., 1., 라.” 참조(P. 35)

199 “II., 1., 바.” 참조(P. 41)

200 금융자산 조회와 관련하여서는 “II., 1., 바., (2), (3)” 참조(P. 42)

(다) 초기 방문 지원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처음 방문할 경우, 가능하면 후견감독인 담당자도 동행하는 것을 권고함. 피후견인의 생활상, 피후견인에게 시급히 필요한 지원,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하는 자세, 피후견인의 후견인에 대한 반응 등은 실제 동행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아울러 후견감독인의 담당자가 함께 하였다는 점은 피후견인을 안심시키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2) 개시 후 1년까지 감독실무

(가) 매월 정기보고서 등 검토

후견감독인은 매월 후견인이 제출하는 정기보고서, 금전지출내역서, 후견활동내역서를 검토하고, 각 항목이 성실하게 잘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함. 후견감독인이 주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후견인에게 아래의 모든 사항을 매월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과 면담, 정기모니터링 등을 통해 아래 사항들을 파악해야 함.

표 47 정기보고서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분류	항목	적정함	부적절함	비고
재 산 관 리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지출한 내역들의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첨부하였는지			
	후견인이 보고하는 수입·지출내역이 실제 피후견인 계좌 입출금내역과 일치하는지			
	후견인이 방만하게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지는 않는지			
	피후견인의 재산규모에 비추어 큰 지출을 한 경우 그 사유를 적절히 소명하고 있는지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사무들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후견인이 대리권 없는 사무를 무단으로 수행하지는 않았는지			
	후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남용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지는 않았는지			

신상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월 1회 이상 만나고 있는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을 잘 파악하고 적절히 지원하고 있는지			
	피후견인이 필요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비상연락망(조력자)을 파악하고 있는지			

(나) 매년 정기후견사무보고서 감독

표 48 기간 별 점검사항들

기한	점검사항	체크
보고서 제출기한 D-1개월	후견인에게 통지, 주의사항 통지, 필요서류들 확인	
보고서 제출기한 D-1주일	후견인에게 통지, 주의사항 통지, 작성 진행상황 점검, 필요서류들 구비 재확인	
보고서 제출기한	제출 여부 확인	
보고서 검토	보고서 적정 여부 확인, 첨부서류 구비 여부 확인	
기한 내 감독사무보고서 제출	감독사무보고서 작성, 제출	
보정명령에 따른 조치	법원 보정명령 여부 확인, 보정명령에 맞추어 보고서 보완 요청	

1) 후견감독인은 정기후견사무보고서 제출 기한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 후견인에게 이에 관하여 통지하고 제출을 독려함.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에게 정기후견사무 보고기간과 정기후견사무보고서 제출 기한을 정확히 기재하여 알려야 함. 후견인이 정기후견사무보고서 제출기한을 헛갈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임.

아울러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주의사항, 나홀로소송 이용방법, 구비해야 할 첨부서류 목록²⁰¹ 등을 안내함²⁰².

201 첨부서류 목록은 “II, 2., 마., (3)” 참조(P. 59)

202 자세한 내용은 “II, 2., 마.” 참조(P. 57)

2) 만약 후견인이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을 부담스러워 하면, 후견감독인 사무실로 첨부서류들을 지참하여 방문하게 하여 담당자가 돕는 것이 필요함.

3) 후견사무보고서 제출기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시 한 번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만약 후견인이 어느 정도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 이를 받아보고 중간검토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임.

4) 후견인이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면, 후견감독인은 이를 꼼꼼히 검토해야 함.

표 49 후견사무보고서 주요 검토 사항

검토사항	적정함	부적절함	비고
첨부서류들은 모두 구비되어 있는지			
매월 정기보고서와 후견사무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주요 수행 후견사무 중 누락된 것이 있는지			
보고기간 중 피후견인의 수입·지출내역을 모두 소명하였는지			
부수사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향후 계획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기타 후견사무보고서에 거짓이나 사실을 과장하여 기재된 것이 없는지			

(다) 후견감독사무보고서 작성

후견감독사무보고서는 후견사무보고서와는 달리 아직까지 나홀로소송이나 전자소송을 통한 작성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 그러므로 감독인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²⁰³에서 “후견감독사무보고서” 양식을 다운 받은 뒤, 직접 작성해야 함.

203 <https://help.scourt.go.kr/nm/mail/index.html>

그림 52 후견감독사무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화면



감독사무보고서는 후견사무보고서에 비해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감독인은 양식에 맞추어 적정히 보고서를 작성하면 됨.

1) 기본사항

후견감독사건번호와 관할법원,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함. 보통 후견감독인인 지자체의 대표주소와 담당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주소가 다를 것이므로, 후견감독인의 주소 하단에 칸을 추가한 뒤, 송달주소로 치매안심센터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함.

그림 53 후견감독사무보고서 01 - 기본사항


전산양식 C2606		후견감독사무보고서		 서울가정법원	
기본 후견감독사건 사건번호		2019후감12345			
기 본 사 항					
감독 대상 기간	2019. 04. 01. ~ 2020. 03. 31.	후견 종류	<input type="checkbox"/> 성년후견 <input type="checkbox"/> 한정후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정후견 <input type="checkbox"/> 임의후견 <input type="checkbox"/> 미성년후견		
피 후 견 인					
성명	B	주민등록번호	000000 - 000000		
주소	우편번호 (0616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1길51 (삼성동, 연남빌딩)		연락처	010-1111-1234	
후 견 인					
성명	A	주민등록번호	600415-2123487		
주소	우편번호 (0616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연락처	010-1234-5678	
피후견인과의 관계	시민(공공)후견인	주소변경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경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 있음		
복 수 후 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	
피후견인과의 관계		주소변경여부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 있음		
후 견 감 독 인					
성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06090)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연락처	☎ 02-568-4206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선릉로108길27(삼성동 113-26),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피후견인과의 관계	피후견인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후견인과의 관계			

그림 54 후견감독사무보고서 02 - 감독경과

감독경과		
감독일시	감독대상	감독장소 및 방법
2019. 4. 1.	후견인	감독인 사무소 면담
2019. 5. 1.	후견인	감독인 사무소 면담
2019. 5. 15.	후견인	유선 감독
2019. 6. 1.	피후견인·후견인	피후견인 주소지 방문 면담
2019. 7. 1.	후견인	감독인 사무소 면담
2019. 8. 1.	후견인	감독인 사무소 면담
2019. 9. 1.	후견인	감독인 사무소 면담
2019. 10. 1.	피후견인·후견인	피후견인 주소지 방문 면담
2019. 11. 1.	후견인	유선감독
2019. 12. 1.	후견인	유선감독
2020. 1. 1.	후견인	감독인 사무소 면담
2020. 2. 1.	후견인	유선감독
2020. 3. 1.	후견인	감독인 사무소 면담

감독경과에는 감독을 시행한 일시와 감독대상, 감독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함.

2) 감독내용

감독내용의 경우 후견인이 적정하게 후견사무를 수행하는지를 간단하게 체크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적절히 체크하면 됨. 만약 “보통”, “아니다”라고 체크한 항목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그 사유를 서술하는 것이 필요함. 만약, 후견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사유를 별도로 기재함.

그림 55 후견감독사무보고서 03 - 신상보호

신상보호	감독항목	그렇다	보통	아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거주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정기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건강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 ■ 후견인이 간호, 주거확보, 의료, 재활 등의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보호계획을 적절하게 세우고 있다. ■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의 방치는 관찰되지 않았다. ■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의 학대는 관찰되지 않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 		

그림 56 후견감독사무보고서 04 - 재산관리

재 산 관 리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		
	■ 피후견인의 정기수입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		
	■ 피후견인의 정기지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		
	■ 피후견인의 수입누락이 관찰되지 않았다.	○		
	■ 지출항목이 적절하다.	○		
	■ 후견인의 개인 지출이 관찰되지 않았다.	○		
	■ 후견인의 재산 횡령이 관찰되지 않았다.	○		

그림 57 후견감독사무보고서 05 - 일반

일 반	■ 후견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	
	■ 후견인이 후견활동에 적극적이다.	○		
	■ 후견인이 감독에 협조적이다.	○		
	■ 피후견인 및 관계인의 불만이 관찰되지 않았다.	○		
	■ 후견인 변경의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		
	※ 후견인 변경의견이 관찰된 경우 아래 내용을 작성합니다.			
■ 변경 의사	<input type="checkbox"/> 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피후견인 <input type="checkbox"/> 관계인			
■ 변경 사유				

3) 감독의견

후견감독인은 감독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서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감독의견란에 기재할 수 있음.

그림 58 후견감독사무보고서 06 - 신상보호 감독의견

신 상 보 호
매월 정기보고서 수령 및 후견인 면담을 통해 피후견인 신상보호 상황을 점검하였음.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 주소지로 감독인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피후견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지도하였음.

그림 59 후견감독사무보고서 07 - 재산관리 감독의견

재 산 관 리
후견인은 감독인과 협의 아래 피후견인의 재산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있음.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닌 지출의 경우, 사전에 감독인과 협의를 반드시 거치고 있음. 후견인은 종전 주거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감독인도 몇 차례 종전 임대인과 통화를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유도하였음.

그림 60 후견감독사무보고서 08 - 종합의견

종 합 의 견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보다 양호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다만, 그로 인해 후견인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종종 후견사무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감독인은 후견인이 업무 부담을 덜고, 현재와 같이 적절하게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데 집중하려고 함.

(라) 감독사무보고서 제출

후견감독인은 감독사무보고서와 후견인이 작성한 후견사무보고서, 첨부서류들을 출력한 뒤, 우편 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함²⁰⁴.

표 50 각종 서면 제출 방법

항목	제출방법
후견사무보고서, 감독사무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우편, 방문
부수사건 심판청구서	방문
보정서, 기타 서면 제출	우편, 방문

(3) 각종 서면 제출 방법

(가) 방문 제출

표 51 제출자별 지참서류

후견인 본인 제출	본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감독인 제출	위임장, 직원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 일반론

원칙적으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할 경우, 제출하는 사람은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함. 이 때 법원 1층에 위치한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함.

후견인 본인이 자신이 작성한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소지하고 가면 됨.

정기 후견사무보고서·감독사무보고서 제출 등 후견감독인이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가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 그러므로 치매안심센

204 전자소송 이용방법, 전자소송을 통한 감독사무보고서 등 서면, 첨부서류 제출 방법은 후술 참조

터 담당 직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 사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에 방문해야 함.

그러므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이 서면을 제출할 경우와 후견감독인 담당직원이 제출할 때를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할 것을 안내해야 함.

2) 진행 중인 사건에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후견사무보고서·감독사무보고서, 부수사건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보정서와 같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제출하는 서면의 경우,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바로 제출하면 됨.

제출하는 서면 제일 앞 장에는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어떤 사건에 제출하는 서면 인지를 특정해야 함.

3) 부수사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수사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청구서 및 소명자료들과 함께 인지대, 송달료 납부확인서도 첨부해야 함. 이 때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는 다음과 같음²⁰⁵.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구내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음.

표 52 인지대, 송달료 납부 기준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5,000원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송달료	96,000원	2명×4,800원×10회분 *사건 종결 후 남은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있음.

송달료의 경우, 사건 종결 후 남은 것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계좌에는 공공후견사업비가 관리되는 계좌를 기재해야 함. 만약, 피후견인 재산에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 환급계좌에는 피후견인 명의 계좌를 기재해야 함.

205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지대는 10%감액됨.

(나) 우편발송

정기 후견사무보고서, 감독사무보고서, 각종 부수사건에서 준비서면·보정서 등 서면 제출 등 이미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에 추가로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이 때 우편 봉투 겉면에도 식별하기 쉽게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음.

(4) 후견종료시 감독사무

(가) 연장여부 심사

후견감독인은 후견종료 6개월 전 후견 연장 여부를 심사해야 함. 이 때 후견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후견 연장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임²⁰⁶.

(나) 종료보고서 작성 참여 및 감독사무보고서 작성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에게 마지막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일 다음날부터 종료일까지 기준으로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안내해야 함. 후견사무보고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됨.

감독인은 후견인이 제출한 종료보고서를 검토한 뒤 감독인의 의견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함. 이 때 감독인의 의견서는 감독사무보고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제출함.

(다) 종료등기신청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에게 종료등기신청을 기한 내에 하도록 안내해야 함. 만약, 후견인이 기한 내에 신청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후견감독인이 직접 종료등기신청을 해야 할 것임²⁰⁷.

206 자세한 내용은 “II, 3, 나.” 참조(P. 86)

207 “II, 3, 라.” 참조(P. 87)

(라) 긴급사무 처리

후견감독인 역시 후견이 종료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감독사무를 계속하여야 함²⁰⁸. 이 때 급박한 사정의 예시는 전술한 바와 같음²⁰⁹. 후견감독인은 전술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견인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아울러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음²¹⁰. 따라서 후견인이 급박한 사정에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접 피후견인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해야 할 것임.

나. 개별 후견감독사무

(1)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례 3-5〉 후견인 I는 열흘간 베트남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음. 그 동안 피후견인 J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요 안전망들을 점검하고, 이웃과 후견감독인 등에게도 도움을 요청해두었음. I가 베트남에 가 있는 중에 J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음. 응급수술은 잘 마쳐졌으나, 이후 병원비 정산 등의 문제가 있었음. I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후견감독인 담당자가 J 계좌에서 병원비를 지급하였음.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음²¹¹. 이 때 후견감독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후견인의 권한 범위로 한정됨²¹². 후견인이 보유하지 않는 권한에 대하여도 급박한 사정이 있다

208 민법 제959조의10 제2항, 제691조

209 "II., 3., 마." 참조(P. 88)

210 민법 제959조의10 제2항, 제940조의6 제2항

211 민법 제959조의10 제2항, 제940조의6 제2항

212 김성우, 전거서, p.149 이하 참조

고 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정후견제도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후견감독인은 현상을 보존하거나 피해를 막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는데 그치는 것이 적절하고²¹³, 후견인이 적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만약 후견인이 업무를 게을리하여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고 있다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할 뿐만 아니라 후견인 변경도 검토해야 함. 아울러 후견인 변경 때까지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후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심판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함²¹⁴.

(2) 이해상반행위

〈사례 5-3〉 후견인 P는 피후견인 Q가 보유하는 주택을 통해 Q가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하였음. 사례 5-1에서와 같은 방법에 추가하여 P가 Q의 주택을 시세대로 구입하되, Q가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음. P는 10년 뒤를 내다보면 Q의 주택은 지금 시세라고 하는 4억 원보다는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임. 자신이 현재 Q 주택을 매수하고, 대신 P는 무상으로 계속 거주하면서 매매대금을 통해 안락한 노후를 영위한다면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었음.

이에 P는 감독인에게 자신이 Q 주택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3곳에서 말하는 시세 중 가장 높은 값으로 Q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문의하였음.

감독인은 현재 Q 주택 시세에 거품이 있다는 소문도 있지만, 현재 시세인 4억 원 정도에서 P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음.

이에 P는 가정법원에 Q 주택 매각에 대한 허가심판청구를 하였음. 감독인도 Q 주택을 P에게 매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가정법원은 P가 Q를 대리하여 P와 Q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해

213 김성우, 전거서, p.150

214 가사소송법 제62조,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상반행위이므로, 감독인이 Q를 대리하여 Q 주택을 P에게 매각하는 것을 허가하였음. 다만, 매매가격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3군데 이상에서 산정한 시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하고, 대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00협회에 신탁하라는 조건을 붙였음.

표 53 이해상반행위 사례

이해상반행위	구체적인 사례	주로 발생하는 영역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이거나, 자녀인 경우, 생활비 등으로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에게 증여할 필요가 있음.	주로 친족이 후견인인 경우에서 발생함.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	후견인이 부동산 등 담보는 보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한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 때 소득이 있는 후견인이 대출을 받되, 피후견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후견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주로 친족이 후견인인 경우 발생함.
공동상속인인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피후견인은 예금 등 유동자산을 상속하고, 후견인은 부동산 등 그 외 자산을 상속하는 형태의 분할협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친족이 후견인인 경우 발생함.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피후견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후견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친족이 후견인인 경우 많이 발생할 것임. 공공후견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는 있음.
주의)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서로 소송을 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 규정 적용되지 않음. 후견인 결격사유로 즉시 후견인 변경심판청구를 해야 함.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함²¹⁵. 이 때 대표적인 이해상반 행위는 다음과 같음. 다만,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공공후견의 경우 이해상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는 많지 않음²¹⁶.

215 민법 제959조의10 제2항, 제940조의6 제3항

216 사례 5-2 역시 공공후견 영역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또한, 아무리 적당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후견인이 피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어 소송을 하는 것 역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데, 감독인이 그 소송행위에 한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피후견인 보호에 부족하므로, 민법은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를 후견인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음²¹⁷. 그러므로 후견인 또는 그의 배우자·직계혈족²¹⁸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다면, 감독인은 즉시 후견인 변경심판청구를 해야 함.

(3) 일반적인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하여 적절히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해야 함. 만약 은행, 관공서 등에서 후견인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를 거절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은 적극적으로 후견인에게 권한이 있음을 설명해야 함.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을 감독하는 업무를 기본으로 하기는 하지만, 일면 후견인 입장에서 보면 후견인을 이해해주고 후견인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사실상 후견감독인뿐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전술한 “III. 개별 후견사무” 참조

다. 후견감독사무 심화

(1)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대리하려고 할 때 그 행위가 필요하지 여부를 검토한 뒤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함.

법원에서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사이에 내부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음²¹⁹.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이 동의를 받아 피후견인을 대리한 경우, 그 경과를 반드시 보고받아야 함.

후견인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향후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그러므로 실제 사례에서는 후견인보다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217 민법 제959조의9 제2항, 제937조 제8호

218 민법 제959조의9 제2항, 제937조 제9호

219 “IV., 1.” 참조(P. 165)

(2) 후견부수사건과 관련한 후견감독 실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권한 밖의 행위를 하기 위해 후견부수사건 심판청구를 할 경우, 이에 조력해야 함. 후견인이 스스로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므로, 후견감독인이 청구준비부터 허가심판을 받을 때까지 전 과정에서 후견인을 도울 필요가 있음.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하여 중앙치매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나아가 후견감독인은 후견부수사건에서 법원에 적절히 의견을 개진하여 법원의 판단을 도와야 함²²⁰.

220 “IV., 2.” 참조(P. 174)

사례모음

본 매뉴얼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개된 사례를 먼저 보신 후 매뉴얼을 보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좋을 수도 있습니다. 6개의 후견 사례 내용 전체를 먼저 확인하고 매뉴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모음]

사례1(후견인 : A, 피후견인 : B)

〈사례 1-1〉 후견인 A는 후견개시심판을 준비할 때 피후견인 B를 처음 만났음. B는 낯선 A에 대해 떨떠름한 반응이었고, 동석하던 사회복지사에게 A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을 함. B를 자주 만나는 사회복지사는 B가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보이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위로하였음.

A는 본격적으로 B의 후견인으로 활동하기에 앞서 B와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음. 다만, B가 A를 낯설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B와 이미 라뽀가 형성되어있는 사회복지사에게 한달 정도는 함께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두번째, 세번째 만남을 지속할 때마다 B는 A와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짓기도 하는 등 처음 만날 때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음. 후견이 개시된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A는 B와 단둘이 만나 외식을 하기도 하는 등 가까워졌음.

〈사례 1-2〉 후견인 A는 처음 3개월 간은 매주 1회씩 B를 방문했음. 그럼으로써 B와 많이 가까워졌음. 그러나 매주 한 번씩 B를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방문할 때마다 교통비 등 지출하는 비용도 부담되기 시작했음. 그러던 중 A는 독감에 걸려 2주 정도 B를 찾아가지 못했음. A는 자신이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었음.

〈사례1-3〉 후견인 A는 후견개시심판문을 수령한 지 1달쯤 지난 뒤 법원으로부터 “후견 감독절차 안내문”을 수령하였음. 이 안내문에는 후견감독사건이 서울가정법원 2020후감12345호라고, 재판부는 가사21단독(비송), 연락처는 02-2055-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사례 1-4〉 후견인 A는 피후견인 B에 대한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후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였음. 법원 담당자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부존재

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다고 하였음. 후견인 A가 A명의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했기 때문임. A는 다시 피후견인 B명의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음. B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는 후견개시심판 사건번호, 확정일, 후견인 A의 인적사항,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

〈사례 1-5〉 후견인 A는 피후견인 B의 수급비가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는 시민은행에 방문하였음.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결과,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2개 존재하고 있었음. A는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고자, 해지신청을 하였음. 시민은행 직원은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예금계좌 해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확인을 요청하였음.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상에는 “예금계좌 개설, 계좌이체, 예금계좌 해지 및 예금관련 개인정보 조회 등에 대한 대리권”이 기재되어 있었음. A는 은행 담당자에게 후견등기사항의 해당 부분을 보여주고 대리권이 있음을 소명하였음.

〈사례 1-6〉 후견인 A는 1년이 지난 뒤 B에 대한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함. 후견이 개시되었을 때 심판문이나 법원, 감독기관에서 별다른 지시가 없어 특별히 피후견인 B의 재산내역을 조사해둔 것이 없었음. 그 뒤 1년 동안 관리한 피후견인 B의 재산변동상황을 보고하려고 하니 결국 후견개시 시점에 피후견인 B가 보유하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밖에 없었음. 재산내역을 조회한 결과 A가 1년 동안 알지 못했던 은행계좌 3개, 예금액 200만 원 정도가 더 발견되었음.

〈사례 1-7〉 A는 피후견인 B 명의의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A는 사랑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한 뒤 상담원에게 일단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팩스나 이메일, 편한 방법으로 보내줄테니 확인해보고, 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음. 10분 뒤 상담원은 보험증권을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음.

보험증권을 받아 본 A는 B명의의 보험 수익자가 김갑동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B가 사망하면 1억 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그런데 B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고, B의 제적등본을 통해 확인한 형제들 중에도 김갑동은 없었음. 주민센터 담

당자 등에게 수소문한 결과 김갑동은 5년 전 B의 옆집에 살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A는 보험사에 방문하여 보험증권 수익자 명의를 김갑동에서 B로 변경하였음.

〈사례 1-8〉 사회조사보고서에 피후견인 B는 임대인 C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월 20만 원에 현재 거주지를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었음. 그러나 후견인 A가 아무리 피후견인 B의 집을 찾아보아도 임대차계약서를 찾을 수 없었음. 피후견인 B의 요양보호사도 임대차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하였음. 후견인 A는 임대인 C에게 임대차계약서를 한 부 복사해달라고 요청하였음. 임대인 C는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해주겠다고 답은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후견인 A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않고 있음.

답답해진 후견인 A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피후견인 B 명의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하였음. 동 주민센터에서는 피후견인 B가 2015년 5월 20일부터 2년간 현 거주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20만 원에 임차하였고, 같은 날 “311”번으로 확정일자를 발급받았다는 확정일자 발급내역 조회서를 발급해주었음.

〈사례 1-9〉 후견인 A가 피후견인 B를 방문한 날, 우연히 D라는 사람을 마주치게 되었음. D는 B가 혼자 딱하게 지내고 있어 1년 전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음. 그 뒤에 B가 치매가 심해져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 후견인이 선임되었으니 너무 잘되었다며 B가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였음.

A는 D에게 B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받은 차용증이나 B에게 돈을 이체한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고 물어보았음. D는 그냥 현금을 빌려준 것인데 그렇게 남아 있겠냐며 크게 화를 내었음.

그 뒤 A가 수소문하여 1년 전 B를 돌봐주었던 요양보호사에게 물어본 결과, 그 당시에도 B는 치매가 심했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쓴 적도 없고, 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음.

〈사례 1-10〉 후견인 A는 피후견인 B가 2년 전 현 거주지로 이사오면서, 종래 거주지의

임대인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실제 B의 계좌거래내역서를 보더라도, 이사한 날 종전 거주지 임대인으로부터 500만 원이 입금된 내역만 있을 뿐이었음.

A는 E에게 남은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음. E는 A에게 한 달만 시간을 주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알려왔음. A는 E가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하기로 하고, 감독인과 논의하여 소송행위 허가 심판청구를 준비하기로 하였음.

〈사례 1-11〉 후견인 A는 지난 1개월 간의 후견사무 수행 내역을 보고하기 위해 정기보고서를 작성하였음. A는 곧 여름이 오기 때문에 피후견인 B와 함께 인근 마트에 방문하여 여름옷을 구입하였던 것과 요양보호사가 요청하여 B가 먹을 과일을 구입한 적이 있었음. 그 때 일단 A 비용으로 지출하고, 이후 B 계좌에서 A에게 그 돈을 이체하였음. A는 정기보고서에 여름옷, 과일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고 지출 사실을 밝혔음.

또한, A는 B와 상의하여 매월 10만 원은 B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A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면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음. 이 내역도 용돈 지급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였음.

A는 B가 용돈을 이용하여 건강보조제(홍삼)를 5만 원에 구입한 것을 확인하였음.

〈사례 1-12〉 후견인 A는 정기후견사무보고 기간이 도래하였다는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의 연락을 받았음. 후견개시 당시 파악해두었던 피후견인 B의 예금계좌들의 지난 1년간 거래내역을 다시 조회하였고, 수입, 지출 내역을 정리하였음.

A는 대법원 나홀로소송사이트를 통해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음. B를 만난 빈도, B의 현재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을 상세히 작성하였음. B가 직접 사용한 돈은 “본인 소비”로 기재하고, 그 외 A가 직접 관리한 내역들은 상세하게 지출내역을 기재하였음. 후견사무보고서에는 영수증과 안심센터에 제출했던 월 정기보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였음. 후견사무보고서 말미에는 1년 간의 후견사무수행내역에 대한 소회와 향후 계획도 기재하였음. A는 작성된 후견사무보고서를 PDF파일로 저장한 뒤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에

게 송부하였음.

〈사례 1-13〉 후견인 A는 후견기간이 만료된 후 감독인과 협의 끝에 후견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함. 이에 후견종료 후 피후견인 B에 대한 특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다시 하였음. A는 후견이 종료되고, 다시 후견개시심판이 있을 때까지의 공백을 염려하여 최대한 병원비, 약제비 등 예상가능한 지출들을 정산하여 납부해두었음. 또한, 체납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스비, 전기료 등 공과금에 대하여는 자동이체신청을 해두었음. B가 사용할 용돈도 미리 현금으로 한 달치를 인출해두고, B에게 일주일마다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음. 공백기간 동안 피후견인의 수급비 입금내역, 공과금 자동이체 지출 내역 등은 통장정리를 통해 확인하고 있음.

그러던 중 B가 갑자기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음. 입원절차는 지자체에서 협조해주었음. 그 후 병원에서 입원비 중간정산내역서를 보내오며 병원비를 납부하라고 알려왔음. A는 병원비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였음. 은행은 A의 후견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후견업무에 협조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음. A는 민법 규정에 따라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종전 후견인인 A가 B를 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은행 직원은 병원비를 납부하는 것이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거절하였음. A는 감독인과 협의 끝에 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후견심판을 빨리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아울러 중앙치매센터 도움 아래 가정법원에 임시후견인 선임심판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음. 가정법원은 “발생한 병원비를 지급하는 것은 민법 제959조의13, 제691조에 따라 급박한 사정이 있어 후견인이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해야 할 때로 보이므로, 임시후견신청을 재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했음. A는 위 보정명령을 은행직원에게 제시했고, 은행직원은 그제서야 병원비 이체사무에 협조하였음.

〈사례 1-14〉 예금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사례 01

후견인 A는 후견이 개시된 후, 피후견인 B 명의의 시민은행 계좌에서 공과금을 이체하기 위해 시민은행에 방문했음. 오랜 대기 끝에 담당직원에게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을 제시하고, 은행 전표를 작성하여 이체업무를 마쳤음. 업무를 마치고 나니 1시간이 훌쩍 지나있었음. A는 일반적으로 은행업무는 폰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등 비대면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과 비교할 때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음.

그러던 중 A는 자신의 대리권 범위 중 “체크카드 발급 신청, 해지, 이용”에 대한 사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기억났음.

A는 은행 직원에게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음. 은행 직원은 난처해하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시작했음. 이윽고 부지점장까지 나와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주겠다고 했음. 그렇게 1시간을 더 허비한 A는 일단 돌아와야 했음. 다음날 시민은행 창구 직원은 본사에서 후견이 개시된 경우 체크카드와 같은 비대면 금융거래수단을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A의 신청을 거부했음.

A는 자신이 대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은행 창구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해줄 수 없는 근거가 뭐냐고 항의했음. 시민은행은 후견인이 체크카드를 갖고 재산범죄를 저지를 경우, 은행이 책임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사례 1-15〉 예금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사례 03

A는 B의 재산관리를 위해 매일 시민은행에 방문하고 있음. 시민은행에서는 A가 은행업무를 볼 때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원본을 요구하였음. A도 처음 몇 번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원본을 시민은행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은행에 제출하기 위해 1부당 1,200원의 수수료와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음.

그런데 시민은행과 달리 나라은행은 A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하면, 확인만 할 뿐, 제출받지는 않음.

A입장에서는 매번 은행업무를 볼 때마다 번거롭고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하는 시민은행보다는 나라은행이 업무를 보는데 편리하였고, B의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등 공적부조금 입금계좌를 모두 시민은행에서 나라은행 B계좌로 변경하였고, 시민은행 계좌의 잔액도 모두 나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음. 그리고 시민은행 계좌는 모두 해지하였음.

〈사례 1-16(사례1-14에서 연결됨)〉 후견인 A는 최근 은행들이 후견이 개시된 고객에 대해서도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발행해주기로 하였다는 기사를 접했다. 이에 해당 기사를 지참하고 시민은행에 다시 방문하였음. 시민은행 담당자 역시 자신도 해당 기사를 보았고, 본점의 자문도 받아두었다며 이번에는 체크카드를 발행해주겠다고 하였음.

A는 피후견인 B에게 용돈을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음. 그러나 평소에도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던 B는 현금이 더 편하다고 밝혔음. A가 생각하기에도 오히려 B가 체크카드를 분실할 위험이 커 보였음.

A는 체크카드를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B를 만날 때마다 필요한 식료품을 구입해주고, 병원비 결제, ATM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등의 업무를 보기로 하였음.

체크카드를 활용할 경우 계좌거래내역에도 지출내역이 기록되기 때문에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평소보다 수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사례 1-17〉 피후견인 B에게는 매일 4시간씩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가 있음. 후견인 A는 후견개시 초기부터 요양보호사가 요청하는 식재료, 생활용품들을 구입해서 전달해주곤 했음. 그러다 보니 필요할 때 즉시 물품들이 제공되기 어려웠고,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지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음. 결국 요양보호사의 불만이 커져갔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일하기가 어렵다고 통보하기에 이르렀음. A 역시 매번 요양보호사의 연락을 기다리며 그가 요구하는 물품을 구입해주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A는 감독인과 논의 끝에 요양보호사가 요청하는 일상생활비용이 평균 월 10만 원 정도라는 점에서 피후견인 B명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그 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이체하기로 하였음. 그리고 그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개설하고, 요양보호사에게 맡겨두고, 필요한 일상생활용품들을 바로 구입할 수 있게 조치해두었음.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A 휴대폰으로 문자연락이 오게 하여 사용내역을 A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사례 1-18〉 후견인 A는 피후견인 B가 현재 머무르는 집이 반지하 방에 노후된 주택이

라 환경이 열악하여 기회가 되면 이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후건개시 당시 후원할 사무의 범위 중에도 새로운 주거지 물색을 위한 사무가 있었고,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변경, 종료에 대한 대리권도 부여받은 바 있음.

A는 주민센터 담당직원의 도움 아래 인근에 현재보다 조금 더 넓고 깨끗한 집을 찾을 수 있었음. 다만, 보증금 2,000만 원, 월 20만 원에 지내고 있는 현 거주지에 비해 보증금 3,000만 원, 월 30만 원으로 조금 비싼 것이 단점이었음. 주민센터 담당직원은 보증금 차액 1,000만 원은 지자체에서 주거비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음.

A는 B가 종전 임대인 E로부터 얼마 전 받은 미반환 보증금 500만 원(사례 1-10 참조)과 정기예금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의 목돈이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3,7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월 차임을 23만 원으로 감액해달라고 요청하였음. 임대인은 A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였음.

A는 B를 대리하여 임대인과 보증금 3,700만 원, 월 차임 23만 원에 새로운 주거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전술한 것과 같이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 2,000만 원, B 보유 현금 700만 원, 동 주민센터 지원금 1,000만 원으로 조달하기로 하였음.

<사례 1-19> 후건인 A는 피후건인 B가 이사가기 위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 기존 임대인 C(사례 1-8 참조)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으니, 만료일에 주택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통지하였음.

C는 보증금을 돌려주겠으나, B가 집을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여러 곳이 망가진 게 많으므로 이를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음.

A가 보기에다 장판과 벽지가 뜯어진 곳이 많고 화장실이나 부엌도 일부 고장난 것들이 많이 있었음. 장판과 벽지는 교체한지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뜯어진 것이었으나, 싱크대는 3개월 전에 교체한 것인데 B가 치매로 인한 망상증상으로 부순 것이었음.

A는 C에게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노후되어 어차피 교체해야 하는 장판과 벽지를 원상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새로 교체하라는 것은 과도하나, 싱크대는 교체비용을 B가 부담하겠다고 밝혔음.

이에 A와 C는 보증금 2,000만 원에서 싱크대 교체 및 기타 B가 손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보수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100만 원을 제외한 1,900만 원만 반환 받기로 합의하였음.

〈사례 1-20〉 피후견인 B는 대부업자 X에 대해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 후견인 A는 대부업자 X로부터 1,000만 원을 연 15%의 이율로 빌려주기로 하되, 선이자로 1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850만 원만 지급하였다는 얘기를 들 수 있었음. X는 지난 1년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이자 150만 원을 합하여 1,15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였음.

A는 동 주민센터 무료 법률상담 기회를 통해 이 문제를 변호사와 상의하였고, 대부업법 상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채무 원본은 선이자를 빼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돈이라는 얘기를 들 수 있었음.

A는 X에게 B의 채무 원본은 850만 원이고, 그에 대한 1년치 이자는 127만 5천원(850만 원 \times 0.15 \times 1년)이므로, 이를 합한 977만 5천 원을 변제하겠다고 통보하였음.

〈사례 1-21〉 피후견인 B는 X에 대하여 1,000만 원, Y에 대하여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채무 모두 변제기가 지났음. 그에 반해 B에게는 정기예금 600만 원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음.

마침 후견인 A는 평소 이웃 주민인 Y를 잘 알고 지내고 있었기에 Y가 B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음.

그러던 중 X는 B 명의의 위 예금에 대한 가압류하고,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A는 Y가 빌린 돈을 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 B를 대리하여 Y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 Y는 이 공정증서를 갖고 B의 예금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아 갔음.

X는 B가 Y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하여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 결과, 법원은 A가 B를 대리하여 Y와 작성한 공정증서는 다른 채권자 X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음.

〈사례 1-22〉 피후견인 B는 지난 3년간 보호자 역할을 해오며 관리하던 요양보호사가 있음. A는 후견인으로 지정된 후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B의 일상생활을 모니터링 해오던 중 요양보호사의 불편한 기색 때문에 후견사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요양보호사는 후견인이 통장을 주면 본인이 인출하여 생활비를 사용하면 편한데, 일부러 불편하게 하려고 월 10만원 한정된 돈에서 쓰게 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갖고 있었음. A는 이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우선 요양보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방문요양기관에 연락하여 요양보호사의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하였음. 나아가 요양보호사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B의 후견인으로서 요양서비스 계약의 변경 및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알렸음. 방문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근무 모니터링을 실시함. 근무태도를 지적 받자, 감정적이던 요양보호사의 태도도 개선되었음. A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주 요양보호사와 대면하면서 친밀감을 높였음. 전화 연락도 주고 받으면서 B에 대한 돌봄의 어려움과 그 수고를 서로 나누면서 가깝게 지냈음. 현재는 B를 위해 각별히 협업하는 동반자로 서로 조력하면서 지내고 있음.

〈사례 1-23〉 후견인 A는 피후견인 B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뒤, 지인들로부터 B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둘 수 있다는 점을 듣게 되었음. 더욱이 퇴원 후 B가 다니는 주간보호센터 센터장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검토해보라고 권고하기도 하였음.

이에 A는 B가 임종과정에 이르렀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는 것보다 존엄하게 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음.

A는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자신이 B의 후견인임을 밝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음.

등록기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만이 작성할 수 있고, A가 B를 대리하여 작성할 수 없다고 밝혔음. 또한, B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이를 작성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음. 만약 B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를 작성하였다면, 그 의향서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하였음.

이에 A는 B에게 3개월 간 수 차례에 걸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설명하고, 등록기관에도 모시고 가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럼에도 B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작성하는 것에도 반대하였음.

A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포기하였음.

〈사례 1-24〉 피후견인 B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 재발하여 다시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음. 후견인 A는 담당의사로부터 신장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복부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음. 담당의사는 B가 일주일 넘기 어려워 수도 있다면서 연명치료에 대한 얘기를 꺼냈음. 연명치료를 진행하면 수개월 정도 생존할 수는 있으나, 무의식 상태에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뿐이고, 그 과정에서 B도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며, 비용도 과도하므로, 연명치료를 진행해야 하는지 잘 고민해달라고 하였음.

A는 B가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지 않았고, B의 직계가족도 아닌 제3자인 A가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권한이 없고, 달리 B를 위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해 줄 가족이 없으므로, 원칙대로 연명의료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음.

〈사례 1-25〉 피후견인 B가 응급실에 입원하자, 병원에서는 후견인 A에게 보호자로서 병원비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입원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음. A는 자신이 후견인인 것은 맞지만 B에게 발생하는 병원비를 모두 부담할 수 없고, 그럴 지위에 있지도 않다며 연대보증을 거절하였음. 다만, A는 병원에게 B가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서 충당되지 않는 간병비 등 자기부담금 역시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득하였음. 병원측에서도 사회복지팀을 통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A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것을 양해해주었음.

〈사례 1-26〉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피후견인 B는 결국 퇴원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음. 후견인 A는 B가 사망하자마자 감독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였음. 감독인은 사망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B의 사망사실을 보고하였음.

A는 무연고자인 B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 끝에 하루 짧은 장례식을 치러주기로 하였고, 시신은 화장하기로 하였음. 사망 후 장례, 화장 절차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기로 하였음. A는 남은 병원비를 정산하고, 사망신고를 마쳤음.

그 후 A는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후견종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후견업무를 종료하였음.

〈사례 1-27〉 후견인 A는 피후견인 B가 X와 Y에게 가지고 있는 채무 총 1,500만 원을 시급히 변제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B가 임대인 C에게 갖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하여 시민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기간 1년으로 하여 대출하였음. 법원은 위 대출을 허가하면서 향후 이 대출계약의 변경, 연장 등의 사무를 할 때에는 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음.

대출기간이 지난 뒤 후견인 A는 대출기간 연장을 위해 감독인에게 동의서를 요청하였음. A는 감독인에게 받은 동의서를 시민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연장하였음.

〈사례 1-28〉 후견인 A는 피후견인 B가 X와 Y에게 가지고 있는 채무 총 1,500만 원을 시급히 변제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B가 임대인 C에게 갖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하여 시민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기간 1년으로 하여 대출하였음.

〈사례 1-29〉 피후견인 B는 2019. 5. 8. 임대인 C와 서울 ○○동 원룸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20.~2020.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원룸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 위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음.

임대인 C는 2020. 1. 10. 피후견인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음. 그런데 피후견인 B가 2020. 2. 20. 이후에도 위 원룸에서 나가지 않자, 임대인 C는

2020. 4. 10. 점심 경 마스터키로 피후견인 B가 살고 있는 원룸에 들어와 피후견인 B의 물품 일부를 건물 밖으로 내놓았음. 피후견인 B는 그 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현장을 확인하고 화를 참지 못한 채 임대인 C가 살고 있는 5층으로 올라가 마침 밖으로 나오던 임대인 C를 지팡이로 수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힘. 한편, 2020. 4. 10. 당시 임대인 C가 소유하고 있는 위 원룸 건물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음.

사례2(후견인 : G, 피후견인 : H, 변경 후 후견인 : A)

〈사례 2-1〉 후견인 G는 피후견인 H, 감독인과 상의 끝에 H의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음. H명의로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그 계좌에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등 공적부조가 입금되도록 하였음. 월 차임, 전기료, 가스비, 통신비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어 행여나 G나 H가 지급시기를 놓치더라도 연체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두었음.

그 밖에 H가 간식을 사먹거나 친구를 만날 때 사용하는 용도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그 용돈이 매월 10일 현재 H가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될 수 있도록 자동이체신청도 마쳐두었음.

〈사례 2-2〉 후견인 G는 피후견인 H와 매월 용돈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혹시라도 돈이 더 필요할 경우, 추가로 이체해주기로 하였음. 그런데 최근 3개월 동안 매번 H는 돈을 다 썼다며 추가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고 있음. 처음에는 20만 원을 받고 2-3주 정도 지난 다음에 달라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번달에는 20만 원을 받은지 이틀만에 돈을 다 썼으니 더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음.

이상하게 생각한 G는 H의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해보았음. H가 2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그 돈을 전부 인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H에게 돈을 전부 인출한 이유를 물어보아도 H는 그냥 썼다고만 대답할 뿐 정확한 답변을 회피할 뿐이었음.

G가 임대인과 옆집 주민 등 이웃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어떤 사람이 찾아와 H와 함께 외

출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음. G가 확인한 결과, H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 밖에 나가 그가 사달라는 대로 음식과 술을 사주고 있었던 것이었음.

G는 H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끔 식사를 대접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쓰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당부하였고, 이웃들에게 그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연락을 달려고 하였음.

그 후 임대인으로부터 그가 다시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은 G는 곧바로 H집으로 갔고, 또 H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그 사람과 만날 수 있었음. G는 앞으로 H를 데리고 비싼 식사와 술을 얻어먹거나, H의 돈에 손을 대려고 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였음.

〈사례 2-3〉 예금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사례 02

피후견인 H의 후견인 G는 나라은행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했음. H가 보유하고 있던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으니 찾아가라는 나라은행의 연락을 받고 은행에 방문하였는데, 정기예금 반환을 거절당한 것이었음. G가 나라은행 정기예금액을 H의 주거래 계좌가 있는 시민은행으로 이체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음. 그 이유를 묻자 나라은행 직원은 G가 “예금계좌 해지, 이체, 신규개설”에 대한 대리권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예금 해지 및 이체사무도 가능하나, 후견인이 다른 은행의 H계좌로 예금을 이체할 경우, 이를 횡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나라은행 직원은 G가 정기예금액을 시민은행으로 이체하는 것에 대한 법원 허가를 받아오면 업무를 해주겠다고 하였음.

G는 중앙치매센터, 감독인의 도움 아래 법원에 정기예금해지 및 예금액 이체에 대한 허가를 구한다는 심판을 청구하였음. 법원에서는 G가 이미 관련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청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려는 보정명령을 내렸음. G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지참하고 나라은행에 다시 방문하였음. 나라은행은 그제서야 이번만 해준다는 식으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예금액을 H명의의 시민은행 계좌로 이체해주었음.

〈사례 2-4〉 예금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사례 04

G는 H의 재산내역을 조회하다가 새롭게 나라은행 계좌를 발견하였음. 거래내역을 조회해본 결과, 최근까지도 그 계좌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G는 사회조사보고서에 H의 먼 친척이 H의 돈을 유용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는 기재가 떠올랐음. G는 더 이상 누군가가 H의 돈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통장 재발행 및 비밀번호 변경신청을 하였음. 그런데 나라은행은 통장 재발행 및 비밀번호 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G의 신청을 거절하였음. G로서는 통장 재발행 및 비밀번호 변경 등 은행업무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 나라은행의 답변을 수용할 수 없었음. 이에 G는 감독인과 상의 끝에 나라은행에 H 통장 재발행 및 비밀번호 변경을 거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 며칠 뒤 G는 나라은행으로부터 통장 재발행 및 비밀번호 변경을 해줄테니 다시 방문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음.

〈사례 2-5〉 후견인 G는 피후견인 H의 치매가 심해지고, 그에 따라 재가(在家)생활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H를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음. 기초생활수급자인 H가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요양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시설급여로 전환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음. 문제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요양원 입소를 위해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었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에는 동의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음. 그러던 중 H의 상태는 악화되기 시작했고, 요양원에서도 다른 대기자를 먼저 입소시키겠다고 G를 재촉하고 있음.

G는 우선 H는 요양원에 입소하게 하고, 가재도구는 집 안에 둔 채 문을 잠그고 돌아왔음.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주면 열쇠를 넘겨주겠다고 연락해두었음. 요양원에는 일단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까지 이용료는 H 개인비용으로 부담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음. 그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음.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주민등록을 요양원으로 옮기려고 함.

〈사례 2-6〉 후견인 G는 임차권등기를 마친지 2달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

환하지 않자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음. 그동안 세 차례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은 차일피일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만 할 뿐이었음. 결국 G는 H를 대리하여 임대인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음. G는 감독인의 도움 아래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허가심판을 청구했음. 법원의 허가심판이 있는 뒤 G는 법률구조공단 단에 찾아갔음. 공단의 변호사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주기로 하였음. 소송은 6개월 정도만에 H의 승소로 종결되었음. 그 후 G는 임대인의 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음.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이 있자, 임대인은 보증금과 그 간의 지연손해금까지 H에게 반환하였음. 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G는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음.

〈사례 2-7〉 후견인 G는 피후견인 H가 입소하기에 적절한 시설은 어디일지 고민을 많이 했음. 시설이 좋은 점 혹은 일하는 인력의 전문성, 비용문제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인 H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았음. G는 평소 H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조용한 편인 것을 고려하여 1인실 사용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음. 하지만 대부분의 요양시설이 2인실부터 있기 때문에 1인실이 있는 곳을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거나 거리가 멀었음. 서울시내에 위치하면서 1인실이 있는 요양원이 없어 G는 공동생활가정이라는 형태의 소규모 요양시설까지 조사하였고, 몇 주 후 자리가 나면 연락을 준 다던 동대문구에 위치한 시설에서 1인실이 한 자리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음. 시설도 깨끗하고 월 20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입소계약을 맺고 H를 집에서 요양시설로 우선 모실 수 있게 되었음. 입소한 뒤 H는 ‘내집이니 나가라’, ‘혼자 있어서 좋다’ 등 입소한 시설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있음.

〈사례 2-8〉 피후견인 H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 V가 있었음. 후견개시청구 당시 V는 자신이 미국에 있어 H를 부양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가 공공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보낸 바 있었음. 후견인으로 G가 선임된 뒤에도 V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H를 찾아오곤 했음.

그러던 중 H가 사망하였음. G는 즉시 V에게 연락하여 H가 사망하였음을 알리고, 한국에 바로 입국할 것을 요청하였음. V는 항공권을 알아보고 가장 빠른 비행기편으로 귀국

하겠다고 알려왔음. G는 V에게 혹시 평소에 염두에 두고 있던 장례식장이 있는지 물어 보았음. V는 그런 곳은 없으니 후견인이 적당한 곳에 H를 모셔주면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였음. G는 H가 살던 곳 인근의 종합병원 장례식장에 H를 안치하였음. 장례식장에는 미국에 있는 자녀 V가 오고 있으니, 그 이후에 빈소를 마련하겠다고 해두었음. 장례식장에서는 그때까지 일단 H를 안치실에 모셔두고 기다리겠다고 하였음. H가 사망한 날로부터 이틀 뒤 V가 귀국하였고, G는 장례식장에서 V를 만나 장례절차 등을 인계하였음. 장례식이 모두 끝난 뒤 G는 V에게 후견종료 이후 절차를 안내하였고, H 명의 통장 등을 전달하였으며, H의 재산은 모두 V가 상속하였으므로 H가 사망한 뒤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은 V가 처리하여야 한다고 알렸음.

G는 V에게 법원에 보고할 때 필요하니 상속예금 처리차 은행에 방문할 때 H명의의 계좌거래내역들을 발급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음. V로부터 이 서류들을 받은 뒤 G는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인에게 제출하고, 종료등기신청을 하였음.

〈사례 2-9〉 후견인 G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모시게 되었음. 장남인 G는 아들로서 쓰러진 아버님을 돌보기로 하였음. 그러다보니 G는 피후견인 H에 대한 후견사무를 계속하기가 어려웠음. G는 감독인에게 부친의 병간호 때문에 후견사무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감독인은 최근 피후견인이 사망한 A에게 H의 후견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였고, A는 이를 승낙하였음. 감독인 지자체의 장은 H의 후견인을 G에서 A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고, 열흘 뒤 법원의 후견인 변경심판이 있었음. 그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G는 H의 후견인으로서 사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심판이 확정된 뒤에는 마지막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기준일 다음날부터 후견인 변경심판 확정일 전날까지의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인에게 제출하였음. 아울러 G가 보관하던 H의 계좌, 체크카드, 기타 서류들 일체를 A에게 전달하였음.

사례3(후견인 : I, 피후견인: J, K)

〈사례 3-1〉 예금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사례 05

부부인 J,K에 대하여 I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음. J와 K에게는 자신이 조카라고 주장하는 X가 있었음. 그러나 J, K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어디를 찾아봐도 X라는 이름을 가진 가족은 존재하지 않음. 더욱이 X는 J, K에 대해 후견이 개시되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음.

그러던 중 아내 K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음. I는 K의 장례절차를 지원함과 동시에 법원에 별도 심판을 통해 J의 상속사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음.

그 후 I는 K의 은행예금이 존재하는 시민은행에 방문하고, K의 폐쇄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법원 심판문을 제시한 뒤 K의 유일한 상속인이 J이므로 K의 상속예금을 모두 J명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하였음. 그런데 시민은행은 얼마전 조카 X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K의 상속인이므로, 다른 후견인이 나타나더라도 K의 예금을 지급하지 말고,만에 하나 K의 예금을 후견인 또는 J에게 지급할 경우 은행을 고소하겠다고 한 일이 있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시민은행 입장에서는 I가 제시하는 여러 공적 서류들에도 불구하고, X가 자신도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J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I의 신청을 거절하였음.

이에 I는 강하게 항의하였음. 그러자 시민은행은 K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금을 법원에 공탁하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통보하였고, 얼마뒤 법원 공탁서를 보내왔음.

I는 법원 공탁계에 방문하여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 J의 후견인이고, 상속사무에 대한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한 뒤 공탁금을 수령하여 J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음.

〈사례 3-2〉 후견인 I는 피후견인 J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는 급여관리자로 조카라고 주장하는 X가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X는 자신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후견이 개시된 이후에도 I에게 수급비 사용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있고, 수급비가 입금되는 J명의 계좌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

이에 I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신이 J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리고, 급여지정자 신청을 취소하였으며, 수급비가 입금되는 계좌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재발행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

〈사례 3-3〉 후견인 I는 피후견인 K가 사망하기 전 응급실에서 담당의사로부터 긴급히 수술이 필요하니 이에 동의하라는 요청을 받았음. 그러나 후견인 I는 피후견인 K에 대한 수술행위에 대한 동의를 할 권한이 없었음. I는 의료기관에 본인은 후견인이기는 하지만 수술에 동의를 할 권한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음.

〈사례 3-4〉 후견인 I는 피후견인 K가 사망하였을 때, K의 후견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J의 후견인으로서 K의 장례사무를 진행하게 되었음. I는 K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 K의 시신을 확인하였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일단 가까운 곳에 있는 종합병원 장례식장으로 K의 시신을 안치하였음. I는 K가 다녔던 노인복지관 담당자로부터 평소 K가 교회 교우, 이웃들과 친근하게 지냈다는 얘기를 듣고 약속하게라도 장례식을 치르기로 하였음. 노인복지관 담당자, K를 사례관리하던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평소 K와 왕래하던 이웃, 지인들의 연락처를 전달받았고, 그들에게 K의 사망사실과 빈소가 마련된 사실을 알렸음. I는 J를 데리고 빈소에 방문하여 K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음. 그 날 저녁 K의 이웃들도 함께 방문하여 조문을 하였음. 장례식을 마치고 K의 시신은 화장하였음.

I는 K의 장례비용을 K의 계좌에서 지출하였음.

〈사례 3-5〉 후견인 I는 열흘간 베트남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음. 그 동안 피후견인 J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요 안전망들을 점검하고, 이웃과 후견감독인 등에게도 도움을 요청해두었음. I가 베트남에 가 있는 도중, J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음. 응급수술은 잘 마쳐졌으나, 이후 병원비 정산 등의 문제가 있었음. I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후견감독인 담당자가 J 계좌에서 병원비를 지급하였음.

사례4(후견인 : O, 피후견인 : M, 피후견인의 배우자 : N, 변경 후 후견인 : I)

〈사례 4-1〉 피후견인 M은 배우자 N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음. 기초생활수급비는 모두 M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음. 후견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배우자 N이 M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급비로 생활하였음.

그러던 중 후견인으로 O가 선임되었음. N도 나이가 들어 복잡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O가 배우자 M의 후견인으로 선임되는데 동의하였음. O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자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N이 더 이상 M의 계좌를 관리할 수 없고, O가 관리해야 하며, N은 O에게 부탁하여 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였음.

N은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M에게 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이 M계좌를 관리하지 못하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음. 게다가 매번 후견인 O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음.

후견인 O 역시 M이 수령하는 수급비에는 N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M과 N이 이 돈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중간에서 하나하나 개입하여 돈을 N에게 내어주는게 번거롭기도 하고, 부담도 되었음. 더욱이 이 문제로 불필요하게 N과 대립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음.

이에 O는 감독인과 상의 끝에 법원에 M의 수급비를 N이 대리수령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을 받고, 수급비를 N명의 계좌로 입금하는데 동의해 주었음.

대신, N은 O에게 3개월에 한 번씩 수급비 계좌 거래내역을 제공해주기로 하였음.

〈사례 4-2〉 피후견인 N은 배우자 M의 입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혼자 지내게 되었음. N은 M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가깝고 혼자 지내기에 부담이 안 되는 곳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뜻을 후견인 I에게 말하였음.

I는 월세로 거주하는 N을 위해 적절한 곳이 있는지 조사해주었음. 조사를 하면서 LH(한국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 임대주택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공고에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얼마 후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9천만 원짜리 전세를 계약하게 되었고, 병원 근처 도보

권에 위치한 집에서 N은 살게 되었음. 월세에서 지내던 N은 매 월 부담하던 비용도 없어 너무 좋다며 후견인 I에게 감사를 전함.

〈사례 4-3〉 후견인 O는 피후견인 M의 배우자 N으로부터 과거 M과 N이 보건소에 방문했다가 홍보자료를 접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해두었다는 얘기를 들었음. 그 후 후견인이 개시된 경우, 종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효냐는 N의 질문에 O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주었음. 다만, 이미 M의 판단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상, 종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답변을 해주었음.

아울러 O는 N에게 향후 M이 임종과정에 이르게 될 경우, 담당의사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꼭 알려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음.

〈사례 4-4〉 후견인 O는 배우자 N으로부터 피후견인 M이 갑자기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입원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음. 즉시 병원에 방문한 O는 N으로부터 담당의사와의 다음과 같은 대화를 전해 들었음. 담당의사는 O에게 M이 소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 임종을 준비하는게 좋겠다고 하면서, 혹시 M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는지, 만약 작성하지 않았다면 연명치료를 하는 것에 대한 직계가족들의 의견이 어떤지 물어보았고, 그에 대하여 O는 담당의사에게 미리 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음을 알려주었음. 담당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M이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등록된 의향서의 내용을 M의 의사(意思)로 보고, 연명치료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사례 4-5〉 피후견인 M의 배우자 N은 최근 후견인 O와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후견인 O는 후견개시 초기 배우자 N을 존중해주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던 것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M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을 빌미로 N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임. N은 여러차례 O에게 항의하였고, 호소도 해보았으나, O의 거만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음.

참다 못한 N은 결국 감독인에게도 O의 태도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음. 감독인 역시 O가 부적절한 태도로 후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음. 결국 감독인은 가정법원에 후견인 O를 I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음.

사례5(후견인 : P, 피후견인 : Q)

〈사례 5-1〉 피후견인 Q는 평소 거동이 불편하긴 하지만 걸을 수는 있었고, 인지기능도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집에서도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음. 집주인이자 후견인인 P는 외부활동을 혼자 하기에는 어려워 무료하게 집에서만 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음. P는 Q가 5등급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장기요양인정서를 근거로 주야간보호서비스(데이케어센터)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입소절차를 도왔고, Q의 거소지 인근에 있는 데이케어센터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아침마다 집 앞으로 오는 동행서비스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며 위험하게 나갈 필요가 없이 여가도 즐기고, 후견인이 매일 방문하지 않더라도 데이케어센터에서 P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Q에게 보고하는 등 후견업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음.

〈사례 5-2〉 피후견인 Q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가 4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이 주택은 6개월 전까지만도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었으나, 인근지역의 개발소문을 타고 가격이 급등하였음. 그러나 Q는 그밖에 다른 재산은 없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후견인 P는 일단 Q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통해 최대한 생활자금을 마련하고, 그마저도 다 소비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통해 공적부조를 받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이에 P는 1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안, 2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조금 저렴한 곳을 임차한 뒤,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방안, 3 현재 주택에 계속 지내면서 주택연금상품에 가입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먼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변변

한 소득이 없는 Q는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¹에 걸려 대출액이 많이 나오지 않았음. 당장 1억 원은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그 돈으로 일정 기간 생활비에 충당할 수는 있지만,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음.

주택을 매각하는 것 역시 고민이 되었음. P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4군데를 돌아보았는데, 현재 4억 원은 거품이 있는 가격이고, 실제로는 그 가격에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음. P입장에서는 Q가 이 주택을 이용하여 여생을 살아야 하는데, 장기간의 전망 없이 당장 부동산 중개업소의 얘기만 듣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매매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음. 감독인 역시 매매는 조금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P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을 알게 되었음. 주택연금은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주택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대출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품임. 즉,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되, 그 대출금을 분할하여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임. P는 주택 시가를 2억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을 때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122만 원 정도인바, 이 정도면 Q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음. 더욱이 주택연금은 그 주택에서 Q가 계속 생활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음. 그러다가 Q가 병원비 등 큰 돈이 필요하게 되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매각대금에서 대출을 상환한 뒤 남은 돈을 이용하면 됨.

P는 감독인과 협의 하에 주택연금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사례 5-3〉 후견인 P는 피후견인 Q가 보유하는 주택을 통해 Q가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하였음. 사례 5-1에서와 같은 방법에 추가하여 P가 Q의 주택을 시세대로 구입하되, Q가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떠올랐음. P는 10년 뒤를 내다보면 Q의 주택은 지금 시세라고 하는 4억 원보다는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임. 자신이 현재 Q 주택을 매수하고, 대신 P는 무상으로 계속 거주하면서 매매대금을 통해 안락한 노후를 영위한다면 서로가 윈윈

1 대출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020년 5월 현재 소득이 없는 개인의 경우, 대출원금 1억 원까지만 DTI가 적용되지 않음.

(win-win)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었음.

이에 P는 감독인에게 자신이 Q 주택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3곳에서 말하는 시세 중 가장 높은 값으로 Q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문의하였음.

감독인은 현재 Q 주택 시세에 거품이 끼었다는 소문도 있으나, 어찌되었든 현재 시세인 4억 원 선에서 P가 주택을 매수한다면 괜찮을 것도 같다는 의견을 주었음.

이에 P는 가정법원에 Q 주택 매각에 대한 허가심판청구를 하였음. 감독인도 Q 주택을 P에게 매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가정법원은 P가 Q를 대리하여 P와 Q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해 상반행위이므로, 감독인이 Q를 대리하여 Q 주택을 P에게 매각하는 것을 허가하였음. 다만, 매매가격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3군데 이상에서 산정한 시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하고, 대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00협회에 신탁하라는 조건을 붙였음.

사례6(후견인 : Z, 피후견인 : S, 피후견인의 아들 : T)

〈사례 6-1〉 피후견인 S는, 피후견인을 학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아들 T와 동거하고 있음. S의 치매증상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T는 S를 돌보기는커녕 S의 기초연금을 출금하여 음주하는 데에 대부분을 지출하기 일쑤였음. 후견인 Z가 집에 방문하였으나 T는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불쾌하다는 모습이 역력했음. T는 S에게 반복적으로 Z에대한 헐담을 하여 S가 Z를 피하게 하기까지 하였음.

Z는 T가 지속적으로 후견업무를 불편하게 하고 면담을 방해하여 T와 관계 맺기가 매우 어려웠음. Z는 T와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이 S의 안정적인 생활에 전제라는 판단 아래, T와 많은 대화를 해보기로 하였음. Z가 방문 빈도를 높이자 T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 하였음. Z는 T에게 구청에 자활수급 선정을 신청하라고 조언하였음. T는 정기적으로 자활센터로 출근하여 소정의 근무를 하기 시작하였음. Z는 T가 출근하는 시간에 주로 방문하여 S의 상태를 살폈고, T도 가끔 만나면서 근황을 살폈음. T는 자활센터에 근무한 지 3개

월 정도 지난 후 정식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는 구직신청을 하였고, 근처 인테리어 시공업체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음.

T는 근로하면서 급여를 받아 더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였고, 더 이상 S의 돈에 손을 대거나, 술에 의존하지 않았음. 그럼으로써 S의 생활은 안정을 되찾았고, T 역시 Z에게 협력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조금씩 관찰되고 있음.

〈사례 6-2〉 S의 이웃 U는 S의 아들 T가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음. 어느 날은 혼자 밖에 나와 있는 S의 팔과 다리에 멍이 들어 있는 것도 발견하였음. U는 S에게 혹시 아들에게 맞은 것이냐고 물어보았으나, S는 별일 아니라고 답변할 뿐이었음. 보다 못한 U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사례가 있다고 신고하였음.

신고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V는 경찰관을 대동하고 S의 집에 방문하였고, S와 면담을 진행하였음. S는 치매로 인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는 못했음. 그러나 S의 온몸에 누군가에게 맞은 듯한 멍 자국이 가득했음. 면담 중 집에 들어 온 아들 T는 거세게 항의하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임시로 S와 T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S에 대해 공공후견인을 선임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아래 S 주거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공공후견을 신청하였음. S의 공공후견인으로 Z가 선임되었음.

아들 T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3개월간 S에 대한 접근금지 및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음.

그런데 T는 보호처분의 기간 내임에도 술에 취해 S를 찾아와 욕설을 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반복했음. Z는 T에게 보호처분을 지킬 것을 수 차례 당부하였으나, T는 막무가내였고, Z에게도 욕설과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음.

Z는 다시 경찰에 T를 노인학대로 신고하였음. 경찰은 T가 보호처분을 위반하였다고 검찰에 보고하였고, 담당검사는 법원에 보호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음. 법원은 T에 대한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담당검사는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음. T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음.

[색인]

(ㄱ) _____

- 가정보호사건 238
- 가정폭력처벌법 238
- 감염병 151
- 거래내역서 42
- 격리 125
 - 행위 허가 217
 - 행위에 대한 허가심판시 유의사항 219
 - 행위의 의의 218
- 공과금
 - 관리 122
- 공적부조 47
 - 관리 109
 - 급여 대리수령 제도 111
 - 압류방지 전용통장 112
- 공탁 124
- 금전지출내역서 56
- 급박한 사정 90, 267
- 기준일 58
- 기초생활수급비 47
 - 급여관리자 109
- 기초연금 47
- 긴급사무 89

(ㄴ) _____

- 나홀로소송 60
- 내용증명 48
- 노인복지법 158, 237, 239
- 노인학대 238

(ㄷ) _____

- 대리권의 범위 41
- 대출 122, 165, 174
 - 대부업자 122

- 이자 122
- 동의입원 224

(ㄹ) _____

- 라보형성 28

(ㅁ) _____

- 민사소송 52, 189, 201

(ㅂ) _____

- 범죄피해 구조금 240
- 법원 나의 사건검색 32, 33
- 변제계획 52, 122
- 병원비 91, 121
-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120
- 보험 44
 - 보험증권 44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224
- 부동산 처분 175
 - 담보대출 180
 - 매매 176
- 부수사건 174, 226
- 비대면거래 101
 - 신청 105
- 비밀번호 42

(ㅅ) _____

- 사고계좌 42
- 사교활동 150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40
 - 대리 작성 불가능 143
 - 작성 140
 - 후견개시 전 작성 144
- 사회복지서비스 127
 - 복지로 127
- 상속인 부존재
 - 상속인 수색 공고 162
 - 상속재산 처리와 관련한 사무 159

상속재산 청산 160
 상속재산관리인 160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162
 생활모습 54
 생활비 관리 113
 서면제출 253
 방문제출 253
 부수사건 심판청구서 제출 254
 우편발송 255
 전자소송 61, 254
 성년후견 20
 성년후견제도 19
 세금 47, 90
 소송행위 121, 169
 강제집행 207
 공판 214
 구속 215
 민사소송 201
 법률구조공단 199
 법률구조재단 199
 변호사 210
 수사 214, 216
 심판청구사례 188
 조정 209
 합의 216, 217
 형사소송 211
 손해배상 240
 수술 14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의 없는 수술 149
 의료법에 따른 동의 없는 수술 148
 신상 124
 신상결정권한 125
 신탁 169

 (ㅇ) _____
 연대보증 147
 연명의료 140
 DNR 동의서 146
 중단 144
 연명의료결정법 140
 연장여부 심사 86
 예금 42
 계좌 관리 방법 101
 금융거래내역 조회 107
 예금관리 95
 피후견인이 관리하는 계좌 99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원본 106
 후견인이 관리할 계좌 97
 요양병원 139, 217
 요양보호사 136
 요양원 217
 용돈 54
 은행 42, 1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49
 의료법 148
 의료행위
 만성질환 128
 일상적인 의료행위 128
 정기검진 129
 이해상반행위 257
 일상생활비 113
 지출 업무 위임 113
 일상생활비 지출 업무 위임 113
 임대차 46, 168
 계약 체결 115
 계약서 66
 묵시적 갱신 118
 임대인 130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120
 임차권등기명령신청 118
 전입신고 116
 종료 117
 확정일자 46, 116
 확정일자 부여현황 46
 임의후견 21

(ㄷ) _____

자기결정권 19
잔고증명서 42
장기요양서비스 131
 시설 133
 요양기관 138
 입소시설 139
 재가서비스 132
 재가시설 1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58
재산목록 41
재산조사 41
정기보고서 53
 감독 245
정기후견사무보고서 57, 76
 감독 246
 그 외 적극재산 68
 기본사항 63
 소극재산 및 재산 총액 69
 수입내역 70
 신상보호 65
 요약표 73
 작성완료 및 pdf 저장 75
 재산변동상황 및 전체의견 72
 적극재산 67
 지출내역 71
 첨부서류 74
정신건강복지법 224
정신의료기관 223
종료등기 87
종료보고서 86
종료사유 86
주간보호센터 134
주거지 54
 관리 129
 새로운 주거지 모색 114
 이전 130
 임대인 130

 지원, 관리 130
주택연금 184
증빙자료 54, 59
지급명령 120
지급명령 신청 50
자연손해금 124, 203
직무대행자 236

(ㄹ) _____

차용증 48, 52
채권 48, 49
채무 48, 51
 변제 122
 사해행위 123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126
채무부존재소송 53
처우개선 심사청구 226
체크카드 42, 107

(ㄴ) _____

특정후견 21

(다) _____

평균 지출 내역 113
피후견인 사망 151
 경찰 변사자 처리 155
 무연고자 장례절차 지원 158
 사망신고 157
 사망진단서 154
 상속인 또는 지자체 담당자 연락 154
 상속인이 있는 경우 158
 시신 확인 154
 장례식장 155
 후견업무 개요 153

(ㄷ) _____

학대피해 고령자 236
한정후견 20

행정입원 225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140
후견감독보고서 58
후견감독사건번호 30
후견감독사무보고서 247
후견감독인
 동의를 필요한 사무 165, 259
 동의서 170
후견감독절차 안내문 31
후견등기사항증명서 37
후견부수사건 174
 감독 260
후견사무보고서 57
후견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처리 95
후견의 보충성 19
후견인 변경 232
후견인 사임 228
후견종료 86
 감독 255
후견활동내역서 57

발행일 2020. 5. 19

발행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전화 044-202-3533, 3531

책임연구원 김성우 변호사 (법무법인(유) 올촌)

연구원 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유) 올촌)

배광열 변호사 (사단법인 온울)

전규해 변호사 (사단법인 온울)

허정훈 사회복지사 (사단법인 온울)

연구보조원 황지경 차장 (법무법인(유) 올촌)

편집인쇄 디자인집(Designzip), 02-521-1474

